

국방관계법령해석 질의응답집 제34집

(2019. 11. ~ 2022. 6.)



대한민국 국방부

서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1964년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 제1집을 발간한 이래, 2020년까지 총 33집의 질의응답집을 발간하여 왔습니다. 제1집을 발간한 1964년 이후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고 개인의 권리의식이 신장됨에 따라, 법률해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많은 국방부 소관 법령이 제·개정 폐지되고 관련 판례도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내·외부적 변화로 법령 해석질의를 답변하기 위해 담당자가 검토해야 할 사항과 그 결과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법치행정 구현을 위해 법령해석에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국방관계법령질의응답집』 제34집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법령해석 사례 중,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70여 건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국방관계법령질의응답집』에 수록된 사례가 향후 담당자들이 국방행정을 수행할 때 참고가 되고, 국민의 국방부 법치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 재 은

제1장 조직·재정

◎ 조직

1. 합참의장의 합동부대 지휘·감독 범위 3
2. 각 군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5
3.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인이 국군 외상센터의 장이 될 수 있는지 7
4. 중앙행정기관의 보안감사를 안보지원사가 할 수 있는지 10
5. 감사처분 후 처분받은 기관에서 재심의 요청시 수행기관 12
6. 화생방방어연구소의 화학작용제 오염 임상시료 분석 가능 여부 15
7. 「계엄사령부직제」 제6조 ‘준용’의 의미 17
8.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소속 ‘특정직공무원’의 정원을 국방부가
정할 수 있는지 19

◎ 재정

9. 군인(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채무를 유족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24
10. 퇴거지연관리비 공제 시 민사집행법 등 적용 관련 26
11. 환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29

제2장 인 사

◎ 임용

12. 전역한 지 3년이 지난 사람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35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장교 임용가부 37
14. 군간부후보생이 군인 신분에 해당하는지 39
15. 생도 선발과정 ‘합격 통보’ 받은 인원이 이후 질환 치료 이력으로
합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초군사훈련 소집해제 가부 41

목 차

◎ 복무

16. 임기제 진급 장성급 장교가 기소휴직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 임용권자가 복직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5
17. 전역심사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해 퇴역 의결도 가능한지 여부	47
18.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상 ‘문화·예술활동’의 범위	48
19. 군무원의 인사교류가 허용되는지	50
20. 학군사관후보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통전공사상 심사대상이 되는지	53
2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군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는지	55
22. 병과장에서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자는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지	57
23. 군인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기제 진급자는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에 보직될 수 없는지	59
24. 과거 성추행을 이유로 현재 가해자를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62
25. 군무원에 대한 총기, 군복 및 군용장구 지급 가부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개정 前)	65
25-2. 군무원 총기 등 지급 가부(군무원인사법시행령 개정 後)	68
26. 전시에 육아휴직 중인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복직명령 가부 및 복직 명령에 불응 시 형사처벌 또는 징계할 수 있는지	69
27. 국외 군무이탈자에 대한 제반조치 검토	71
28. 군인사법 제49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의미	75
29.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재판 결과 확정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77

◎ 징계

- 30. 부서관 근무 중 제적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80
- 31. 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교처분이 인사소청 대상인지 81
- 32.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 1심 재판 결과를 근거로 육아휴직 복직 및
기소 휴직 처분이 가능한지 84
- 33. 지휘관의 의견에 따른 재심의 가능한지 86
- 34. 판결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
징계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88
- 35. ○○본부 예하 장성급 부대에서 직권면직 처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가 가능한지 92
- 3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취소결정 관련 94
- 37. 지휘관의 권한으로 인사운영위원회 재심의 회부가능 여부 97

제 3 장 보건·복지·병역

◎ 보건

- 38. 국군수도병원에서 환자치료 후 후방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
인수받는 병원군의 판단에 따라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103
- 39.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106
- 40. 코로나19로 수당의 지급요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경우,
특수업무수당을 별도의 조치를 통해 지급 가능한지 108
- 41. 승인받은 청원휴가와 별도로 시행령 개정 후 30일의 청원휴가를
추가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110

◎ 복지

- 42.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8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장애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의미 113

목 차

43. 군소음보상법 관련 질의	116
44. 주거지원보증금의 부족분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120
45. 지원금 신청기간 및 수급권리에 관하여	124
46.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지연이자의 부과 관련	126
47.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인 부사관후보생이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대상이 되는지	129
48.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134
49.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하던 위험근무수당의 지급 가부	137
50.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신청기한 관련	139
◎ 병역	
51. 입영 신체검사 시 귀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급여지급을 할 수 있는지	142
52. 예비군 편성 및 훈련 부과의 경우 육군 또는 공군 중 1개 군을 예비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지	144
53.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입원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이어야만 계속 복무 의결을 할 수 있는지	146
제 4 장 군수·시설	
◎ 군수	
54. 탄약의 무상대여 및 교환 관련	151
55. 군수품관리법령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의미	154
56. 유효기간이 지난 개인제독키트의 관리	159
57. 불용예정인 군수품을 해외업체에 매각할 수 있는지	161

58. 군수품관리법상 무상대여의 대상	164
59.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정비용역 관련 질의	167
◎ 시설	
60. 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 출입허가 관련	173
61. 예비역으로 신분이 전환된 장병도 군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175

제 5 장 국제법

62. SOFA 협정에 따라 미측에 분담요구 거부	178
63.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이행약정에 따라 2020년 군사건설 현금지원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	180
64.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상 미집행 분담금 환수 관련 법령 해석	182
65.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당사자 판단	183
66. 양해각서상의 책임 사항에 대한 규정 범위	184
67. 민간인에 대한 전투복 착용과 전쟁법 위반 여부	185
68. 정전교전규칙(UNC)에 대한 한국군 준수 의무	186

제 6 장 기타

69. 공무 외의 국외여행 승인대상자인 군인 명단 등을 법무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188
70. 감사원·수사기관이 군인에 대하여 조사·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공군검찰단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를 해야 하는지	192
71. 군사법원법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군 수사기관이 변사자 검시 수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194
72. 개인정보 관련 국회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196
※법제처 법령해석례 참고 [14-0411, 2014. 9. 17., 국무조정실]	198
73. 형사 사건기록의 정정 관련	202

제1장 조직 · 재정

◎ 조직

1. 합참의장의 합동부대 지휘·감독 범위

【질의요지】

합참의장은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하도록 국군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부대관리와 사고예방 분야도 지휘·감독 범위에 포함되는지

【답 변】

합동참모의장의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범위에는 부대 관리 및 사고 예방분야를 포함하며, 이에 따른 지휘·감독 책임을 질 수 있음.

【이 유】

1.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문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임(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참조)

문언적으로 지휘는 ‘목적은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단체의 행동을 통솔함’을, 감독은 ‘일이나 사람 따위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살피어 단속함’을 의미하며 「부대 관리훈령」 제2조도 ‘지휘’에 지휘관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급 또는 직책을 통해서 예하부대에 합법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권한 행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국군조직법 제2장 군사권한에서 정한 내용을 보면 합동참모의장은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9조 제2항), 각 군 총장은 각 군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0조), 각 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제11조)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지휘·감독’은 모두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3.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7조에서 전비 태세검열실장으로 하여금 ①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검열, ②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 업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부대관리 및 사고예방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대관리훈령」이 합동참모본부에 적용된다는 점을 볼 때, 합동참모의장의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에는(다른 부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부대 또는 소속기관을 지휘·감독할 때 부대관리와 사고예방 분야를 포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대관리와 사고예방 분야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책임도 부담할 수 있음.
끝

질의 : 조직총괄담당관-763('20. 2. 24.)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698('20. 2. 26.)

2. 각 군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각 군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답 변】

1. 각 군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법령에서 ‘공공기관’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달리 해석됨¹⁾. 다만, 특정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해도 각 군을 국방부의 하급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해당 법령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조의 “공공기관”에 「국군조직법」에 따른 각 군 조직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부패방지법 제82조의2 “공공기관장”의 의미를 법문의 사전적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여 각 군 조직의 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패방지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보유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권한이 없음. 따라서 본 법령해석 질의와 관련하여, 주관부서는 필요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하여 회신받는 것을 권고함. 끝.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을 정의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모두 다름

※참 고 :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질의 : 조직총괄담당관-3259(2020. 9. 2.)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9419(2020. 9. 10.)

3.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인이 국군 외상센터의 장이 될 수 있는지

【질의요지】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하고) 국군 외상센터의
장이 될 수 있는지

【답 변】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하고) 국군 외상센터의
장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이 유】

①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은 법률 또
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제정된 국군의무사
령부령 제6조 제2항은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각 군 환자, 의무요원의 교
육, 의무보급, 병리시험 및 그 밖에 위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병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국군수도병
원이 설치된 것이라 보여지는 점²⁾, ② 국군수도병원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소관부서인 국방부 계획예산총
괄담당관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2018년에 위 법이 제정된 후, 위 법에 근거하여 2019년부
터 국군수도병원을 포함한 5개 기관이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
재 2020년 기준으로 총 16개의 군 책임운영기관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제17조에 따라 제정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국군수도병원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기관으로 판단되는 점, ③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군 책임운영기관에는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고 하는바, 군 책임운영기관인 국군수도병원의 소속 기관 또는 하부조직으로 국군 외상센터를 설치한 것이라 보여지는 점, ④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군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기관별 군인 및 군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고 군인의 병과별·계급별 및 군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군 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 한도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위 법 제16조와 제17조의 조문 체계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인 국군수도병원에는 군인과 군무원을 두고 예외적으로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국군수도병원과 그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⑤ (일반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서도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의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상으로도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⑥ (일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 국가기관도 직제에 명시된 조직에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보직하고 있으며, 만일 민간인 신분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상의 특별한 의무(성실·복종·직장이탈금지·종교중립·비밀업무·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의무)를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는 국군조직법 소관부서의 견해(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4253, 2020. 11. 13.)가 있는 점, ⑦ 현행 국군조직법 및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국군의 무사령부령에서 국군수도병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방부장관이 정한 정원의 한도 내에서 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한 규정으로 볼 때, 국군수도병원 소속 기관의 장인 국군 외상센터의 장에 보할 수 있는 신분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라 판단된다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령 소관부서의 견해(계획예산총괄담당관-8856, 2020. 11. 17.)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하고) 국군 외상센터의 장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끝.

질의 : 보건정책과-8559 ('20. 10. 29.) 법령해석 질의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3145('20. 12. 4.)

4. 중앙행정기관의 보안감사를 안보지원사가 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하여 보안감사 관련 감사조직과 전문성을 보유한 군사 안보지원사령관에게 국방부 본부에 대한 보안감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는지

【답 변】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으로 국방부 본부에 대한 보안감사 권한을 군사안보 지원사령부에 위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이 유】

1. 「국가정보원법」 제4조³⁾ 및 「보안업무규정」 제39조⁴⁾에 따르면 보안감사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임.⁵⁾ 또한, 「보안업무규정」은 ‘중앙행정기관등’을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이에 준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과 대통령 소속·보좌·경호기관, 국무총리 보좌기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규정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 군사 안보지원사령관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 3) 국가정보원법 제4조 (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국가 기밀(~중략~)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 4) 보안업무규정 제39조(보안감사)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이 영에서 정한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 및 장비 등의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안감사를 한다.
- 5) 반면,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는 국정원장이 수행하는 업무임

2. 「정부조직법」 제6조⁶⁾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장의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법령상 근거를 필요한데 관련 법령이 없음. 이와 같은 이유로 「국방보안업무 훈령」을 개정하여 국방부장관이 보유한 보안감사 권한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게 위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3512('21. 7. 2.)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8873('21. 7. 23.)

6) 정부조직법 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5. 감사처분 후 처분받은 기관에서 재심의 요청시 수행기관

【질의요지】

국방정보본부 감찰실에서 감사처분 후 처분받은 기관에서 재심의 요청시, 재심의 수행기관은 국방정보본부인지, 국방부 감사관실인지

【답 변】

감사기관의 장인 국방정보본부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함

【이 유】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2. 여기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⁷⁾, 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가 자체감사를 수행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3. 한편, 자체감사는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⁸⁾, 자체감사는 감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순수한 내부감사는 물론, 중앙행정기관 등 조직의 계층구조에서 그 하급기관에 대한 준 내부감사와 산하기관 단체 등에 대한 외부감사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체감사의 대상이 되는 ‘소속기관’, ‘소관단체’의 범위는 관계법령, 조례, 행정규칙, 정관 등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해야 함.(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해설)

4. 이에 따른 「국방부 자체감사에 관한 훈령」은 자체감사기구를 국방부 본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각 국직부대 등에 설치 또는 편성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라고 하며,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 감독하는 자를,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⁹⁾ 국방정보본부 감찰실은 자체감사기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찰실이 속한 기관인 국방정보본부장이 감사기관의 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임

8)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9)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는 국방부 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국방부 직할 기관·부대 및 국방부 소관 법인·공공기관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그 예하 소속기관·소관단체 포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국직부대 등에 설치 또는 편성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아울러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도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¹⁰⁾, 이에 따라, 감사기관의 장인 국방정보본부 장에게 재심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함. 끝.

질의 : 국방정보본부 감찰실-906('21. 7. 16.)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9297('21. 8. 5.)

10) 국방부 자체감사에 관한 훈령 제34조(재심의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6. 화생방방어연구소의 화학작용제 오염 임상 시료 분석 가능 여부

【질의요지】

화학작용제 오염 임상시료 분석 행위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

【답 변】

화생방방어연구소에서 화학작용제 오염 임상시료 분석에 대한 행위를 하는 것은 화생방 무기의 검증·분석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이 유】

화학작용제 오염 임상시료 분석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화생방방어연구소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 임상시료 분석행위가 법률(의료법)상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여짐.

화생방방어연구소에서 임상시료 등을 분석하는 것은 대통령령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화생방 무기의 검증·분석’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질의서의 내용과 같이 분석의 대상도 환자의 의학적 진단을 위한

것이 아닌 화학작용제 물질 그 자체에 있으므로 화생방방어연구소에서 실시하는 화학적 분석은 의료행위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기술분석과-962('21. 8. 20.)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0809('21. 9. 15.)

7. 「계엄사령부직제」 제6조 ‘준용’의 의미

【질의요지】

「계엄사령부직제」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처 및 실의 명칭을 다르게 운영하거나 각 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새로운 처 및 실로 운영할 수 있는지

【답 변】

1. 계엄사령부직제 제6조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 및 참모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처 및 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에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 처 및 실의 구성과 기능에 계엄사령부의 구성과 기능이 준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계엄사령부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요소를 엄격히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계엄사령부 구성과 기능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면 ‘준용’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2. 한편, 계엄사령부 구성과 기능의 본질적 요소를 일부나마 갖추고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가 구성되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법률상 ‘준용’이라고 볼 수 있는 최소한도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예컨대 부대 여건 필요에 의해 계엄사령부 2실 8처 중에서 일부만 운용하는 경우). 준용의 범위 해석과 관련하여, 계엄사령부 구성과 기능의 본질적 요소를 일부나마 갖추고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가 구성되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련 정책부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3. 다만,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처 및 실의 명칭을 계엄사령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는 부합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이름을 부여하여 운영하거나, 각 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계엄사령부 직제와는 별도의 전혀 다른 명칭을 새롭게 부여하여 운영하는 것은 준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료됨. 끝.

질의 : 합참 법무실-2764('21. 10. 13.)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12268('21. 11. 3.)

8.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소속 ‘특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국방부가 정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소속 ‘특정직공무원’의 정원을 국방부가 정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군조직법」 및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으나, 입법개선이 필요

【이 유】

1. 본 논의를 검토하기 위하여 ① 각 군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인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조직인지, 이후 ②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조직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국방부에서 위 특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함.

2. 각 군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가 국군의 조직인지 「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르면 각각 육군, 해군, 공군에 각 군의 사관학교를 두고 있고, 육군3사관학교는 육군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군조직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육군, 해군 및 공군 및 각 군의 소속기관을 국군의 조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아래와 같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 군의 사관학교 및 육군3사관학교는 「국군조직법」에서 정한 ‘국군의 조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¹⁾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과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르면 위 두 학교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한편,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¹²⁾에서는 국군의 조직으로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필요한 기관을 두며, 이를 국군의 조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는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경우,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고 규정¹³⁾하고 있으므로 국군간호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는 「국군조직법」에서 정한 국방부 장관이 군사적 필요에 따라 설치한 ‘국군의 조직’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11) 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 (사관학교의 설치)

① 육군·해군·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 (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 국군조직법 제2조 (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 (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제15조 (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2) 국군조직법 제2조 (국군의 조직)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13)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관"이란 「국군조직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수사 또는 재판 등을 주임무로 하는 군사 조직을 말한다.

제5조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부대나 기관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

3. 국방부에서 위 특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정할 수 있는지

「국군조직법」에 따른 각 군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의 조직 및 정원은 「국군조직법」 제15조14),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1조에 따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15)에 의하여 정하여야 함. 다만,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현행 규정상 국군의 정원, 군무원의 정원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국군조직에 소속된 군인과 군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4조에 비추어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별표에서 특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정하고 있어 위 규정을 살펴보면 각 군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일반학교관의 정원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 정하여 놓은 규정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①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하여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보완하여 특정직공무원의 정원을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② 각 군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 대한 규정도 군인, 군무원이 아닌 특정직공무원인 일반학교관의 정원을 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기재하고

14) 국군조직법 제15조 (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5)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 (정원의 책정과 배정)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정원 수준과 군별·계급별 정원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 중인 인원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육 중인 군 간부후보생은 국군의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정원을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②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정된 정원을 군별·계급별로 배정한다. 다만, 해군의 정원은 해군과 해병대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의 정원은 별도로 배정한다.

있지 않고 있어, 보다 법문의 취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문구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끝.

질의 : 교육훈련정책과 - 608 ('22. 2. 3.)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522('22. 2. 14.)



◎ 재정

9. 군인(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채무를 유족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게 발생한 환수금의 원리금, 반납금의 원리금, 미납기여금,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 연금 외 소득 발생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등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이후 유족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 변】

유족급여에서 군인(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위 채무들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 유】

① 군인연금법 제15조의2 본문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유족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동조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 군인연금법상 급여(공무상요양비,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은 제외)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유족 본인의 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에서 위 채무들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만일 군인연금법 제15조의2 각 호의 채무를 군인(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채무 또는 유족 본인의 채무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유족 본인이 위 각 호의 채무를 갖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으므로 유족급여에서는 위 각 호의 채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 불합리한 점, ③ 군인연금법과 유사한 규정체계를 갖는 공무원연금법 제38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9조의2는 ‘유족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는

공무원 연금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을 최우선으로 보전하여 전체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취지로 판단되고, 이러한 입법 취지는 군인연금법도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족급여에서 군인(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위 채무들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됨. 끝.

질의 : 군인연금과-601('20. 2. 5.)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2123('20. 3. 10.)

10. 퇴거지원 관리비 공제 시 민사집행법 등 적용 관련

【질의요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4조에서는 관사입주자가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는 경우 퇴거지원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여에서 중앙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퇴거지원관리비를 공제함으로써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위 공제가 최저생계비에 대한 압류 금지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 변】

급여에서 퇴거지원관리비를 공제함으로써 최저생계비가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최저생계비에 대한 압류 금지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공제로 인하여 국가가 얻는 이익과 입주자가 입는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퇴거지원관리비 공제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이 유】

1. 「군인복지기본법」이나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등에서는 직접적으로 퇴거지원관리비와 최저생계비와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압류와 공제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므로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최저

생계비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 부분에 대한 퇴거지연관리비의 공제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2. 한편, 퇴거지연관리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국가가 입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인 퇴거지연관리비 채권을 입주자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인 급여채권과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반드시 ‘상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만 상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비록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성격은 「민법」에서 말하는 ‘상계’에 해당함. 따라서 이 경우에도 상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법 제497조의 제한 또한 그대로 적용되므로,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공제는 허용되지 않음. 다만 위 규정이 압류금지채권 채권자의 처분권을 박탈하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고, 압류금지채권 채권자는 자신의 압류금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으로써 자신의 채무가 소멸되는 현실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또는 그러한 내용의 상계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됨.

3. 본 사안에서 입주자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급여중앙공제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퇴거지연관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가 가지는 국가에 대한 급여채권에서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로 평가할 수 있는바, 위 합의에 따라 국가가 퇴거지연관리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일정 범위의 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민법」 제497조에서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는 취지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또는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인 점 및 공제가 압류보다 채무자에게 더욱 불이익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법률상 명백히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을 공제할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입주자가 입주 시 작성하는 급여중앙공제 동의서는 관사 등에 입주하기 위하여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불가능하여 순수하게 자발적인 의사로 위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 급여중앙공제 동의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약관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내용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효가 되는 점, ④ 위 훈령 제14조 제4항에서는 입주자가 3개월 이상 퇴거지연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제를 위해 소송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급여에 대한 중앙공제가 반드시 의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급여에 대한 중앙공제로 국가가 얻는 이익과 입주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끝.

질의 : 주거정책팀-1544('20. 4. 10.)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3931('20. 5. 12.)

11. 환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질의요지】

2007.1.24.자로 ○○○ 소유의 집합건물에 압류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2012.12.20.자로 위 환수금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납결손처분이 의결된 경우, 위 환수금 채권이 존속하는지

【답 변】

「국가채정법」 제96조 제3항, 민법 제168조 제2호에 따라, 압류 등기의 소멸시효 중단이 효력이 지속되므로 환수금 채권은 존속함

【이 유】

1. 「군인연금법」 제16조 제3항은¹⁶⁾ 국방부장관이 급여를 환수할 경우에는 국세

16) 군인연금법 제16조 (급여의 환수) ①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도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55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 또는 이자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5항은 국방부 장관의 환수금에 대한 권리는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¹⁷⁾하며, 같은 조 제6항은 징수금의 납입고지 및 독촉과 급여 지급 청구 등은 소멸시효 중단¹⁸⁾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¹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¹⁹⁾,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판결 참조) 「군인연금법」에서 급여를 환수할 경우 따르도록 한, 국세 체납처분에 대해 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 발생한다고²⁰⁾ 규정하는 바, ○○○ 소유의 집합건물에 2007년 1월 24일자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지금도 존속하고 있으므로 환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보임

「군인연금법」 상 국가가 일방적으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10년이 넘은 지금도 압류의 효력이 지속한다는 것이 다소 불합리해 보일 수 있으나, 「국가재정법」 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7) 군인연금법 제52조(시효) ⑤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국방부장관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8) 군인연금법 제52조(시효) ⑥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19)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20) 국세징수법 제46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민법상의 규정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민사법 상의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제한²¹⁾이 없으므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²²⁾

2. 국방부는 2012년 12월 21일 군인연금과 주관으로 불납결손처분심의회를 열고 본 사안에 대하여 불납결손 처분을 하였던 바, 이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 ○○○의 환수금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는지가 문제됨.

「군인연금법」 제16조 제4항은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②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른 압류할 재산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 결손처분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의 개정²³⁾으로 「국세징수법」 아래에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0두25527판결)

그렇다면 2012년 12월 21일에 이루어진 「군인연금법」 상의 결손처분 역시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결손처분 방○○의 환수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21)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22) 압류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없는 데, 이는 민사법 상으로 압류는 결국 환가(換價)를 위한 일시적 절차로서, 통상의 이해관계자가 압류만 하고 매각, 환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3)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가 개정되어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고,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위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됨.

3. ○○○의 재산에 대하여 2012년 불납결손 처분을 한 뒤, 9년이 2021년인 현재, 이러한 불납결손 처분에 반하여 대금지급 청구를 하는 것이, ○○○의 신뢰 보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문제될 수 있는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i 행정청의 선행조치, ii 보호 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 iii 신뢰에 기한 사인의 처리, iv 인과관계, v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가 특별히 국방부의 불납결손 처분을 신뢰하고 어떠한 처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 보기 어려움. 끝.

질의 : 군인연금과-4398('21. 10. 29.)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3202('21. 11. 29.)

제2장 인사



© **임용**

12. 전역한 지 3년이 지난 사람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전역한 지 3년이 지난 사람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답 변】

예비군 지휘관(군인)으로 전역한 지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군무원5급)로서 퇴직하더라도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이 유】

1. 본 질의의 사실관계

- 2007. 12. 31. 예비군 지휘관(군인)으로 전역
- 2008. 01. 01.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군무원 5급)로 임용
- 2019. 06. 30.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군무원 5급)로 퇴직
- 2019. 09. 03. (전역 후 3년 도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하려 했으나 응시결격으로 분류됨.

2.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 가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제2항²⁴⁾ 및 「군무원인사법」

24)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직위별 응시자격 등)

제7조 제2항 제5호²⁵⁾에 의하면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사람(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음. 사안의 경우 대상자는 예비군 지휘관으로 전역한 지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위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대상자와 같이, 전역한 지 3년이 지난 군인은 위 제5호에 의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끝.

질의 : 예비전력과-5243('19. 12. 05.)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2685('19. 12. 16.)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직위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2, 2010.3.10, 2011.3.8., 2015.2.27.>

1.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 별표 1. 다만,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의 경우에는 단위부대의 성격과 같은 병과만 응시할 수 있다.
2. 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 별표 2. 다만, 「군인사법」 제24조의4에 따라 명예진급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명예진급되는 계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는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역 또는 퇴역(「군인사법」 제41조제2호의 사유로 현역에서 바로 퇴역한 경우만 해당한다) 후 3년 이내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25) **군무원인사법 제7조 (신규 채용)**

① 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사람(이하“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5.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장교 임용가부

【질의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장교로 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 변】

군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지는 군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재량적 판단사항에 해당.

【이 유】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제2항 제6의3호, 6의4호는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장교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함.

따라서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지는 군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재량적 판단사항임. 다만, 재량권의 행사에는 재량이 일탈·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장교로 임용함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끝.

질의 : 군중정책과-716('20. 2. 24.)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686('20. 2. 25.)

14. 군간부후보생이 군인 신분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군간부후보생이 군인 신분에 해당하는지

【답 변】

군간부후보생은 군인 신분에 해당하지 않음

【이 유】

1. 「국군조직법」 제4조(군인의 신분 등)는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을 군인에게 적용하되, 군간부후보생에 대해서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군인과 군간부후보생을 구별하고 있음. 또한, 군간부후보생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병역법 제2조)으로 군인사법은 장교나 부사관이 되려면 군인사법상 별도의 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군인사법 제11조·제14조)

2. 이러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군인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군간부후보생은 군사교육기관 등에서 수련을 받는 사람으로 군에 복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장교나 부사관이 되려면 군인사법상 별도의 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군인신분이 발생하는 시점은

임용 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끝.

질의 : 조직총괄담당관-1076('21. 3. 12.)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4750('21. 4. 16.)

15. 생도 선발과정 ‘합격 통보’ 받은 인원이 이후 질환 치료 이력으로 합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초군사훈련 소집해제 가부

【질의요지】

생도 선발 과정에서 최종 ‘합격 통보’ 받은 인원이 선발 신체검사 이후 발견된 질환 및 치료 이력으로 입학 신체검사 합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관련 내규에 근거하여 심의를 통해 기초군사훈련 소집해제를 진행할 수 있는지

【답 변】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기초군사훈련 소집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이 유】

1. 본 사안과 관련하여 ① ○○○○ 학교에서 합격통지를 받아 입학 예정 중인 자(이하 ‘이 사건 예비생도’라 함.)에 대하여 행정규칙인 「○○○○ 학교 학칙」을 적용하였을 때 어느 위원회에서 ‘기초군사훈련 소집해제’를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심의위원회 개최 간 필요한 절차 등 준수사항 ③ 기타 입학취소처분과의 관계, 관련 규정의 개선의 필요성 등이 문제됨

2. 「○○○○ 학칙」에 따르면 제14조 제2항에서 평가결과 적성이 부적합한 사람에게는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41조 이하에서 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의사결정 등에

대하여 정하면서 생도의 '입학'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²⁶⁾, 「○○○○ 학교 생도대 운영예규」 제12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신체적 부적격자 및 장교 임용 결격사유(군인사법)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심의를 거쳐 유급 또는 소집해제 후 예비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²⁷⁾ 위 「○○○○ 학교 학칙」 및 「○○○○ 생도대 운영예규」를 종합하여 보면, 「○○○○ 학교 학칙」 제14조 제2항이 “임시입학자에게는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후 입학을 허가한다”고 앞서 기술하고 있어 임시입학 절차를 모두 포함한 입학절차 상 발견된 적성 부적합자에 대하여는 입학을 불허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며, 「○○○○ 학교 학칙」 제43조 제3항에서는 ‘교육운영위원회’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생도의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교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신체등급이 입학(또는 임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예비생도에 대하여 기초군사훈련에 대한 소집해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교육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됨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예비생도에게 ○○○○학교(이하 ‘귀교’라 합니다.)의 결정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초군사훈련에 대하여 소집해제를 결정하는 것은 생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그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으로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²⁸⁾ 등에 따

26) 학칙 제14조 (입학허가 및 선서) ① 학교장은 제13조에 의거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임시입학을 허가한다. ② 임시입학자에게는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후 입학을 허가한다. 단, 평가결과 적성이 부적합한 사람에게는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43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자문한다. ③ 생도의 입학, 승급, 유급, 휴학, 퇴학, 상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27) 생도대 운영 예규 제12조(기초군사훈련) ⑤ 수료 및 소집해제 요건 및 절차는 다음 각 호 (목)와 같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훈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급 또는 소집해제 후 예비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 다만, ‘가’ 목의 사항은 교육운영위원회에 심의 의뢰한다.

가. 신체적 부적격자 및 장교 임용 결격사유(군인사법)에 해당하는 경우

라 입학 및 제적,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 학칙」에 따라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것으로 위 소집해제 처분은 법률상 그 근거가 있다고 판단됨.

3.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초군사훈련 소집해제에 대하여는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므로 「○○○○ 예규」에서 정한 절차(위원의 구성,에 따라야 함. 이때, 예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행정절차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므로, 될 수 있으면 사전에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끝.

질의 : ○○○○ 학교 생도중대-64('22. 1. 24.)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087('22. 1. 28.)

28) 고등교육법 제6조 (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학칙) ①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 (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체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외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17.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목차**

16. 임기제 진급 장성급 장교가 기소휴직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 임용권자가 복직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임기제 진급한 장성급 장교가 기소휴직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 임용권자가 복직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임용권자는 임기제 진급한 장성급 장교가 기소휴직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 이더라도 군인사법 제49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복직명령을 할 수 있음.

【이 유】

1.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49조 제2항은 기소휴직기간을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으로 보면서 단서에서는 기소휴직자의 관련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판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복직일의 전날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2. 사안의 경우, 형사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헌법 제27조 제4항)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 기소 휴직에 임용권자의 재량이 허용되듯이 복직 시에도 재량이 허용될 필요가 있고 위 단서 규정도

임용권자에게 사건의 경과를 살펴 기소휴직 제도의 목적과, 개인의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복직명령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기제 진급한 장성급 장교가 기소 휴직되어 형사재판 중이라도 임용권자는 법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복직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3. 다만, 제49조 제2항 단서에서 들고 있는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효력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그 밖의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량이 있으나, 임용권자가 복직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형사사건의 내용이 당해 군인의 직무와 관련이 적거나 1심에서 무죄 판결, 공소기각 결정·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등 사건의 경과를 살폈을 때 판결 확정시까지 복직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기소된 간부에게 가혹한 것이라 판단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끝.

질의 : 육군본부 법제과-4700('19. 12. 12.)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3129('19. 12. 27.)

17. 전역심사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해 퇴역 의결도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전역심사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해 퇴역 의결도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전역심사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해 퇴역 의결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 유】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심신장애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위임받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는 심신장애가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비전공상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심신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퇴역으로 심사한다 하더라도 대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역심사위원회는 대상자에 대해서 퇴역 의결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됨. 끝.

질의 : 해군본부 법제과-4300('19. 12. 9.)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77('20. 01. 07.)

18.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상 ‘문화·예술활동’의 범위

【질의요지】

인터넷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문화·예술활동’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 변】

인터넷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문화·예술활동’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이 유】

1.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의 개념에 대하여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개념에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를 추가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개념을 넓게 파악하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와 유·무형의 문화재가 현행법령상 “문화예술”로 볼 수 있음.

2. 한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도 “문화·예술”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표현을 “문화 예술”의 개념과 달리 보아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문화·예술”의 개념은 앞서 본 “문화예술”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또한, 관련법령에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활동”이라는 표현이 그 바로 앞의 단어를 수식하게 되는 경우²⁹⁾ 갖게 되는 일반적인 어의에 비추어 보면 “문화·예술활동”이란 “문화·예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문화·예술활동”은 문화·예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일체의 활동, 즉,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와 유·무형의 문화재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봄이 타당함.

3. 한편, 위와 같은 “활동”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어떤 방식에 의하여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불문하고 그것이 “문화·예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문화·예술활동”이라고 볼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화·예술활동”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인터넷의 개인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한 활동이라고 하여 그자체로 “문화·예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유튜브 채널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그것이 “문화·예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문화·예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끝.

질의 :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43('20. 1. 2.)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304('20. 1. 9.)

29) 예컨대 체육활동, 음악활동, 봉사활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9. 군무원의 인사교류가 허용되는지

【질의요지】

군무원의 경우 훈령상 인사교류 규정과 부대 내규 적용만으로 부대 근무 적합성 평가결과에 따른 강제 인사교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 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인사교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고,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6조, 「사령부 인사관리규정」 제118조에서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볼 때, 부대 근무 적합성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군무원을 대외 인사교류 대상자에 포함 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 유】

1.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무원 인사제도의 개선과 공정한 인사관리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무원 인사위원회를 두고(법 제5조), 군무원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교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시행령 제6조),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시행령 제37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교류’에 대한 법령상 근거 규정은 존재함

그리고 위와 같은 ‘인사교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국

방부 군무원인사관리 훈령」에서는 5급 이상 군무원의 경우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관리·통제하고(국방부 직할부대에서 소요건의 시 등 일정한 경우 6급 이하도 국방부에서 통제가능) 나머지는 각 군 본부 및 승진 심의원 부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령부 인사관리규정」은 업무수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심의를 통해 인사교류 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제118조), 근무 적합성 평가 부적격자에 대한 평가는 제57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5급 이상 군무원의 경우 국방부 직할부대는 인사교류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방부에서 이를 통제·관리하는 형식으로 업무가 분배되어 있으며, 인사교류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사령부는 「사령부 인사관리규정」 제118조에서 이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령부 인사관리 규정」이 관련법령 및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위반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임.

2. 「사령부 인사관리규정」 제118조 제3항이 ‘전입 3·8·13년 차 근무적합성 평가 부적격자에 대한 평가는 제57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위 규정 제57조는 부대근무 적합성 평가를 위해 인사운영위원회 개최를 건의하고 인사운영위원회는 ‘인사운영위원회 회부사유 및 처벌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이 기준에는 계속복무 부적합 인원(군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이 규정 제118조 제2항에서 ‘업무수행능력이 극히 불량한 자’를 인사교류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3. 근무적합성 평가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받은 자를 업무수행능력이 극히 불량한 자로 보는 것이 문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례는 인사권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판단하므로³⁰⁾ 부대 근무 적합성 평가결과 부적격자를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인사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부대근무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자를 인사교류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끝.

질의 : ○○○사령부 법무실-512('20. 4. 2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3799('20. 5. 7.)

30) 대법원은 '한편으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법령의 제한 내에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바, 인사권자가 행한 전보인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2009. 5.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등 참조) 있고, 하급심 판결에서는 '(상략)~ 인사운영규정은 인사권자가 전보인사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둔 준칙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인사운영규정을 위반하여도 다른 법령상의 제한에 반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략)'(서울행정법원 2013. 4. 4. 선고 2012구합26302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 학군사관후보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통전공사상 심사대상이 되는지

【질의요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상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지 않은 사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학군사관 후보생도 보통전공사상 심사대상이 되는지

【답 변】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학군사관후보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통전공사상 심사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이 유】

①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르면 군인사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뿐 아니라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우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 등”이라 함)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나, 군인사법령상 별도로 사관후보생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② 다만,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2조 제2호에서는 사관후보생을 훈령의 적용 범

위로 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위 훈령의 소관부서인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은 사관후보생에 학군사관후보생도 그 심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점(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2107, 학군사관후보생 전공사상심사관련 의견 요청 회신), ③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 23은 전사자 등의 구분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7부터 10까지 전사자 등의 구분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사자 등의 구분을 결정하는 것이 군인사법령상 입법 취지로 보여지는 점, ④ 불필요하게 심사대상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지 않은 사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학군사관후보생을 보통전공사상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무상의 어려움으로 심사대상을 제외한다는 논리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⑤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것인지 판단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요소로 판단되는 점(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2107, 학군사관후보생 전공사상심사관련 의견 요청 회신 참고), ⑥ 실무상 현역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 우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바, 학군사관후보생을 현역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법령상 학군사관후보생을 사관후보생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학군사관후보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통전공사상 심사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끝.

질의 : 육군본부 법제과-2300 ('20. 6. 4.)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6374('20. 7. 8.)

2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군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군무원을 직위해제 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군무원을 직위해제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이 유】

① 군무원인사법 제29조 제1항은 임용권자는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 제1심에서 위 법 제27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직위해제 사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군무원인사법 제1조는 이 법은 군무원의 책임·직무·신분 및 근무조건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임용·복무·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고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규정과 달리, 군무원인사법 제29조(직위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 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대법

원 판례의 입장(대법원 2007. 3. 29. 2006마724 결정)을 고려하면, 직위해제 처분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는 없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군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끝

질의 : 군무원정책과-8371 ('20. 11. 4.)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1654('20. 11. 5.)

22. 병과장에서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자는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지

【질의요지】

군인사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병과장에서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자가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제7호의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지

【답 변】

병과장에서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자는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고 판단됨.

【이 유】

① 군인사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는 ㉠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전직은 1회로 한정된다고 규정하는 바, 이미 병과장에서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자는 다른 직위(유사한 계통의 직위이든 아니든 현재 직위를 포함한 모든 직위)로 전직될 수 없다고 위 규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위 규정에서 “전직”은

“보직 이동”과 달리 불 근거가 없어³¹⁾, 위 규정들의 취지는 병과장 또는 병과장으로부터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자는 다른 직위로의 이동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판단되는 점, ③ 원칙적으로 군인사법 제21조 제2항은 병과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 위 임기를 마치면 전역되나, 예외적으로 ㉠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된 경우, ㉡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 그 임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한다고 규정하는바, 원칙적으로 병과장 임기를 마친 자 (또는 병과장에서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임기를 마친 자)는 전역 된다고 판단되는 점, ④ 전역준비를 위한 임시 직위인 OO연구소의 경우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보기 어렵고, 병과장 전직 제도의 취지가 임기의 연장이 아닌 병과장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차원임을 고려시, 전역준비를 위한 임시 직위에 보직하는 것은 병과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병과장이 유사 직위로 전직한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3이 적용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미 1회의 전직을 마쳐 더 이상 전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군인사법령 소관부서의 견해(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16491, 2020. 11. 26.)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병과장에서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자는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OO연구소)에 보직될 수 없다고 판단됨. 끝.

질의 : 인사기획관리과-16491 ('20. 11. 26.)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2694('20. 11. 27.)

31) 군인사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전직”은 병과장 또는 병과장에서 유사한 직위로의 보직 이동(군인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은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직”의 뜻이 다르다고 판단됨. 국방부 훈령인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에서도 그 위임 근거를 군인사법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0조의3만을 들고 있음(군인사법 제21조 제3항을 위임 근거로 두고 있지 아니함).

23. 군인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기제 진급자는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에 보직될 수 없는지

【질의요지】

군인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하나,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등 인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한하여 그 직위에 보직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군인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기제 진급자는 위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지

【답 변】

군인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기제 진급자는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고 판단됨.

【이 유】

1. 본 질의의 취지는, 군인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하나,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등 인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한하여 그 직위에 보직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르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군인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기제 진급자는 위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지로 이해됨.

2. ① 군인사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이하 ‘임기제 진급’이라고 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되거나, 그 직위에 다시 보직(이하 ‘재보직’이라고 함)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이하 ‘유사계통 전직’이라고 함)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고 규정하는바,

임기제 진급자는 ㉠ 원칙적으로 그 직위에서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전역되고, ㉡ 재보직 또는 유사계통 전직되면 그 직위에서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 전역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로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와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로 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유사계통 전직될 수 있는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임기제 진급자와 병과가 같거나 같은 전문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한다고 규정하는바, 임기제 진급자가 유사계통 전직이 될 수 있는 직위는 「해당 임기제 진급자와 병과가 같거나 같은 전문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한정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법제처 법령해석례(법제처

14-0092, 20147. 5. 22. 임기제 진급으로 진급한 자가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르면 「...군인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기제 진급은 각군의 형편상 특수전문직위나 상위계급에서 인사정체가 심한 직위에 대하여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각군 방침으로 실시해 오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구 군인사법(1995. 12. 29. 법률 제5060호로 개정·시행된 것)의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참조], ...직업군인에게 있어 진급은 신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하여 진급을 제한하려면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명시적 제한 규정 없이 임기제 진급자에 대해서만 진급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위 ②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기제 진급자에 대하여 2년의 임기 만료 후 재보직 또는 유사계통 전직이 되지 않으면 전역된다는 ‘명시적 제한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군인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기제 진급자는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고 판단됨. 끝.

질의 : 인사기획관리과-8143 ('21. 6. 16.)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8250('21. 7. 9.)

24. 과거 성추행을 이유로 현재 가해자를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군인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과거 성추행을 이유로 현재 가해자를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답 변】

보직권자가 군기문란 행위의 중대성, 그로 인한 보직해임 필요성을 판단하여, 이러한 사안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보직해임 할 수 있음.

【이 유】

1. 「군인사법」 제17조는 보직의 임기에 대하여 정하면서, ①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③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④ 전투작전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거나 보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³²⁾

32) 군인사법 제17조 (임기)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거나 보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2. 한편,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단서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직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는 그 불가피한 사유를 ①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³³⁾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3. 위와 같이 군인사법에서 보직의 임기를 변경하는 사유를 제한한 취지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불가피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불가피한 사유를 정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는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특별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도록 규정한 반면, 제3호는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여 ① 무엇이 중대한 군 기강문란인지, ② 이로 인해 보직에서 해임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재량을 두고 있음.

4. 전투작전상 필요한 경우

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3)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따라서, 군인사법에서 보직에 관한 임기보장 규정을 두고 해임 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둔 취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의 규정에 ‘재량’적 요소를 둔 취지를 고려하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군기문란 행위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보직권자가 군기문란 행위의 중대성, 그로 인한 보직해임 필요성을 판단하여, 이러한 사안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보직해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끝.

질의 : 군수감사담당관-2096('21. 7. 6.)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8407('21. 7. 13.)

25. 군무원에 대한 총기, 군복 및 군용장구 지급 가부(군무원인사법시행령 개정 前)

【질의요지】

현행법상 군무원에 대한 총기, 군복 및 군용장구 지급이 가능한지

【답 변】

현행법상 군무원에 대한 총기, 군복 및 군용장구의 지급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 유】

1. 총기 사용 및 휴대를 위하여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군무원에 대한 총기 및 군용장구의 지급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더욱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이라 함) 제9조 제1항에서는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법률해석을 통해 그 흠결을 보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2. 비록 군무원이 국군조직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군’에 포함되기는 하나, ① 군무원은 군인이 아닌 군의 구성원으로, 그 자격·임면·복무·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점(국군조직법 제16조 제2항), ② 군무원의 임무 역시 기술·연구·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인 점(군무원인사법 제3조 제1항, 제3항)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도 군무원의 활용 분야를 원칙적으로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군수·행정 및 교육훈련 분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무원의 임무에 전투임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점, ③ 군복단속법 제9조의 취지는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군인 아닌 자가 착용하는 것을 가능한 한 억제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본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④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소속 부대장이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군무원에게 의복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게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지급된 피복”을 군복이라 단정할 수는 없고, 위 규정을 군복단속법의 예외인 ‘다른 법령에 의해 착용·사용·휴대가 허용된 경우’(법 제8조 제2항 제2호)로는 볼 수 없는 점, ⑤ 군무원의 임무 성격상 전투임무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령해석 및 육본 법무실 법령해석에서도 전시 및 평시 훈련·군무 간 군무원의 전투복 착용 지시를 할 수 없고, 평시 개인화기 지급은 불가하다고 회신한 점[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5038(2015. 6. 11.), 육군본부 법제과-567(2007. 6. 28.)·3025(2017. 9. 1.) 및 육군본부 법제과 2017. 4. 6. 회신 등 참조], ⑥ 기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8조, 헌병무기사용령(대통령령 제4746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10조 등에서는 군인의 무기사용·휴대에 대한 규정에 불과한 점, ⑦ 전쟁 상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포함하고, 군무원이 국가방위활동을 하는 것을 군복단속법 제8조 제2항 제3호,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의 ‘공익을 위한 활동’에 포섭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성격을 의미를 벗어나 군무원의 임무·신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현행법상 군

무원에 대한 총기, 군복 및 군용장구의 지급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 법령 개정 등 정비 필요성

현행법상 군무원에 대한 총기, 군복 및 군용장구의 지급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지급에 대한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끝.

질의 : 군무원정책과-2913('21. 4. 16.)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1169('21. 9. 30.)

25-2. 군무원 총기 등 지급 가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 後)

【질의요지】

군무원 총기 및 군복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 변】

종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군복단속법 제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음.

이후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 및 평시 임무를 고려하여 일반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이 개정되어, 군무원 총기 지급 및 군복 착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끝.

질의 : 육본 법제과-1298('21. 3. 30.)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14229('21. 12. 23.)

26. 전시에 육아휴직 중인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복직명령 가부 및 복직 명령에 불응 시 형사처벌 또는 징계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전시 육아휴직 중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에 대하여 복직 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 및 복직 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하여 군형법상 항명죄, 군무 이탈죄 등으로 형사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지

【답 변】

전시 육아휴직 중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에 대하여 복직 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 및 복직 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하여 군형법상 항명죄, 군무 이탈죄 등으로 형사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 유】

①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는 점, 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군인의 기본권은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군무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점, ③ “전시”라는 상황은 위 행정기본법 규정상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시 육아휴직 중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에 대하여 복직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복직 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됨. 끝.

질의 : 공군본부 법제과-3559 ('21. 8. 10.)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1844('21. 10. 22.)

27. 국외 군무이탈자에 대한 제반조치 검토

【질의요지】

국외 군무이탈자에 대한 제반조치에 대한 검토

【답 변】

국외 군무이탈자에 대한 조치사항 검토이며 자세한 사항은 이유를 참고하기 바람

【이 유】

1. 범죄인인도의 방법에 따른 인도청구의 가능여부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또는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따라 형사사법공조 또는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방법으로 ○○○로 군무이탈한 병사(이하 ‘군무이탈병사’라 합니다)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제1조 제2호에서는 ‘군법상의 범죄’를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고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제4조에서는 ‘**군법에 의한 범죄에 대한 인도**’ 역시 **협약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현재 군무이탈 병사는 군형법 제30조에 따른 군무이탈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로, ‘군법상의 범죄’를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 위 협약들에 따라 형사사법공조 또는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방법으로 ○○○에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군형법 이외의 범죄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경우라면, 형사사법공조 또는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① 여권법 위반죄, ② 「형법」 제111조의 사전죄(私戰罪), ③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살펴봄

① 먼저, 여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외교부 장관이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국외 위난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켜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경우 「여권법」 제26조 제3호,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재 러시아 국경 일부지역,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에 대하여는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어 여권사용·방문·체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에 대하여는 여행금지 국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권법」 제26조 제3호, 제17조의 벌칙규정은 적용되기 어려우며, 여행금지 국가·지역에 **여권사용·방문·체류를 하는 경우 비로소 위 처벌규정의 적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임

② 다음으로 사전죄(私戰罪)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형법」 제111조에서는 외국에 대하여 사전(私戰)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예비 또는 음모를 한 경우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의 전투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러시아에 대하여 전투행위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비행위를 하였다’라는 혐의사실로 형사사법공조 또는 범죄인 인도청구를 비롯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마찬가지로 관할 군 수사 기관에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고유한 소관 사항이며, 외교적 문제에 있어 사전(私戰)의 해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됨.

③ 마지막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형법」 제137조에서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휴가승인권자에게 휴가 행선지를 허위로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휴가승인을 받아 휴가승인권자가 휴가 행선지를 확인하고 휴가를 승인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라는 혐의사실로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함. 이와 같은 혐의사실로 형사사법공조 또는 범죄인 인도청구를 비롯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마찬가지로

관할 군 수사 기관에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고유한 소관 사항이므로 소관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됨.

2. 대한민국 국방부 - ○○○공화국 간 국방부 국방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을 근거로 ○○○ 당국에 추방명령 등 행정적 협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한민국 국방부 - ○○○공화국 국방부 간 국방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등을 근거로 ○○○ 당국에 추방명령 등 행정적 협조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위 협정 제1조에서 당사자 간 국방 ‘협력’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조 1. 15)에서 국방 분야의 법적, 경제적 문제를 협력 분야로 정하고 있음. 또한, 제5조 2.에서는 필요에 따라 상호 관심 현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본 사안을 살펴보면, ① 추방명령 등 출입국에 관한 업무는 ‘국방’ 분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방부 - ○○○ 공화국 국방부 간 국방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를 근거로 협조를 요청하기 어려우며, ② 협정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양 당사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③ 협정 제5조 협력 형태에 있어 군 수사 기관에서의 협조의 점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주된 내용이 상호 학술적 세미나, 교육 분야, 연습 참가 등에 국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협정을 근거로 행정적 조치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3. 기타 사범공조 협조 가능 방안

「여권법」 등에 근거하여 기타 사범공조를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여권법」 제12조, 제13조, 제1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은 여권 명의인에게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고, 반납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됨.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본 사안을 살펴보면, 소관부서에서는 군무이탈

병사가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경우에 해당되므로 여권의 반납을 명하고, 반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외교부 장관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고, 나아가 ‘○○○ 관련 행정 당국이 여권 효력에 따른 ○○○ 국내법상 할 수 있는 출입국 절차상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외교부 장관 등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외국에 체류 중인 무효 여권 소지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공화국의 주권에 관한 부분이며, ○○○ 국내법에 따라 집행될 것이므로 대한민국에서 군무이탈병사에 대하여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는 것이 ○○○ 당국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결론

범죄인인도의 방법에 따른 인도청구에 대하여는 군무이탈죄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방법으로 ○○○에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다른 군형법 외의 범죄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양해각서의 성격을 가진 「대한민국 국방부 - ○○○공화국 국방부 간 국방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등을 근거로 ○○○ 당국에 추방명령 등 행정적 협조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한편, 여권의 반납을 명하거나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등 여권법 및 출입국절차와 관련한 행정사항을 외교부 장관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 국제정책과-1545 ('22. 3. 28.)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3098('22. 3. 30.)

28. 군인사법 제49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의미

【질의요지】

개정된 군인사법 제49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적용에 있어서 진급심사 중 또는 진급심사 이후에 배우자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답 변】

육아휴직 기간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산입되는 기준 시점은 진급심사일이 아닌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진급 선발을 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이 유】

1.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휴직기간의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서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진급 선발을 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및 ㉢법 49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개정은 진급 등에 대한 부담 없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육아공동부담을 실현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의 조성을 위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육아휴직 기간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산입되는 기준 시점은 진급심사일이 아닌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진급 선발을 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2. 법 제49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적용에 있어 진급 심사 이전 완료된 배우자의 육아휴직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육아휴직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산입함에 있어 시행령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 심사일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시행령 19조를 달리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불가하다고 판단됨.

3. 결론적으로 진급 심사일 전 이미 완료된 배우자의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의 배우자의 육아휴직 계획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진급심사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면 법 제49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 전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볼 것임. 끝.

질의 : 인사기획관리과-4491('22. 4. 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3822('22. 4. 18.)

29.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재판 결과 확정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재판 결과 확정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답 변】

분리조치의 철회 여부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임.

【이 유】

1. 「부대관리 훈령」 제244조 제1항은 성폭력 신고상담이 접수된 단계부터,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대장에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³⁴⁾하고 있을 뿐, 이러한 분리조치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두고 있지 않음

34) 부대관리 훈령 제24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각 부대장은 성폭력 신고상담이 접수된 단계부터 성고충전문상담관 또는 양성평등담당관의 조언을 받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우선 분리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가해자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1. 가해자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
2.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지, 숙소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하되, 보직해임, 파견 등 인사조치를 적극 활용한다.
3. 피해자의 휴가(휴직) 등으로 자연 분리된 경우라도 소문 유포, 탄원서 작성 강권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해자는 원 소속부대에서 분리한다.

2.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를 규정한 다른 법령들을 살펴보면 ①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5조 제6항은 ‘인사혁신처장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피신고자에 대하여 근무장소를 변경하도록³⁵⁾ 임용권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②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제3항은 ‘임용권자등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위 규정들을 검토하면,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는 법원의 ‘사실확정 전’이라도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행되는 것으로, 이는 정책적으로 피해자 등을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이고,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가 법원의 사실확정 여부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따라서 가해자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³⁶⁾ 부대장에게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를 철회할 의무가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분리조치의 철회 여부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끝.

질의 :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736('22. 5. 4.)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4865('22. 5. 16.)

35)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5조 제6항 제1호

36)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도 아님

◎ 징계

30. 부사관 근무 중 제적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軍 부사관 근무 중 제적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답 변】

「군 인사법」상 ‘제적’이 군인 징계령(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한다거나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이 유】

‘제적’이란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처분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질서문란자에게 제재행위를 가하는 징계와는 그 개념이 다름. 또한 ‘제적’은 「군인사법」 제40조에서 정하고 있는 반면, 징계는 「군인사법」 제56조부터 제61조, 「군인징계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군 인사법」상 ‘제적’이 군인 징계령(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한다거나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끝.

질의 : 경상북도 소방행정과-1210('20. 1. 23.)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857('20. 1. 30.)

31. 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교처분이 인사소청 대상인지

【질의요지】

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교처분 등에 대해 지금까지는 인사소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에서 퇴교처분취소소송으로 다투었는바, 군인사법의 인사소청(필요적 전치주의 포함) 관련 규정을 군인사법 개정 없이 해석에 의하여 사관생도에게 적용이 가능한지

【답 변】

사관생도에게 인사소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려면 군인사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 유】

1. 심사를 소청할 수 있는 ‘군인’의 의미

「군인사법」 제50조는 군인은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1조에서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 병의 소청심사에 대한 관할은 정하고 있는 반면, 사관생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군인사법」에 ‘군인’에 대해 따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사관생도를 포함하지 않고, 「군인사법」 제50조는 본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소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

으나(법률 제12747호, 2014. 6. 11) ‘병’도 소청을 할 수 있도록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서 ‘군인’으로 개정하였는바(법률 제12904호, 2014.12.30.)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 연혁 등을 고려할 때 「군인사법」 제50조의 ‘군인’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관생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2. 「군인사법」의 적용대상 및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준사관의 대우를 받는다’의 의미

「군인사법」은 적용대상으로 사관생도를 포함하고 있고,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은 사관생도는 준사관의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에 사관생도가 포함한다고 하여 군인사법의 모든 조항이 사관생도에게 적용되거나 준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 그리고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은 사관생도의 입·퇴학은 각 학교의 장이 명한다고 규정하고, 퇴학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각 학교의 장이 국방부 장관의 승인³⁷⁾을 얻어 학칙을 정할 수 있게 규정한 점을 볼 때, 사관생도로서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사관학교 설치법」 및 관련 학칙이 군인사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아울러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의 ‘준사관’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예우를 받는 기준을 의미할 뿐(군인사법 시행령에서는 사관생도의 서열을 준사관 다음으로 정하고 있음) 준사관과 동일한 국가공무원의 신분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한 소청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아직 장교로서 임용³⁸⁾되지

37)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 (학칙)

- ① 각 학교의 장은 해당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칙 중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많은 사관생도가 「군인사법」 규정을 준용하여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실익도 특별히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결 론

「군인사법」 제50조 '군인'의 의미, 사관학교 설치법 상의 규정, 소청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관생도가 「군인사법」 제50조의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심사를 하려면 군인사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끝.

질의 : 법무담당관-3471('20. 5. 6.)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4296('20. 5. 21.)

38) 군인사법 제11조 (장교의 임용)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2.12.18, 2017.3.21>

1.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5.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6.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성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 임관(현지임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7의2.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
8.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2.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 1심 재판 결과를 근거로 육아휴직 복직 및 기소 휴직 처분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 1심 재판 결과를 근거로 육아휴직 복직 및 기소 휴직 처분이 가능한지

【답 변】

기소 휴직 처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하여 복직 명령을 발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 유】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은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 및 단기복무 중인 여군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특별한 사정이란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2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함.

이외 군인사법령상 별도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복직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

①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복직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준하는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현재 대상자에 대하여 기소 휴직 처분을 하는 상황이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문인 점, ② 이제까지 실무적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기소 휴직 처분한 선례가 없으며, 육아휴직과 기소휴직의 각 법률적 효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법령상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때, 기소 휴직 처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하여 복직 명령을 발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끝.

질의 : 해군본부 해양법제과-1674 ('20. 4. 14.)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4902('20. 6. 9.)

33. 지휘관의 의견에 따른 재심의 가능한지

【질의요지】

감사처분 결과에 대한 재심의 후 결과가 지휘의도와 부합되지 않아, 지휘관 지시에 의한 추가 재심의를 할 수 있는지

【답 변】

지휘관 지시에 의한 추가 재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이 유】

1.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감찰예규는 재심의와 관련하여,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자는 감찰실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회 의결 후 심의결과서와 결정문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심의결과 감사처분요구가 위법 부당하거나 과오에 반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휘관에게 추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2. 대법원은 징계절차에 관한 사안에서, 학교장이 학생징계에 관하여 규정한 선도규정이, 무기정학 이상의 중징계에 관하여 그 절차와 사유를 특히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신중과 공정을 기하고 학생의 신분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고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위 절차에 의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징계권자인 학교장도 이 절차에 기속되어 이를 어기고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4737 참조)

고 판시한 바 있음. 본 사안은 징계절차에 관한 사안은 아니나, 본격적인 징계절차 전의 처분요구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는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를 어기고 규정에도 없는 지휘권자의 추가 재심의 요구에 따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음. 끝.

질의 : 국방부 근무지원단 감찰실-115('21. 1. 18.)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754('21. 2. 5.)

34. 판결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 징계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질의요지】

민원인이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에 실시된 경우, 국방부가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답 변】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이유에 실시되고,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된 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면, 직권취소가 가능한 ‘특단의 사정’에 해당될 것으로 보임

【이 유】

1. 본 사안과 관련하여 질의부서의 견해는 ① 징계처분은 징계 간사의 조사, 사실확정, 징계협의자의 변론,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지는 불가변력³⁹⁾이 있는 준사법행위로서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 의결을 확인하여 징계처분을 집행한 다음에는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근거가 없고, ②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 의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9) 일부의 행정행위는 처분청도 당해 행정행위에 구속되어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데, 행정행위가 갖는 이러한 힘을 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이라 합니다. 행정심판의 재결 같은 준사법적 행위에는 실질적 존속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으므로, 징계처분도 준사법적 행위로 불가변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존속력(형식적, 실질적 포함)은 일단 발해진 행정행위를 존속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확정판결과 같이 영속적·종국적으로 관계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은 아닙니다.(행정법원론(상) 27판 441p, 홍정선, 일부 발췌)

징계권자가 심사청구 또는 감경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특단의 사정’이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거나(예,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 판결문의 이유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직권취소가 가능한 ‘특단의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임. 결국, ‘특단의 사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특단의 사정’을 판시한 대구고등법원 판결내용과, ‘특단의 사정’을 이유로 징계처분의 직권취소를 인정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살펴보고 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대구고등법원은, ‘징계권자로서는 징계의결대로 징계처분을 집행한 다음에는, 징계권자 자신에 의한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중략)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의 주장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⁴⁰⁾ 징계처분의 취소와 관련하여 “특단의 사정”⁴¹⁾에 대하여 명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법제처의 법령해석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에 따른 징

40) 본 사안은 징계권자(범◆전신전화국장)가 징계혐의자에게 감봉4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이를 상부기관에 보고하니, 상부기관에서 기관소청을 제기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감봉 4월의 징계처분이 부당처분이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혐의자를 파면에 처해달라는 기관소청을 제기한 사안임.

41) 징계절차는 아니지만 특허법원은,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송의 기속력이 배제되기 위한 특단의 사정은 ①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 있거나 ②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사정을 의미하고, 새로운 사실은 심결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사실을 가리키고, 새로운 증거는 취소된 심결의 심판절차 및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결론을 반복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를 가리킨다고 한 바 있음

계처분의 취소요구의 경우 이를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이는 징계처분을 취소할 특단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하였음. 아울러, 징계처분의 취소는 징계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바가 적은 반면 그의 법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이므로, 징계권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한다고 해도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을 인정하는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3. 그런데, 확정된 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⁴²⁾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라 하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이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재결을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⁴³⁾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 30703 판결 선고) 대전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이 확정된 이상, 행정청인 우리 국방부는 이러한 법원의 인정사실에 대해 존중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사법부가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확정된 판결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있을 경우 재심을 허용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되고 더욱이 이러한 사실이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특단의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특단의 사정을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임

4. 대전지방법원은 징계처분에 대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민원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후의 진급심

42) 대법원 2018.8.30. 2016다46338 판결

4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확정된 민사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이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한 사안에서, 그 재결이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고, 사용자乙에게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응소를 강요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 보직결정, 포상 등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징계대상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등 징계처분의 존재를 신뢰한 제3자의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징계원인인 사실관계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음. 그런데 법원의 위와 같은 입장은,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통제 관점에서, 행정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무효로 보는 중대명백설 입장으로 판단한 것으로 행정청이 징계처분의 직권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음

징계처분의 취소는 위 법제처 법령해석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징계대상자의 법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크고, 위 대전지방법원의 판시한 기준을 보더라도 민원인은 이미 전역하였으므로 진급심사, 보직결정 등이 문제될 여지는 없으며, 포상 등과 관련하여도 제3자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직권취소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5. 위와 같은 ‘특단의 사정’의 의미,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의 효력,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 징계처분 취소로 인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고려한 결과, 본 사안은 징계처분의 불가변력을 배제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 법무담당관-920('21. 1. 27.)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3325('21. 3. 17.)

35. ○○본부 예하 장성급 부대에서 직권면직 처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가 가능한지

【질의요지】

○○본부 예하 장성급 부대에서 관련 법령, 정보본부 내규에 따라 직권면직 처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가 가능한지

【답 변】

○○본부 예하 장성급 부대에서 직권면직 처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 유】

1. 「군무원인사법」 제5조 제1항 제2호44), 제6조 제2항45), 제13조46)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6급 이하 일반 공무원의 임용권, 보직권을, “국방부 직할부대장”이나, “장성급부대장”에 위임할 수 있고, 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장으

44) **군무원인사법 제5조 (군무원인사위원회)** ① 군무원인사제도의 개선과 공정한 인사관리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부대에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이나 보직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사람을 장으로 하는 기관 또는 부대

45) **군무원인사법 제6조 (임용권자)** ②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군무원 중 이에 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임용할 수 있다.

2. 국방부 직할부대 · 기관의 장(이하 "국방부직할부대장"이라 한다)

3. 장성급(장성급) 장교인 부대 · 기관의 장(이하 "장성급부대장"이라 한다)

46) **군무원인사법 제13조 (보직)** ① 군무원의 보직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참모총장 · 장성급부대장 또는 대령급부대장이 행할 수 있다.

로 하는 기관 또는 부대에 군무원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음. 또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⁴⁷⁾에 따르면, 임용권, 보직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그런데, 「군무원인사관리 훈령」 제4조⁴⁸⁾ 및 국방○○본부 내규 제7조에서 6급 이하 군무원의 임용권은 ○○본부장(국직부대장)에게까지만 위임하고 있으므로, ○○사령관에게(장성급 부대장) 6급 이하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없음. 그렇다면, 군무원 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지 않은 장성급 부대장이 속한 부대에서 직권면직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되는데, 임용권을 위임받지 않은 부대(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 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임

3. 따라서, ○○본부 예하 장성급 부대에서 직권면직 처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는 가능하지 않고, 정보본부 내규 「군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46조 제2항 후문⁴⁹⁾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 국방정보본부 계획운영실-3859('21. 4. 16.)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5754(2021. 5. 2.)

47)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조 (기능)**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이하 "부대"라 한다)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
2. 승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3.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대의 장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48) **군무원인사관리 훈령 제4조(임용권)** ② 6급 이하(전문군무경력관 나군 및 다군 직위 임용자, 일반임기제군무원 6급 이하를 포함한다)일반군무원과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제1항의 국방부장관이 채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한시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및 국방부직할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장에게 위임한다.

49) 제46조 (직권면직) ② 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하부대는 사령부 주관 인사위원회 심의 후 심의결과를 본부에 건의하여야 하며, 본부는 검토하여 승인한다.

3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취소결정 관련

【질의요지】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취소 결정 이후 처분권자는 즉시 취소하여야 하는지
2. ‘징계 또는 재임용 거부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취소를 보류하고 재심사해야 하는지

【답 변】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감봉 1월 처분’과 2021년 3월 1일자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재결’로 재결의 형성력에 따라, 해당 처분은 이미 취소되었음.
2. 본 사안은 절차상 하자에 관한 것이므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징계 또는 재임용 절차를 끝낼 필요가 있음.

【이 유】

1.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보호 활동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3호50)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처분권자에게

50)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보호 활동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소청심사 결정)

-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9.4.23>
 1. 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행정심판 관련 사안에서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하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88. 4. 24., 97누17131 판결)

그런데 본 사안에서, 교원심사소청위원회는 주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21. 2.26.자 감봉 1월 처분과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처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미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됨.

2.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⁵¹⁾은 ‘심사위원회 결정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 처분권자는 청구인에 대한 징계 절차 또는 재임용 절차를 다시 밟아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 절차 또는 재임용 절차를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의 취지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 또는 재임용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절차나 형식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기속력 위반 아님), 만일 이 징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의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소요된다면 청구인의 권리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 기간을 한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생각됨.

51)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③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 처분권자는 청구인에 대한 징계 절차 또는 재임용 절차를 다시 밟아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징계 절차 또는 재임용 절차를 끝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한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행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본 사안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에 '징계 및 재임용절차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본안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 및 재임용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있음.⁵²⁾ 끝.

질의 : 국방대학교 교육기획처-1817('21. 8. 20.)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0309('21. 9. 2.)

52) 규정상 강행규정이라고 판단되며, 본 사안은 취소결정으로 이미 피청구인의 처분이 취소가 되었으므로 '취소명령 결정'이나 '변경명령 결정'과 관련있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37. 지휘관의 권한으로 인사운영위원회 재심의 회부가능 여부

【질의요지】

인사운영위원회 심의종료 후 결재권자가 재량에 의하여 인사운영위원회 재심의 회부 가능 여부 및 심의 결과와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지

【답 변】

지휘권자가 인사운영위원회에 재심의 회부를 하거나 심의결과와 다르게 결정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기 바람.

【이 유】

1. 통상적으로 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징계위원회, 「광업법」에 따른 광업조정위원회와 같이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심의, 자문,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뿐 의결에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음.⁵³⁾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의 경우 그 의결이 관계 행정기관을 구속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며,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 다만,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는 그 결정이 바로 국가의 의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 행정기관이 그 결정

53) 법령입안 심사기준 364p(법제처)

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굳이 법률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차이가 있음.⁵⁴⁾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사령부 인사관리에 관하여, 훈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9까지 따로 정하고 있으며, 각 군으로의 원복에 대하여는 제46조의8⁵⁵⁾에서 정하고 있는데, 부대근무 부적격자가 원복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대근무 부적격자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사령부 인사관리 규정 제55조는 인사운영위원회의 회부절차, 심의대상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령부 인사관리규정 제55조>

- ① 인사운영위원회 회부를 **건의**, 특별한 경우 회부하지 않을 수 있음(기획관리실→사령관)
- ② 징계사유가 있는자는 징계위원회 회부 후 인사운영위원회 개최, 다만, 특정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처리
- ③ 2항의 단서의 경우에도 성폭력, 정보예산 비위로 사령부 내 징계가 타당한 경우, 또는 중징계 사안으로 사령부 내 처리가 적합한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 후 징계결과에 따라 처리
- ④ 인사운영위원회는 ~ 심의하며,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대상은 아니나 부대 복무 부적합한 인원에 대해서는 원복으로 의결할 수 있음
- ⑤ 인사운영위원회는 **심의사항 및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 ~ 등을 건의
- ⑥ 인사운영위원회에서 계속근무로 결정된 자는 인사조치 및 자료존안 처리

○○사령부 인사운영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위원회로 사령부 내부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령관의 판단에 따라 인사운영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인사운영위원회는 심의사항

54) 법령입안 심사기준 366p(법제처)

55) 제46조의8(원복) ① 사령관은 사령부 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각 군으로 원복을 요청할 수 있다.

- 1. 정원조정, 조직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 등으로 인력 조정이 필요한 경우
- 2. 개인이 희망하는 경우
- 3. 비위, 보안위규 등에 연루되어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 4. 사령부 자체 근무적합성 평가(획득 후 3, 8, 13년차) 결과 근무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

② 사령관은 사령부 전문인력 원복시 각 군과 협의하며, 해당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복되는 전문인력은 해당특기에서 해임된다.

뿐만 아니라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무’, ‘보직변경’,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 회부’, ‘원복조치’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령부 인사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임

2. ○○사령부 인사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이므로, 사령관은 위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구속되지 않음. 다만, 인사관리규정은 ‘인사운영위원회 심의에서 ‘계속근무’로 결정된 자는 인사조치(부대 조정) 및 자료존안(부대근무 적합성 평가시 제공)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55조 제8항), 별지4. 인사운영위원회 회부사유 및 처리기준에도 음주운전의 경우, 현역은 인사운영위원회에 원복심의를 하도록 하고, 계속근무로 심의의결 된 경우, 자료존안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별지4. 인사운영위원회 회부사유 및 처리기준>

구분	문제 유발 유형	경미한 위반 (징계위 미회부)	중대한 위반 (징계위 회부)
음주 운전	면허정지 또는 취소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전 적발은 사안에 관계없이 수사개시통보서(헌병) 접수 즉시 인사운영위원회 회부 - 현 역 : 원복 심의(군무원 : 인사조치 심의) *음주운전 은닉 및 음주 후 인적·물적 피해 유발 시에도 심의대상 포함 ○ 인사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계속근무 결정시 - (공통) 인사 조치(부대 조정 등), 위원장 정신교육 - (군무원) 근무평정 ‘가’등급 부여 권고 - 자료 존안(진급·승진 심사시 제공)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유발 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유발 후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한편, 대법원은 퇴학처분과 관련된 사안에서 ‘학교장이 학생징계에 관하여 규정한 선도규정이, 무기정학 이상의 중징계에 관하여 그 절차와 사유를 특히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신중과 공정을 기하고 학생의 신분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고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위 절차에 의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징계권자인 학교장도 이 절차에 기속

되어 이를 어기고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91누4737)⁵⁶⁾

3. 위 사령부 인사관리규정의 내용 및 대법원 판례의 판시내용을 고려할 때, 만일, 인사운영위원회에서 ‘계속 근무’로 심의·의결했음에도, (규정에 없 는) 재심의 회부지시에 따라, 다시 심의·의결되어 인사운영위원회에서 ‘원복 조치’ 등의 종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하거나, 위원회가 “계속근무”로 심의·의 결하였음에도 인사관리규정 제55조 제8항에 따르지 않고 사령관이 해당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이러한 처분은 해당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끝.

질의 : ○○사령부 법무실-1375('21. 11. 23.)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3576('21. 12. 7.)

56) 본 대법원 판례는 퇴학처분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강조한 것으로, 본 사안의 당사자는 ○○사령부 소속 직원으로 관련규정 및 기준에 따라 선발되어 부대에 배속되고, 원복하는 경우 진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참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제3장 보건 · 복지 · 병역

◎ 보건

38. 국군수도병원에서 환자치료 후 후방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 인수받는 병원균의관의 판단에 따라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국군수도병원에서 환자를 급성기 치료 후 의무사령부를 통해 후방병원 및 원소속 지원 군 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 인수받는 병원 균의관의 판단에 따라 후송환자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답 변】

인수받는 병원 균의관의 판단에 따라 후송환자의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일정한 경우 균의관의 판단과 책임 하에 후송환자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함.

【이 유】

국군수도병원에서 급성기 치료 후 의무사령부를 통해 후방병원 및 원소속 지원 군 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 인수받는 병원 균의관의 판단에 따라 후송환자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본 질의의 취지는 국방 환자관리 훈령과 국군의무사령부 규정인 환자관리 규정상 입원환자 후송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입원환자를 인수받는 병원 균의관의 판단에 따라 후송환자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로 이해됨.

① 의료법 제47조의2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원칙적으로 입원환자를 전원시키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와 환자(보호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점, ② 그러나 국군의무사령부는 국군조직법 제3조에 의하여 ‘군사상 필요’로 대통령령인 국군의무사령부령으로 설치된 부대로서, 국군의무사령부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국군의무사령부 부서와 부대의 조직, 업무 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는바, 국군의무사령부는 민간의료기관과는 달리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이고, 국방부 장관은 국군의무사령부 부서와 부대의 조직, 업무 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점, ③ 또한 군 병원별 시설, 진료수준, 입원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군 보건의료기관 간 환자를 적절히 분산할 필요가 있는 등 군 보건의료기관의 특수성이 있는 점, ④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군 병원으로의 집단 및 개별 후송은 국군의무사령관 통제하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군 병원에서 각 군 예하 군 병원으로 후송 또는 전원 소요 발생시 국군의무사령관은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과 협의 하에 실시한다고 규정하여 국군의무사령관 단독으로 환자후송을 결정하지 않고, 각 군 의무실장과 협의 하에 실시하는 점, ⑤ 또한 위 훈령 제33조는 환자후송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여 환자후송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⑥ 법령 또는 훈령·예규상 환자의 인수 거절에 관한 판단과 절차에 관한 규정 없이, 입원환자 또는 긴급환자를 후송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받는 병원 군의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그 환자의 후송을 거절함에 따라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규정상 인수받는 병원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후송환자의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일정한 경우 군의관의 판단과 책임 하에 후송환자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됨. 끝.

질의 : 보건정책과-406('20. 1. 16.)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735('20. 2. 27.)

39.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답 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됨.

【이 유】

① 자가격리 대상자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점, ②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 목적과 행정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판례 2014. 4. 10, 2011두31697 판결 등), 응시자 간 감염병 전파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예: 2015년 메르스 사태시 서울시 공무원 필기시험의 경우 사전신청을 받은 3명의 응시자에 대해 자택 응시를 실시한 사례 등)가 있음에도, 시험응시 기회 박탈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경우 위 박탈 행위는 필요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점 ③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 상으로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가격리대상자에게 가급적 응시 취소를 권장할 수 있을 뿐, 자가격리대상자 중 취소를 원하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됨. 끝.

질의 : 예비전력과-1523('20. 3. 26.)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2703('20. 3. 30.)

40. 코로나19로 수당의 지급요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경우, 특수업무수당을 별도의 조치를 통해 지급 가능한지

【질의요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하여 분기 1회 이상 비행 훈련 또는 승무 유지 훈련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지

【답 변】

실제로 비행유지훈련 또는 승무유지훈련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위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이 유】

①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 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동 규정 별표 11 다. 7)부터 10)까지 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임받아 국방부령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위와 같은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동 규칙 별표 2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는 실제로 분기 1회 이상

비행훈련(모의훈련은 제외한다) 또는 승무유지훈련(모의훈련은 제외한다)을 한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점, ② 위와 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은 각 대통령령과 국방부령으로서 행정규칙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비행유지훈련 또는 승무유지훈련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됨.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으로서, 차후 감염병 예방 등 공익상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함. 끝.

질의 : 복지정책과-1573('20. 3. 4.)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2826('20. 4. 2.)

41. 승인받은 청원휴가와 별도로 시행령 개정 후 30일의 청원휴가를 추가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질의요지】

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에 관하여, 이미 승인받은 청원휴가와 별도로 시행령 개정 후 30일의 청원휴가를 추가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답 변】

본 사안의 경우 이미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청원휴가를 승인받았으므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추가로 요양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이 불가함.

【이 유】

개정된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30일 이내.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 규정에서 “연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만큼 문언상 본인 요양목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청원휴가의 일수는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시행령 개정 전후를 나누어 별도로 기산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본 사안의 경우 이미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청원휴가를 승인받았으므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추가로 요양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이 불가함. 따라서 소관부서에서는 본 사안의

대상자가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시어 결정하기 바람. 끝.

질의 : 보건정책과-1354('22. 2. 1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2412('22. 3. 8.)

◎ 복지

42.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8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장애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의미

【질의배경】

군인연금법 제32조 제1항은 군인이 군복무 중의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제정된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2항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 외의 군인은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새로 제정된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의 적용 시기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8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장애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2020. 6. 11. 이전 군인연금법 제32조 제1항의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지, 2020. 6. 11. 이전에 퇴직을 한 자를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됨.

【질의요지】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8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장애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2020. 6. 11. 이전에 군인연금법 제32조 제1항의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지, 2020. 6. 11. 이전에 퇴직을 한 자를 의미하는지

【답 변】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8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장애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① 2020. 6. 11. 이전에 군인연금법 제32조 제1항의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한 자와 ② 퇴직 후 2020. 6. 11.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판단됨.

【이 유】

① 군인연금법 제32조 제1항은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2020. 6. 11. 시행될 예정인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8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애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32조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0. 6. 11. 이전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 하거나 “퇴직 후 2020. 6. 11.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② 과거와 달리 2020. 6. 11. 시행될 예정인 군인 재해보상법 제32조 제1항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등”외의 군인을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 ③ 위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8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 당해 법률 소관부서의 의견도 같은 취지인 점(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관련 소관부서 의견 제출, 국방부 군인연금과-1756) 등을 고려하면,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8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장애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란 ① 2020. 6. 11. 이전에 군인연금법 제32조 제1항의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한 자와 ② 퇴직 후 2020. 6. 11. 이내에 심

신장에 판정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끝.

질의 : 육군본부 법제과-1506('20. 4. 6.)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3114('20. 4. 13.)

43. 군소음보상법 관련 질의

【질의요지】

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 시행규칙에서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 기준만을 명시하고 위 지역에서의 시설물 용도 제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
3. 법에서는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제한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 위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 변】

1. 법에서 정하는 소음피해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합니다) 지급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함.
2.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용도 제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위법하다고 평가될 소지가 있음.
3. 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평가될 소지가 있음.

【이 유】

1. 질의 1에 대하여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형식과 취

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 10483 판결 등 참조).

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보상금의 지급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① 법의 취지는 대한민국 내에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점, ② 보상금 지급기준은 이 법 및 이 법의 하위규범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국가(국방부장관)가 위 기준 및 보상금지급 대상지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인 점에 비추어 보상금 지급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에 해당하는 점, ③ 법에서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드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명시하고 있는 점, ④ 위 법 제13조에서는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국가(국방부)가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보상금 지급여부 또는 보상액을 다투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국방부)가 행정기관으로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상금 지급사무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로 평가함이 타당함.

2. 질의 2에 대하여

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는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

도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인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 각 조항에 따라 ①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및 ② 용도가 제한되는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을 모두 시행규칙에 규정하여야 함.

그러므로 법에서 일정한 자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와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6조 제3항을 통해 명시적으로 그 제한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만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경우 시행규칙에 규정하여야 하는 내용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상위규범의 위임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3. 질의 3에 대하여

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을 전제로 설치 및 용도가 제한되는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인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규칙에서는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한편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그 하위법령은 무효가 되는데, 법에서 일정한 자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와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6조 제3항을 통해 명시적으로 그 제한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기준을 명시하는 경우, 이는 시

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취지 및 명문규정에 반하게 되므로, 해당 시행규칙의 내용은 상위규범의 위임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음. 끝.

질의 : 군소음보상TF-1077('20. 6. 18.)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5666('20. 6. 26.)

44. 주거지원보증금의 부족분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업무담당자가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에게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지원보증금 납입액을 미고지하거나 위 훈령의 기준보다 적게 고지한 경우,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거지원보증금으로 납입하였어야 할 금액과 실제 납입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 유】

1. 대부자가 주거지원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납입하여야 하는 액수는 국가와 대부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위 훈령에서는 주거지원보증금의 징수 기준을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국가가 민간주택대부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국가가 위 훈령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주거지원보증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 또는 잘못 고지한 금액을 주거지원보증금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와 대부자 사이에 확정적·불가변적인 계약이 성립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행정기관은 위 훈령 [별표4]의 기준에 따라 대부자들에게 주거지원보증금을 징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준에 따른 주거지원보증금과 실제 징수한 주거지원보증금과의 차액은 일응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2. 다만, 위와 같은 추가징수가 처분에 해당한다면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 구체적인 제반사정에 따라 위법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본 사안에서는 주거지원보증금 징수의 성격 및 그것이 처분에 해당한다면 정당하게 징수하였어야 하는 금액과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서 정하는 주거지원보증금 징수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징수’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조세나 수수료 등을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임’(고려대한국어사전 참조)이고, 위 훈령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대장이 징수를 유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거지원보증금 징수는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으로 보이기도 하나, 통상 그 성질이 처분으로 이해되는 다른 법률들⁵⁷⁾에서 정하는 징수와는 달리 주거지원보증금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국가가 대부자에게 징수하는 주거지원보증금은 대부자가 대부금을 적기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 등에 충당하게 되는 등 사인 간의 거래에서 활용되는 보증금의 용도와 유사하므로, 주거지원보증금 징수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움.

3. 그렇다고 하더라도 ①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등 군인에 대한 주거지원

57) 예컨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은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군인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주거지원보증금은 동조 제2항에서 말하는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징수’로서 주거지원에 부수하여 국가가 군인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와 입주자 사이의 대등한 관계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더욱 큰 점, ② 위와 같은 징수의 사전적 정의, 대부자에 대한 부대장의 주거지원보증금 징수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 징수된 주거지원보증금은 군인복지기금 중 주거지원계정으로 납입되고 이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등 군인에 대한 주거지원에 사용되는 점 등에 의하면 비록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거지원보증금 징수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처분에 유사한 실질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점, ③ 주거지원보증금의 징수를 처분으로 이해할 경우 주거지원보증금의 징수에 있어 국가가 더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권리구제의 측면에서도 입주자에게 더욱 유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거지원보증금 징수의 법적 성질이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그리고 이처럼 주거지원보증금의 징수가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할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① 최초 주거지원보증금의 납입고지 내지 미고지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② 최초 주거지원보증금으로 징수된 금액이 정당한 금액이라거나 주거지원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신뢰한 것에 대부자의 귀책사유는 없는지, ③ 대부자가 실제로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④ 주거지원보증금 추가징수로 인하여 최초의 징수금액이 정당한 금액이라거나 주거지원보증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다고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⑤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 발생하는 손실과 추가징수를 할 경우 대부자가 입는 손해와의 이익형량, ⑥ 위 훈령에 따른 하자 없는 주거지원보증금 징수의 상대방이 된 다른 입주자와의 형평성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끝.

질의 : 공군본부 법제과-2214('20. 5. 13.)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9290('20. 9. 8.)

45. 지원금 신청기간 및 수급권리에 관하여

【질의요지】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법령체계와 취지, 법령상 지원금 수급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및 수급권리에 대한 법령해석 및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기(既) 공고된 사항을 수정할 경우,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답 변】

법령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지원금 지급 신청기한은 2020년 9월 21일로 판단되나, 금번 지원금 신청 관련 공고 시 신청기간이 2020.10.15.까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2020. 10. 15.까지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 유】

1.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는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같은 법에 따라 주한 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2. 이 때, 동 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동 법 제4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2020년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동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3. 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국방부장관에게 2020년 9월 21일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신청 기한은 민법 제161조에 따라 익일인 21일에 만료) 금번 지원금 신청 관련 공고 시 신청기간이 2020.10.15.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2020. 10. 15.까지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됨. 끝.

질의 : 미국정책과-3156('20. 9. 1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9575('20. 9. 14.)

46.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지연이자의 부과 관련

【질의요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임대차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원금대부 연장을 신청하여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원금대부 연장신청 승인 전일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상환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지

【답 변】

현행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등 관련 규범에 의할 때,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원금대부 연장신청 승인 전일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상환지연이자를 대부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가능함.

【이 유】

1. 「군인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9조에서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금전징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이하 ‘훈령’이라 합니다)에서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훈령 제27조 제1항에서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사유 중 하나로 주택임대차계약 종료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대부자가 대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대부기간은 해당일로부터 기산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음.⁵⁸⁾ 또한, 훈령 제28조에서는 주택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

58) 그리고 여기에서 ‘해당일’이라 함은 그 문언 및 문맥에 비추어 부대장이 대부기간 연장결정을 한 날로 이해됩니다.

을 때, 이자 및 월 차임지원의 경우에는 즉시, 원금지원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3일 이내에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부대장은 대부자가 위 기간 내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상환지연이자를 대부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

2. 위와 같은 훈령의 내용 및 관련 자료에 비추어 보면, 본 사안에서는 ①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이를 종전 임대차가 종료된 후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아닌 종전 임대차의 기간 연장에 해당하여 아직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및 ②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훈령에 따른 대부기간 종료시점 및 상환지연이자 징수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종전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의제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③ 대부자의 귀책사유 없이 대부금 상환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환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임.

먼저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기간 연장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건대, 「민법」 제639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그 문언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그 임대차는 단순한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유지된 채 임대차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기존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고, 그 기간이 끝난 때부터 종전 임대차계약의 조건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효력을 발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3. 다음으로 훈령에 따른 대부기간 종료시점 및 상환지연이자 징수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종전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의제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훈령에서는 막연히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 상환기한을 명시하고 있을 뿐, 주택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여타 관련 규범에서도 그와 같이 해석

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 즉, 본 사안처럼 주택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관하여 대부금 상환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정책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 훈령 규정의 해석상 최초의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종료되고, 원금대부를 받은 대부자는 그로부터 3일 내에 대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며, 주택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하여 그 상환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해석할 만한 규범상 근거는 부족함.

4. 마지막으로 대부자의 귀책사유 없이 대부금 상환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환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① 훈령 제28조 제4항에서는 상환지연이자를 대부금 상환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상환지연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상환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고 있는 점, ② 대부자의 대부금상환채무는 금전채무이고 상환지연이자는 그 성질상 대부금상환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397조 제2항에서 보듯 채무자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부금 상환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부자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환지연이자의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설령 대부자의 주장과 같이 대부자가 대부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환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끝.

질의 : 군주거정책과-2170('20. 10. 16.)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1484('20. 11. 2.)

47.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인 부사관 후보생이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대상이 되는지

【질의요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사관후보생이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 위 규정 제15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대상이 되는지

【답 변】

본 질의의 대상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이 유】

1. 본 질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사관으로 복무하려는 사람으로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하거나 부사관으로 복무 중 간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 위 규정 제15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위 사람에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하는지로 이해됨.

2. ① 군인사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제도는 국방부 차원에서 우수한 장교와 부사관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제7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바, 군인사법 제7조 제4항 본문에서는 ㉠ 제62조 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는 구별하여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서는 ㉡ 제62조 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 이내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과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으로 명확히 구별하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군인사법 제62조 제3항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선발·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방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각급 학교(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려는 사람을, 같은 시행령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고등학교, 각급 학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부사관’으로 복무하려는 사람을 구별하여 규정하여, ‘장교’로서 복무하려는 사람과 ‘부사관’으로서 복무하려는 사람을 구별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점, ④ 본 질의의 대상자는 ‘부사관’으로서 복무하려는 사람으로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바, 만일 ‘부사관’으로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지원하지 않았다면 경쟁자 중 후 순위의 사람이 부사관으로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어 위 지원금을 받고 부사관으로서 임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향후 ‘부사관’으로서 복무하려는 사람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한 이유는 ‘부사관’으로서 인력을 활용하려는 취지인 점), 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각 군 참모총장은 같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선발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부사관’으로 복무하려는 사람으로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장교’로 복무하려면 같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의 취소를 신청⁵⁹⁾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면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같은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부사관 가산복무 선발자가 사관학교 및 3사관학교 졸업 등으로 장교로 임용을 희망하는 경우 부사관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선발취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지원금은 반납하여야 한다는 소관부서의 견해가 있는 점(국방부 인력정책과-4709, 2020. 11. 16.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소관부서 의견 송부), ⑥ 군인사법 제62조 제2항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 같은 법 제7조

59)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부사관이 아닌) 장교로 임용된 것으로서, 이 경우 본인에게 군인사법 제6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서 선발취소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은 이를 전제로 하여 선발취소에 관하여 규정을 둔 것이라 할 것임. 더 나아가 이러한 선발취소 신청 의무는 장교로서 임용된 경우 이외에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병 또는 다른 역종으로 분류된 경우 등도 마찬가지로 발생함.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 본인(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군위탁생규정에서도 제12조 제1항은 군위탁생으로서 ㉠ 교육과정이 학위 과정인 경우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등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위탁생으로서 교육을 마치지 못하거나(군위탁생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군위탁생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수학 기간 중 입학금·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본인(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군위탁생규정 제13조의2에 따라 군위탁생으로서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미리 계획된 활용예정부서 또는 교육이수분야와 관련이 있는 직무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데 장애(障礙)가 될 만한 사유(위탁 교육을 받은 인력으로서 활용하기 어려운 사유)를 위 군위탁생규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등을 반납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점(본인의 선택에 따라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부사관 인력으로서 활용할 수 없으므로, 향후 부사관으로서 복무할 사람으로서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 애초에 본 질의의 대상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고등학교, 각급 학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부사관으로 복무하려는 사람으로서 육군 등 각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향후 부사관이 될 것을 조건으로 위 규정에 따라 위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서, 본 질의의 대상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부사관이 되어야 하는 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것인 점,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2조 제1항은 부사관임용지원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 중 지원자에 대해서는 사관학교 또는

대학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 규정에 따라 향후 부사관으로 임용될 것을 조건으로 위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장교로서 임용될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바로 위 규정이 장교로서 임용되더라도 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는 아닌 점(장교로서 임용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지원금 반납의무는 구별해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질의의 대상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끝.

질의 : 육군본부 법제과-3810 ('20. 9. 29.)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3923('20. 12. 21.)

48.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요지】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3. 다목 및 4.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⁶⁰⁾

【답 변】

위 포상금을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국방부 훈령에서 위 포상금 지급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 유】

①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12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제보·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 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 조사·발

60) 법령해석 질의부서(국방부 병영정책과)에서는 갑설(민법.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여 상속인에게 위 포상금을 지급하되 향후 국방부 훈령에 위 사항을 규정화할 수 있는지)과 을설(민법 제1000조, 제1003조를 준용하여 상속 희망 전원에게 위 포상금을 공동 비율로 지급할 수 있는지)을 기술하였으나, 결국 현행 법령 및 규정상 상속인(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질의 요지를 수정함.

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 중 3. 본인의 유전자 시료(試料)를 제공하여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범위에서 국방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 같은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 중 4. 전사자의 유가족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 통지서, 유품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한 유가족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범위에서 국방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할 뿐, 유전자 시료를 제공하거나 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공한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위 금액을 지급할지 등(만일 본인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면 어떤 순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할지 등)을 위 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 다만,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9672호, 2019. 4. 2.>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별표 3 제3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본인의 유전자 시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274호, 2020. 12. 22.> 제2조에 따르면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 통지서, 유품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유가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포상금을 받을 권리는 ㉠ 위 법 시행령 개정(별표 3 제3호 다목의 경우에는 2019. 4. 2.부터, 별표 3 제4호의 경우에는 2020. 12. 22.부터, 이하 ‘위 법 시행령 개정’이라 함)으로 위 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유전자 시료를 제공하거나 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을 제공한 본인과 ㉡ 위 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유전자 시료를 제공하거나 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을 제공한 본인에게 발생한 것인 점, ㉣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⁶¹⁾의 규정을 적용하며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국가에 대한 채권)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는바, 따라서 위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민법 제5편 상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포상금을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국방부 훈령에서 위 포상금 지급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 병영정책과-1709 ('21. 3. 16.)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3772('21. 3. 26.)

61) 따라서 민법을 적용할 수는 있겠으나, (위 법령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명백히 없는 한) 위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49.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하던 위험근무수당의 지급 가부

【질의요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던 위험근무수당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위 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지

【답 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던 위험근무수당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위 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됨.

【이 유】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13조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군인은 별표 10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이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령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함) 제3조 제1항은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군인의 위험근무수당은 그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점, ② 위

규정과 규칙은 각 대통령령과 국방부령으로서, 행정규칙과는 달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점, 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라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바, 만일 향후 감염병 예방 등 공익상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과 규칙의 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됨. 끝.

질의 : 복지정책과-3021 ('21. 4. 29.)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5651('21. 5. 18.)

50.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신청기한 관련

【질의요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답 변】

군소음보상법에서 보상금 신청기한을 연장할만한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법령의 내용을 변경하여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해당 조항이 훈시규정에 해당한다면 신청기한 이후에 신청된 보상금에 대한 지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 유】

1. 「군소음보상법」 제14조제6항에서 보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 지자체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그 신청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함.

2.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법률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구체적

인 시점을 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령에서 보상금 신청기한을 연장할만한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법령의 내용을 변경하여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군소음보상법」의 입법 취지는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함이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전년도의 피해발생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2월 말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기한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도의 같은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기간이 지난 후 보상금을 신청한다고 하여도 그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4조는 훈시규정에 가까워 보상금 신청기한의 연장이 없더라도, 신청기한 이후에 신청된 보상금에 대한 지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따라서, 보상금 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 신청된 보상금에 대한 지급 여부에 관하여는 군소음보상법령이 행정사무의 일괄처리를 위해 보상금 신청시기, 보상금 지급통보,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시기 등 보상금 지급절차에 관련된 시기들을 특정하고 있는 점, 결정된 보상금 지급기한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행정행위의 전례는 추후 동일한 사안 발생시 그 적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정해진 기한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다음 연도의 같은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여 당사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지 않는 점 및 관할 지자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부족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끝.

질의 : 군소음보상팀-704('22. 2. 2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942('22. 2. 23.)



◎ **병역**

51. 입영 신체검사 시 귀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게 대하여 급여지급을 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입영 신체검사 시 귀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 귀가 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입영 기간 중 급여지급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답 변】

입영 신체검사 시 귀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 유】

①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고,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고 규정하나,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입영부대에서 귀가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되기 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여, 귀가 되기 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하였던 신분은 현역병으로 보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공무원 보수규정 제22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에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비고 6.에서 병의 봉급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귀가되기 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 동안 급여의 지급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③ 병역법 제7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징집·소집에 의하여 또는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군인보수법 제18조에 의하여 군인에게 출장·휴가·귀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급여와의 그 성격에서 구별되는 점(위와 같은 여비 지급을 급여의 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점), ④ 만일, 귀가 대상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초 입영시부터 복무를 지속한 후 전역한 병들과 비교할 때 복무기간에서는 동일하나, 급여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 동일한 비교집단 간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영 신체검사 시 귀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끝.

질의 : 공군본부 법제과-847('20. 2. 2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2196('20. 3. 11.)

52. 예비군 편성 및 훈련 부과의 경우 육군 또는 공군 중 1개 군을 예비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최초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다시 공군 부사관으로 재복무 후 예비군 편성 및 훈련 부과의 경우 2개 군(육군 또는 공군) 중 1개 군을 예비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지

【답 변】

현행 예비군 관련법령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서 예비군 본인에게 2개 군 중 1개 군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유】

① 법령인 예비군법 제3조의2 제3항 제1호는 ‘소속 군’에서 복무를 마친 자를 예비군 조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는 예비군의 연차별 편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군 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 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예비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속 군에서 복무를 마친 자가 예비군 조직대상자로서 군 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를 부여받는 점, ② 국방부 훈령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 제3호에서는 재복무 후 전역한 자는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 훈련과 관계없이 ‘전역한 다음 해에 신분에 맞는 1년차 훈련’부터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예비군 조직대상자는 이전에 이수하였던 예비군 훈련과 상관없이 전역한 다음 해에 신

분에 맞는 1년 차 훈련부터 부과받는 점, ③ 예비군법 제3조의2 제2항은 예비군의 편성의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재복무 후 예비군 편성과 그에 따른 훈련을 부과하는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예비군법 제4조는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대판 2009. 9. 10, 2007두20638)이나, 예비군법령과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살펴보면 재복무 후 예비군 편입시 군을 선택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⑤ 전시 활용을 고려하여 재복무 자가 전역하는 경우 최종 신분인 주특기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동원 지정)하여 훈련을 부여함으로써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 법령 소관부서인 예비전력과의 의견인 점(예비전력과-2796) 등을 고려하면, 현행 예비군법령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서는 예비군 본인에게 2개 군 중 1개 군을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끝.

질의 : 예비전력과-2796 (2020. 6. 19.)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6212('20. 7. 6.)

53.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입원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이어야만 계속 복무 의결을 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르면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군 복무 중 입원 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 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는바, 입원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이어야만 계속 복무 의결을 할 수 있는지

【답 변】

이는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4조 제1호 정책적 판단사항으로서 해당부서의 고유한 소관 업무인 경우로서 법령해석 질의 제외대상에 해당함. 다만 아래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할 수 있음.

【이 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은 현역병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르면, 위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현역병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하도록 규정함. 다만, 신체 등급이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

도 군 복무 중 입원 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 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① 병역법 제65조 제1항은 병역변경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병역변경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본문과 단서는 병역법 제65조 제1항을 구체화하여 “준칙”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점(즉, 각 군 참모총장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입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도 계속 복무 의결을 할 수 있는 점), ②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각 군 참모총장의 계속 복무 의결은 가능한 한 존중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설정된 기준이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음에도 행정청이 만연히 그에 따라 처분한 경우 또는 기준을 설정하였던 때와 처분 당시를 비교하여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정된 기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있는 점(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 96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51501 판결 등 참조), ③ 병역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에 관하여는 이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유권 해석(심신장애 전역심의 대상자의 복무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2009.10.13.)이 있는바, 병역법 제65조가 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해석은 현재도 유효한 점 등을 고려하시어, 본 질의의 대상자인 입원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계속 복무 의결을 할지를 소관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람. 끝.

질의 : 육군본부 법제과-4066 ('20. 10. 26.)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628('20. 11. 14.)

제4장 군수 · 시설

◎ 군수

54. 탄약의 무상대여 및 교환 관련

【질의요지】

1. 「군수품 관리 훈령」에 의하면 비축목표를 초과하는 탄약에 대해서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바, 비축목표를 초과하지 않는 탄약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군 장비 수출시 시범운용을 위해 탄약을 업체에 대여하고 동종·동량의 신규탄약을 상환받게 되는 경우, 이를 「군수품관리법」 및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라 교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3. 비축목표 이하의 탄약을 교환하는 경우, 그 상환시점까지 대여료에 준하는 금전 또는 현물보상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1. 현행 「군수품 관리 훈령」(이하 ‘훈령’이라 합니다)의 규정상 훈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비축목표를 초과하지 않는 탄약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없으나, 본 사안에서의 탄약이 방산물자로 지정된 경우라면, 훈령 개정 없이도 비축목표를 초과하지 않는 탄약에 대해서 「방위사업법」에 따라 군 작전 및 전력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음.
2. 관련 법령에 따라 군수품의 교환에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다면 탄약의 교환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교환하려는 탄약을 지급하는 시점과 교환된 탄약을 새로 획득하는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더라도 대여료에 상응하는 금전 또는 현물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이 유】

1. 「군수품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합니다) 제28조는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더 나아가 「군수품관리훈령」 제43조 제2항은 영 제28조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비축목표를 초과하는 탄약에 한하여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무상 대여가 가능한 탄약의 범위를 더욱 제한하고 있음. 다만, 훈령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 훈령」 제38조에 따라 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라면 비축목표 이하의 탄약이라도 대여 가능함.

한편, 「방위사업법」 제45조 제4항에서는 방산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국가가 보유한 방산물자의 대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작전 및 전력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방산물자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군수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 사안에서의 탄약이 방산물자로 지정되어 있고 그 대부가 군 작전 및 전력유지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는 비축목표 이하의 탄약이라도 대여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사안에서의 탄약이 방산물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방위사업법」을 근거로 비축목표 이하의 탄약을 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군수품관리 훈령」 제40조 제3항에 의하면 탄약과 같은 소모성 물자는 원칙적으로 대여가 금지되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이 될 경우에는 동종·동량으로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대여할 수 있음.

「군수품관리법」 제16조와 영 제32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위 각 조항

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서는 교환 가능한 군수품의 범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군수품에 해당하는 탄약 또한 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교환할 수 있음.

3.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및 위 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교환과 대여는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며, 교환하려는 탄약을 국가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시기와 교환으로 인하여 국가 외의 자로부터 탄약을 획득하는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여료에 상응하는 금전 또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여료에 상응하는 금전 또는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끝.

질의 : 물자관리과-1210('20. 4. 13.)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3913('20. 5. 12.)

55. 군수품관리법령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의미

【질의요지】

1. 「군수품관리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물품관리법」 제36조 제2항의 ‘계약담당공무원’ 및 「군수품 관리 훈령」 제42조 제3항 및 제47조 제2항의 ‘계약담당공무원’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계약담당공무원 중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이라고 정하고 있음에도 국방부 훈령 등을 통한 별도의 위임이 없는 경우, 군수품의 매각, 유상대여, 유상양도에 있어서 「군수품관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군수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인 ‘물품관리관’이 당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답 변】

1. 「물품관리법」과 「군수품 관리 훈령」에서 말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개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계약담당공무원 중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2. 국방부 훈령 등을 통한 위임이 없는 경우라도 반드시 「군수품관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군수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인 ‘물품관리관’이 군수품의 매각, 유상대여, 유상양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물품관리관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 등을 통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 그 공무원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위에서 군수품의 매각이나 유상대여 및 유상양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자를 판단하여야 함.

【이 유】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정의에 대하여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②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 ④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 경비출납공무원, 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담당공무원’이라고 규정함.

한편, 「군수품관리법」이나 위 법이 준용하는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관리 훈령」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별도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각 규범에서 사용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개념을 앞서 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

3978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826 판결 등 참조), 비록 「군수품관리법」이나 위 법이 준용하는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 관리 훈령」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나, ① ‘계약담당공무원’의 정의는 그 문언상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것이고, ‘계약’의 정의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인 것으로, 「군수품관리법」, 「물품관리법」, 「군수품 관리 훈령」의 전반적인 취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다소 다르다고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정의가 달리 해석될 수는 없는 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규범으로,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담당공무원’이라는 개념은 다른 법령에서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관한 ‘계약담당공무원’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당사자로 되는 다양한 유형의 계약을 담당하는 자들이 여기에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의 범주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점, ④ 「군수품관리법」이나 「물품관리법」, 「군수품 관리 훈령」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계약의 종류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군수품관리법」,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 관리 훈령」에서 말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개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함.

그러므로 「군수품관리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물품관리법」 제36조 제2항 및 「군수품 관리 훈령」 제42조 제3항 및 제47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개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취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개별 사안에서 개별 계약의 성질에 따라 계약을 담당하기에 적절한 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계약관련사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개별 사안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 계약의 성질이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에 명시된 자들 모두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되어 계약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이는 「군수품관리법」,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 관리 훈령」의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위 계약담당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들 중 문제되는 계약의 성질 및 다른 법령의 규정 등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계약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2.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에 관한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수품관리법」,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 관리 훈령」에서 말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개념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외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군수품의 매각, 유상대여 및 유상양도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음.

한편, 「물품관리법」 제36조 제2항과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군수품 관리 훈령」 제42조 및 제47조 등에서는 군수품의 매각, 유상

대여, 유상양도에 있어서 물품관리관 등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청구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은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별됨을 전제로 양 지위를 겸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는 다른 별개의 자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군수품의 매각이나 유상대여 및 유상양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담당 공무원이 아닌 물품관리관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 각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부적절해 보임.

다만 물품관리관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 등을 통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 그 공무원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위에서 군수품의 매각이나 유상대여 및 유상양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자를 적절하게 판단하여야 함. 끝.

질의 : 육군본부 법제과-1893('20. 5. 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4592('20. 5. 29.)

56. 유효기간이 지난 개인제독키트의 관리

【질의요지】

개인제독키트(KD-1)를 5년의 유효기한(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일반물자로 관리하며 보관하는 것이 「약사법」 등 의약품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답 변】

개인제독키트(KD-1, 이하 ‘개인제독키트’라 합니다)를 유효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일반물자로 관리하며 보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약사법」이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의약품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제독키트를 그 소속 구성원들에게 유통하는 측면도 존재하는 점,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갖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제독키트를 의약품으로서의 유효기간과는 무관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여야 함.

【이 유】

개인제독키트는 의약품에 해당함과 동시에 군수품인 화생방물자에도 해당하는바,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의약품과 관련된 규범들과 「군수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군수품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범들이 모두 적용될 것임.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개인제독키트의 유효기한인 5년이 경과한 뒤에도 폐기하지 않고 군수품 관리에 관한 규범에 따라 개인제독키트를 보

관·유지하는 것이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의약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인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2호에 의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약업사 또는 매약상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저장할 수 없음은 분명하나, 이는 의약품을 유통하는 자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에 불과하고 본 사안에서의 국가(국방부)처럼 의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들이 의약품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관·유지·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며, 달리 관련 법령에 의약품 구매자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음.

2. 따라서 본 사안에서 개인제독키트의 의약품으로서의 유효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현행 의약품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는 보기는 어려우나, ① 비록 국가(국방부)가 법률상 의미의 구매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제독키트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들은 국가기관이 아닌 군 소속의 인원들이어서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제독키트를 그 소속 구성원들에게 유통하는 측면도 존재하는 점, ② 의약품의 유효기간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군수품에 관한 규범들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성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제독키트를 의약품으로서의 유효기간과는 무관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여야 함. 끝.

질의 : 장비관리과-2705('20. 5. 18.)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4821('20. 6. 5.)

57. 불용예정인 군수품을 해외업체에 매각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불용예정인 항공기를 해외업체에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불용결정전인 항공기라도 이후 불용결정이 이루어져 소유권 이전 시점에는 불용결정된 군수품에 해당한다면, 매각 또는 유상양도가 「군수품관리법」 등 관련 규범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유】

1.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합니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합니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군수품관리 훈령」(이하 ‘훈령’이라 합니다)에서는 군수품의 매각 내지 양도에 대해 규정하면서 불용결정된 군수품일 것을 직접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법 제4조가 「물품관리법」 제34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불용품이 아닌 군수품은 매각할 수 없음. 훈령에서도 제39조를 통하여 불용결정된 군수품 중 재활용 대상 이외의 품목은 훈령 제7장 내지 제13장에 따라 양도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훈령에서는 양도와 매각이라는 개념을 모두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법, 시행령, 규칙에서는 양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각의 실질은 유상양도이므로, 유상양도에 관한 위 관련 규범의 조문들은 모두 본 사안

에 적용될 수 있음.

‘불용결정된 군수품’이 ‘불용결정이 예정되어 있는 군수품’을 포함하는 개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그 문언에 비추어 이미 불용결정이 된 군수품과 아직 불용결정이 되지 않았으나 장래 불용결정이 예정되어 있는 군수품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훈령에서도 양자의 개념을 ‘불용군수품’과 ‘불용예정군수품’으로 나누어 다르게 규율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의미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움.

3. 다음으로 법과 훈령에서 말하는 ‘매각’의 의미를 ‘매각계약 또는 유상양도 계약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매각의 사전적 정의는 ‘땅이나 주식 따위를 돈을 받고 남에게 넘김’이고 양도의 사전적 정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이어서, 매각이든 양도이든 단순한 계약의 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점, ② 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훈령에서 별도로 매각이나 양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법 제27조의2에서는 양도를 단순한 계약의 체결이 아닌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등 여러 법령에서 매각이나 양도의 핵심을 단순한 계약의 체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소유권의 이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훈령 제54조 전단에서는 군수품의 ‘양도 당시’ 불용결정된 상태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양도계약 체결 당시 불용결정된 상태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동조 후단에서는 불용예정군수품의 경우에도 해외양도가 가능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등 반드시 유상양도계약 체결 당시 불용결정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4. 비록 본 사안이 외국 정부가 아닌 업체에 항공기를 매각하려는 사안이어서 위 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취지가 외국 정부에 군수품을 양도하려는 경우 외에는 양도계약 체결 당시 불용결정된 상

태일 것을 요구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외국 정부에의 양도이든 업체에 대한 양도이든 불용결정되지 않은 군수품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려는 취지는 동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본 사안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과 훈령 등 관련 규범에서 불용결정된 군수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는 취지는 ‘불용결정된 군수품이 아니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함. 따라서 본 사안에서의 항공기가 매각 또는 유상양도계약 당시에는 불용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불용결정이 이루어져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불용결정된 상태라면, 그 매각 또는 유상양도가 「군수품관리법」 등 앞서 본 관련 규범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끝.

질의 : 공군본부 법제과-3758('20. 9. 2.)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1127('20. 10. 22.)

58. 군수품관리법상 무상대여의 대상

【질의요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무상대여할 수 있는 군수품 중 ‘군장비’에 무기체계가 포함되는지 여부

【답 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7호 및 제8호의 ‘군장비’에는 무기체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어떤 장비가 무상대여가 가능한지는 무상대여의 요건, 목적 및 다른 품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이 유】

1. 「군수품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국가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음. 먼저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 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함.(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2. 군수품관리법령에서는 ‘군장비’라는 용어에 관해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 동 시행규칙 제3조 및 「군수품관

리 훈령」 제2장에서는 군수품을 용도별·기능별·성질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고,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라 ‘장비’는 그 의미나 범주를 조금씩 달리하며 구체적인 품목이 분류됨. 각각의 분류내용을 살펴보면, 「군수품관리 훈령」 제8조에서는 군수품의 성질 및 특성에 따라 군수품을 장비·물자 및 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때 ‘장비’에는 전차, 함정 항공기 등과 포함하고 있음. 동 훈령 제9조에서는 용도, 성질, 보급방법에 따라, 제10조에서는 기능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고, 제12조에서는 방위사업법령에 따라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하고 있음.

사안과 같이 특정 장비를 무기체계로 분류하는 것은 「군수품관리 훈령」 제12조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군수품관리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류방식의 하나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히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의 ‘군장비’에 대해서 「군수품관리 훈령」 제12조의 분류방식에 따라 무기체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군장비’에서 무기체계가 제외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임. 만일, ‘군장비’에 무기체계가 제외된다고 해석한다면, 「군수품관리 훈령」 상의 다른 분류방식에 따라 분류된 ‘장비’가 무기체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도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장비’에서 무기체계가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3. 나아가, 방위사업법 제3조 정의에 따르면, 무기체계는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방위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의미하고,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비’는 전력지원체계뿐만 아니라 무기체계로도 분류될 수 있고,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에서는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장비가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군수품관리법령 상의 ‘장비’에서 무기체계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정리하면,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7호 및 제8호의 ‘군장비’는 문언상으로 군수품관리법령상의 분류방법에 따라 다양한 ‘장비’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므로, 어떤 군수품이 무상대여의 대상이 되는지는, 개별조항의 취지, 무상대여의 요건 및 목적, 다른 대여품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① 해당 군수품의 대여로 인해 작전상의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② 재해복구공사 또는 이재민의 긴급구호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인지(또는 국가의 시책에 따른 산업의 조성에 필요하거나 방역사업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인지) ③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7호(또는 제8호)에서 ‘군장비’와 함께 대여할 수 있는 물품으로 나열하고 있는 침구, 피복, 식량, 기계, 기구(또는 의약품)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군수품의 일종인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상대여 품목을 결정하여야 함. 끝.

질의 : 물자관리과-1950('22. 4. 5.)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3461('22. 4. 8.)

59.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정비용역 관련 질의

【질의요지】

1. 「방위사업법」에 규정된 ‘방위산업물자’에 방산물자에 대한 정비용역을 포함할 수 있는지
2. 방산물자에 대한 정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방산원가규칙’이라 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 변】

1. 방산물자에 대한 정비용역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지 않음.
2. 방산물자에 대한 정비용역계약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동조 제3항에 따라 「방산원가규칙」을 적용할 수 있음.

【이 유】

1. 「방위사업법」에서 규정된 ‘방위산업물자’에 방산물자에 대한 ‘정비’를 포함할 수 있는지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는 사전에 설명된 내용대로 사용되거나 사회 통념상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인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관해서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방산산업물자’의 정의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 및 제34조에서는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지정된 물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40조에서 특정 기술이 포함된 군수품을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방산물자’는 기본적으로 물건이나 재료를 대상으로 지정하되,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방산물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또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도 연구개발하여 생산한 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군사전략상 주요물자로서 정비 등이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군용규격물자”에 “정비용역”이 포함되기 어렵다는 법제처 해석례⁶²⁾(2021. 7. 20.자 안건번호21-0276)에 따라서도, 적용법령에서 특별히 그 정의를 규정하지 않는 한, ‘물자’의 의미에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물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정비용역을 방산물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2. 방산물자에 대한 정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 계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에서는 계약의 특례를 규정하여

62) 법제처 해석례 안건번호 21-0276 주요내용 : 국가계약법령, 방위사업법령 등에서 “군용규격물자”에 대해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방위사업법의 관련규정에 비추어보면 군용규격물자는 정해진 규격으로 국방부나 각 군에 조달되는 물자라 볼 수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인 군용규격물자의 의미를 이와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는 없음. 정비능력의 성질은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바, 국가계약법상 군용규격물자에 정비용역까지 포함된다고 하기는 어려움.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계약의 종류·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안의 경우와 같이 방산물자에 대한 정비계약에 대하여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한 계약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는 경우⁶³⁾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함.

「방위사업법」 제3조제5호에서는 ‘획득’의 정의를 군수품을 구매하여 조달하거나 연구개발·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조달’에 관해서는 특별히 그 의미를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생산’에 관해서는 ‘정비⁶⁴⁾’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 방산물자의 정비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음.

(舊 「방위사업법」 (2020. 2. 4. 법률 제16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8호에서는 “방위산업”을 방위산업물자를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1. 2. 5. 시행, 이하 ‘방위산업발전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해당 내용이 「방위산업발전법」으로 이관되었고, 이후 「방위사업법」에서는 “방위산업” 정의를 「방위산업발전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방위사업법」에서 ‘생산’의 정의가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종전

63) 정비계약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규정된 국방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은 비교적 명백하여, 다루지 않음

6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개량 또는 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의 「방위사업법」에서 ‘생산’의 의미를 규정한 내용과 현재 「방위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생산’의 의미가 동일하므로, 현재 시행 중인 「방위사업법」에서도 “생산”의 정의를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를 포함한 의미라고 볼 수 있음.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 후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 계약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서는 방산업체와 방산물자를 생산·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때 ‘생산’의 의미에 관하여는 「방위산업발전법」에서 규정된 ‘생산’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여 방산물자에 대한 ‘정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8호에서는 수입한 수리부속품 중 해외정비가 불가능한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을 갖춘 국내업체와 정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계약에 방산물자에 대한 정비계약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한 해석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⁶⁵⁾,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발전법」에서 ‘생산’의 의미를 일반적인 용어의 의미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은 방위사업 계약의 특례의 내용을 구체화하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중에서도 특별히 제한적인 경우를 한정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방산원가규칙」의 세부사항을 정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

65)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등 참조

행세칙」 제4조⁶⁶⁾에서도 생산의 의미에 ‘정비’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방산물자에 대한 정비계약을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에서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동조 제3항의 「방산원가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은 수의계약 사유를 한정하고 있을 뿐,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방산원가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여 계약의 특례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분리해서 보는 의견도 있으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방위사업법」 제46조에 따라 방산원가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방위사업법령의 규정체계에 더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임. 끝.

질의 : 공군본부 법제과-1419('22. 3. 24.)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4316('22. 4. 29.)

66)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방위사업청훈령)제4조(원가계산기준의 구분적용)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생산(제조, 가공, 조립, 정비, 재생, 개량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활동과 용역활동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에 대하여는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을, 용역활동에 대하여는 용역원가계산기준을 적용하되 계약의 주목적이 설계용역 또는 연구용역의 수행인 경우에는 용역원가계산기준을 적용한다.

◎ 시설

60. 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 출입허가 관련

【질의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함)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출입지역을 벗어나거나, 허가신청시 기재한 출입사유와 다른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답 변】

허가받지 않은 통제보호구역 등에 출입하였고, 그 지역이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 개정 없이도 위 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출입이 허가된 통제보호구역등에서 출입허가신청서에 기재한 목적이나 사유와는 다른 행위를 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위 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유】

1. 출입허가된 통제보호구역이 아닌 다른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한 경우, 출입한 구역은 관할부대장 등이 출입을 허가한 지역이 아니어서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하 ‘통제보호구역등’이라 합니다)’에 출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출입한 지역이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 제2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2.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고 통제보호구역등에 출입하였으나, 허가신청 시

기재한 출입목적이나 출입사유와 다른 행위를 한 경우는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법 제24조 제6항 제1호에서 ‘관할부대장등의 허가 없이 통제보호구역등에 출입한 행위를 한 경우’를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고 통제보호구역등에 출입하였으나 출입허가신청서에 기재한 것과 다른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또한, 법 제24조에서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여러 행위태양을 명시하고 있으나 출입허가를 받은 구역에서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목적 내지 출입사유로 기재한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법 제24조 제6항 제1호를 제외한 법 제24조의 나머지 규정에 따라도 처벌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끝.

질의 : 시설제도기술과-2778('20. 6. 23.)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6108('20. 7. 3.)

61. 예비역으로 신분이 전환된 장병도 군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에 귀국일로부터 14일 간 격리하여야 하는 ○○부대 장병 중 귀국일 이후 예비역으로 신분이 전환된 장병에 대하여도 군에서 임차한 임시생활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지

【답 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군 임시생활시설 입소대상에 파병 후 복귀한 예비역 병사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

1. 코로나19 군 임시생활시설 지원단 운영 매뉴얼 I. 1. 개요에서는 ‘군 임시생활시설 입소대상’으로 ‘감염병 전파로 인해 격리가 필요한 현역장병 및 군무원 등’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현역장병 및 군무원 ‘등’에 파병 후 복귀한 예비역 병사도 포함할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제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파병 후 복귀한 예비역병사를 현역장병 및 군무원과 동등하게 입소 대상으로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2. 합리적인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① UN의 요청 및 대한민국 국방부의 결정으로 남수단에서의 임무가 연장됨에 따라 파병 장병의 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부득이 귀국 후 바로 예비역으로 신분이 전환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방부가

현역장병으로서 군 임시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한 여지가 있다는 점, ② 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국가(국방부를 포함)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③ 법 제67조 제1호에 따르면 위 ②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국방부)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는 점, ④ 다만, 현역장병 및 군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군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시설, 입소자의 관리부서에서 민간인에 대한 관리에 제한사항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군 임시생활시설 입소대상에 파병 후 복귀한 예비역 병사의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람. 끝.

질의 : 국제평화협력과-2049('21. 5. 2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6441('21. 5. 31.)

제5장 국제법

62. SOFA 협정에 따라 미측에 분담요구 거부

【질의요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주한미군 사용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SOFA 협정 제23조제5항에 따라 미측에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 유】

1. SOFA 협정 제23조 제5항(가)는 주한미군이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대한민국 군대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제기하고 심사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은 국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미군 비행장 및 사격장 포함)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하여 접수·심의·결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군소음보상법」은 SOFA 협정 제23조 제5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군소음보상법」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군 사용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SOFA 협정 제23조제5항(가)에서 (마)까지의 규정

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분담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됨. 끝.

질의 : 국방환경협력팀-489('20. 2. 4.)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098('20. 2. 7.)

63.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이행약정에 따라 2020년 군사건설 현금지원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2조 후단 중 ‘2020년 인건비 분담 지원분 3,144억원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것과 나머지 비용 분담 항목에 해당하는 2020년 지원분이 이월된다는 것을 인정한다.’의 부분에서 ‘나머지 비용 분담 항목에 해당하여 이월되는 2020년 지원분’에 ‘군사건설 현금 지원분’도 해당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규정 전체의 문리적 해석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문리적 해석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유】

1.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서로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기 위해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협정문의 문언의 특성상, 담당 정책부서 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각 조항에 대하여 어떤 **공통의 인식** 내지는 **컨센서스(consensus)**를 가지고 합의하여 제정되기에 이르렀는지가 문언의 의미 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임. 따라서, 협정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 2020년도 군사건설 현금 지원분을 포함할 것인지 혹은 제외할 것인지 **양 국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소관 정책부서의 합치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소관 정책부

서에서 제정과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에 해당함.

2.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1조, 제3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이 경비는 각 ‘인건비 / 군수비용 / 군사건설’ 항목으로 나뉘어 인건비에 대하여는 현금지원, 군수비용에 대하여는 현물지원, 군사건설에 대하여는 현금 및 현물지원으로 나뉘며 특별히 ‘현물’ 지원분, ‘현금’ 지원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지원분이라 함은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경비’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른다면,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2조 후단 중 ‘2020년 인건비 분담 지원분 3,144억원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것과 나머지 비용 분담 항목에 해당하는 2020년 지원분이 이월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군사건설 현금 지원분’에 대하여 규정 전체의 문리적 해석상 2020년의 지원분이 이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별개로 이월규정은 전년도의 비용을 다음연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규정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1조에서는 ‘이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을 결정한다. 2020년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1조 389억원이다. 2021년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1조 1,833억원이다.’라고 정하고 있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3조에서 ‘군사건설 지원분 중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비는 각 연도의 3월 1일에 지급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2020년의 군사건설 현금지원분을 제외한다는 다른 규정이 없다면 군사건설 현금 지원분이 2020년도 대한민국의 지원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4. 또한, 별도의 이월규정이 없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도 군사건설 현금 지원분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실무례에 비추어보더라도 2020년도 지원분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 미국정책과-1583 ('21. 4. 29.)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6042('21. 5. 21.)

64.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상 미집행 분담금 환수 관련 법령 해석

【질의요지】

「방위비분담금 특별조치협정」에 명시된 총액을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연도별 분담금 총액이 해당연도 내에 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집행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음 연도에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미간 상호 합의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방위비분담금 특별조치협정 또는 이행약정 등에 포함하여 규정 등). 끝.

질의 : 미국정책과-3621('21. 10. 19.)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11985('21. 10. 27.)

65.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당사자 판단

【질의요지】

기관간 약정 체결시 당사자를 누구로 판단해야 하는지

【답 변】

문서의 첫머리 기재와 같이 문서의 성격은 양해각서임. 따라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거나 미국을 대표한다는 문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관련 적용 범위가 합참, 유엔사, 주한미군사 등을 포함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위 기관을 포괄할 수 있는 상급기관, 즉 ‘국방부’가 당사자가 되는 기관간 약정으로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끝.

질의 : 합참 군사전략과-2649('21. 10. 26.)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12086('21. 10. 29.)

66. 양해각서상의 책임 사항에 대한 규정 범위

【질의요지】

대한민국 파견 인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기관간 약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답 변】

손실, 손해, 사망 또는 부상이 대한민국 인원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해 초래된 경우에, 정부와 유엔은 3자와의 청구권 해결에 유엔이 부담한 모든 비용을 정부가 변제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14조 제2항 단서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끝.

질의 : 국제평화협력과-4927('21. 12. 3.)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13703('21. 12. 10.)

67. 민간인에 대한 전투복 착용과 전쟁법 위반 여부

【질의요지】

민간인이 전투복을 착용하는 경우 전쟁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답 변】

1.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58조 제다항은 무력충돌시 “충돌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 한도로, 자국의 지배하에 있는 민간주민, 민간개인 및 민간물자를 군사작전으로부터 연유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기타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한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활동” 등 일정한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민간인의 전투복 착용을 허용하고 있음. 끝.

질의 : 기획총괄담당관-429('22. 1. 10.)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618('22. 1. 17.)

68. 정전교전규칙(UNC)에 대한 한국군 준수 의무

【질의요지】

유엔군사령부가 정전교전규칙을 제정 및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한국군이 정전교전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답 변】

1. 정전협정 제2조 제17항에서는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유엔군사령관은 위 조항에 따라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정전협정의 목적과 범위 안에서 정전교전규칙을 제정 및 보유할 수 있음.

2. 한편 정전협정을 구체화하는 정전교전규칙(유엔사 규정)은 정전협정보다 효력 상 하위에 위치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정전협정의 목적과 취지 등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한국군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음.

3. 특히 양 국가 간의 협의 등을 통해 사전 상호 동의의 절차를 거쳐 교전규칙에 관한 내용을 제정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양 당사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 교전규칙에 대한 내용의 경우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보다 크다고 할 것임. 끝.

질의 : 방위정책과-605('22. 2. 21.)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618('22. 3. 3.)

제6장 기타

69. 공무 외의 국외여행 승인대상자인 군인 명단 등을 법무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승인대상자인 군인⁶⁷⁾ 명단 및 명단 외 군인 전체(全體) 명단을 법무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답 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른 공무 외 국외여행 승인대상자 명단 및 대상자 외 군인 전체(全體) 명단을 법무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는 소관부서의 재량적 판단사항으로서 ①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②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를 고려하시어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 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며(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67) 병역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아직 군인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함)과 제2호에 따른 승선군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현재 병역법 제70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148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1조 제6항에 따라 법무부에 국외여행허가 등 사실이 통보되고 있음)는 제외, 이하 동일

제1항), 다만 이와 같은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2항),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군인 또한 국민으로서 위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군인의 출입국심사를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승인대상자인 군인 명단 및 명단 외 군인 전체(全體) 명단⁶⁸⁾을 법무부에 제공하는 것은 군인의 기본권⁶⁹⁾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최근 현역 군인이 지휘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외로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억지하고자 하는바, 이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러한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목적의 정당성), ②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승인대상자인 군인 명단 및 명단 외 군인 전체(全體) 명단을 제3자인 법무부에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인지⁷⁰⁾(수단의 적절성), ③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일부 군인의 탈영 등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군인 전체 명단을 법무부에 제공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개

68) 공무 외의 국외여행 승인대상자인 군인 명단 외 군인 전체(全體) 명단이 필요한 이유는, 출입국심사 당시 군인의 신분을 가짐을 알고 있어야만 사전에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유선상 확인하였음.

69)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70) 모든 군인의 모든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통제·관리할 수 있게 되어 기본권 제한의 요건 중 수단의 적절성은 충족할 수 있으나,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⁷¹⁾ 및 행복추구권⁷²⁾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침해의 최소성), ④ 위 명단 제공을 통해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행복추구권 제한의 정도와 실현되는 승인을 받지 않은 군인의 국외여행 억제라는 목적 간에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지(법익의 균형성)를 고려하시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승인대상자 명단 및 명단 외 군인 전체(全體) 명단을 제3자인 법무부에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람.

그리고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정보 주체의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로 판단되는 점, ② 국방부는 군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수집하였는 바, 위 규정에 따라 인사 관리 등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을 뿐, 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법무부에 제공하여 공무 외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군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 규정에 따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인지는 의문인 점, ③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제2호), 정보주체의 동의(제1호)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바, 군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에 대

7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장된 휴가 기간 중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가고, 무엇을 하는지 등에 관하여, 휴가를 승인한 지휘관 외에 제3자인 법무부가 알게 되는 것은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72)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헌법재판소 결정, 93헌가14), 제도 도입 시 군인의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하여 군인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법무부에 위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점, ④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바, 국방부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아닌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군인 본인의 동의가 없이 군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법무부에 제공하는 것은 위 ㉠ ~ ㉧ 중의 어느 경우에도 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점(다만, ㉣의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등을 고려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른 공무원 외의 국외여행 승인대상자 명단 및 명단 외 군인 전체(全體) 명단을 법무부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람. 끝.

질의 : 인사기획관리과-15427 ('20. 11. 4.)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2942('20. 12. 2.)

70. 감사원·수사기관이 군인에 대하여 조사·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공군검찰단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를 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1항은 감사원·수사기관이 군인⁷³⁾에 대하여 조사·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소속 또는 감독부대(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속 또는 감독부대의 장 외에 공군검찰단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를 해야 하는지

【답 변】

공군검찰단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없음.

【이 유】

1. 「군인사법」 제59조의3의 문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감사원·수사기관은 “소속 또는 감독 부대(기관)의 장”에게 그 조사·수사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속 또는 감독 부대(기관)의 장이 아닌 공군검찰단장에게 이러한 조사·수사 사실을 통보할 명시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임.

73) 공군검찰단 소속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조사·수사의 경우에는 공군검찰단장이 군인 및 군무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으로서 조사·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의 상대방임이 명백하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공군 소속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조사·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함.

2. 「군인사법」 제59조의3은 제10장 징계 부분에 규정된 것으로, 이 규정의 원형이 되었던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의 개정취지(법률 제3150호, 1978. 12. 5. 일부개정)도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의 개시통보만으로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징계절차와 관련이 있음. 그런데, 공군검찰단은 ① 공군 관할 형사사건 수사/공판, 공소유지, ② 군행형에 관한 업무, ③ 군 검찰사무 및 행정예 관한 업무, ④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등) 인권보호 업무, ⑤ 군검사·군검찰수사관 직무·보수 교육, ⑥ 범죄정보 수집 및 범죄 예방활동, ⑦ 군검찰 공보 및 대외기관 협조·대응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징계절차와 특별한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속 또는 감독 부대(기관)의 장”에 공군검찰단장을 포함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음.

3. 위와 같이 문언의 내용, 규정 체계,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군검찰단장이 「군인사법」 제59조의3의 통보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 공군본부 법제과-462('22. 1. 28.)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771('22. 2. 18.)

71. 군사법원법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군 수사기관이 변사자 검시 수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질의요지】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264조의 적용을 받아 군 수사기관이 변사자 검시 수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답 변】

군사법원법 제264조 제1항에 따라 변사체 검시(수사 전 처분)를 수행하여 범죄의 혐의점이 있을 경우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이 유】

㉠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는 경우 민간에 수사권이 이관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 변사체에 대한 검시는 범죄의 혐의를 전제로 하는 처분이 아니며 변사체 검시 결과 범죄의 혐의점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비로소 수사의 개

시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변사체에 대한 검시는 수사 전 처분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군 수사기관은 군사법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군사법원법 제264조 제1항에 따라 변사체 검시(수사 전 처분)를 수행하여 범죄의 혐의점이 있을 경우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끝.

질의 :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394('21. 9. 6.)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2049('22. 2. 28.)

72. 개인정보 관련 국회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질의요지】

개인정보 관련 국회 요구자료 제출 시 국회관련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 간 관계

【답 변】

헌법이 보호하는 사생활로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및 개인의 보호법익을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료 제공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이 유】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제출요구를 받거나, 증인 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정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국가기관은 이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국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자료제출의 범위와는 직접적 관련성은 없어 보임. 다만, 법제처는 여러 법령해석례[10-0197,2010.8.23.]에서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취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른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에 따른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① 법률에 근거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영역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헌법적 한계, ② 개별법에서 보호하는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 ③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회신한 것으로 보임.

3. 결론적으로, 국회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을 경우, 소관 부서는 헌법이 보호하는 사생활로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및 개인의 보호법익을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료 제공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끝.

질의 : 공군본부 법제과-852('22. 2. 2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2481('22. 3. 11.)

※법제처 법령해석례 참고 [14-0411, 2014. 9. 17., 국무조정실]

【질의요지】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회답】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의 제출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국회법」 제128조제1항 본문에서는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

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의 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 (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등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기관이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영상물의 제출에 관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 지위를 가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의 모든 규정은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보호정신 등을 넘어 해

석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의 요구와 활용은 국정감사 등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별법령의 사생활보호 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보호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의 제출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73. 형사 사건기록의 정정 관련

【질의요지】

완결된 형사기록(변사사건 기록)에 오류가 있을 경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근거하여 형사기록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지

【답 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근거하여 형사기록의 오류를 정정할 수 없음.

【이 유】

1.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이 규정’)은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제1조),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에서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원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하는데(제3조) 이러한 ‘문서’는 결재권자가 서명함으로써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제6조),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제10조 제1항) 그리고 이 규정 내의 문서에 관한 조항(제5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이 규정에서 말하는 ‘문서’는 행정기관이 소관사무인 행정사무에 대해 특정 의사를 표명하고 시행하기 위한 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2. 그런데 군 검사가 변사자를 검시하고(「군사법원법」 제264조), 변사사건

조사결과서를 작성·편철하는 것(국방부검찰단 「변사사건처리지침」 제10조)은 (군검사의) 수사기관으로서 독자적 권한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업무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변사사건 조사결과서 역시 이 규정에서 규율하는 문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군검사가 독자적인 권한에 근거하여 작성한 변사사건 조사결과서와 같은 형사 사건기록을 정정할 때, 이 규정 제17조에 근거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 공군본부 법제과-1787('22. 4. 19.)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4321('22. 4. 29.)

**국방관계법령해석
질의응답집 총목차**

목 차

1. 헌법, 행정법, 선거, 계엄	211
2. 조직관계	213
3. 인 사	217
가. 계급 및 분과	217
나. 위 탁	217
다. 복무기간	218
라. 정년	220
마. 임 용	221
바. 초임계급	223
사. 임 기	223
아. 군인 복무 기본법, 겸직	223
자. 진 급	224
차. 전 역	225
카. 제 적	228
타. 복 적	229
파. 휴 직	230
하. 휴 가	230
거. 위 임	231
너. 잡 칙	231
4. 징 계	233
가. 성 질	233

나. 사 유	233
다. 종류·대상	233
라. 징계권자	234
마. 징계위원회	234
바. 징계절차	234
사. 징계의 효력	234
아. 항 고	235
자. 잡 칙	235
5. 군무원 인사	236
가. 임용	236
나. 공개경쟁시험 및 특별시험	237
다. 면 직	237
라. 복 무	238
마. 신분보장	238
바. 징 계	239
6. 보 수	239
가. 보수 및 수당	239
나. 보 칙	242
다. 기 타	242
7. 병 역	244
가. 총 칙	244
나. 징병검사	245
다. 현역입영	245

라. 소 집	246
마. 병역의무의 종료	247
바. 병역의무부과의 특례	247
사.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248
아. 특 전	249
자. 병무행정	249
차. 벌칙	250
8. 예비군	251
가. 임무	251
나. 조직과 편성	251
다. 동원	252
라. 훈련	252
마. 소집통지서	253
바. 무장	253
사. 원호 및 가료	253
아. 직장보장	253
자. 실비변상	254
차. 병역법과의 관계	254
카. 권한의 위임	254
타. 벌칙	254
파. 기타	254
9. 학생군사교육	255
10. 연금	256

가. 총칙	256
나. 급여	257
다. 퇴역연금	258
라. 퇴직일시금	258
마. 상이연금	258
바. 유족급여	259
사. 재해보상금	259
아. 급여의 제한	260
자. 기금의 조성	261
차. 보칙	261
카. 기타	261
11. 보훈	262
가. 총칙	262
나. 대상 및 사유	262
다. 급여	264
라. 기타	264
12. 국가배상·보상	265
가. 배상책임	265
나. 배상기준	266
다. 외국인에 대한 책임	266
라. 절차(배상심의회)	266
마. 기타	267
13. 군용지취득	267

가. 총칙	267
나. 목적물(제한)	268
다. 절차(원상회복)	268
라. 해제	269
마. 보상	270
바. 기타	271
14. 군수	272
15. 방위산업	275
16. 재정	277
17. 예산회계	278
18. 국유재산	281
19. 군사시설보호	285
20. 상훈	288
21. 국립묘지안장	288
22. 형사	289
가. 균형법	289
나. 군사법원법	290
다. 기타	292
23. 민사관계	293
24. 국제법	295
25. 기타	295

1. 헌법, 행정법, 선거, 계엄

- 귀농선 북방에서의 민간인의 권리제한 1-1
- 현역무관 혼인규정 제정 1-3
- 울곡집행단장의 전결권 유무 15-73
- 국방정책 자문위원의 신분 15-91
- 국방부장관의 시체보전법 제6조의 권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 가부 3-31
- 국방부 조사대장의 신분증 발행권 5-15
-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지 아니한 소원의 처리 3-44
- 불가쟁력이 발생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3-45
- 소원의 재결범위 5-16
-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결정과 소원법에 의한 재결과의 효력관계 5-19
- 소원법상의 행정처분해당여부 14-106
- 개방제한구역의 토지에서 토석채취를 하고자 할 때 허가관청과의 합의 여부 9-114
-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원법상 행정청인지 여부 15-299
- 군인으로서 송요찬씨 석방운동에 서명조인하는 행위가 군형법 및 선거법에의 저촉여부 1-5
- 국회의원선거법 제28조의 입후보를 위한 사임의 효력 발생시기 1-7
- 부대영내에서의 선거연설 및 포스터 첩부행위의 적법성 1-9
- 현역군인의 선거위원 취임 1-9
- 국회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요건 1-10
- 병의 국회의원 입후보등록 가능여부 10-91
- 제3자의 부재자 신고 등 4-27
- 계엄사령관의 작전지휘권 등 1-170
- 계엄령하에 있어서 지휘감독권 등 1-172
-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차이 등 1-174, 2-170
- 포고령의 시행시기 등 2-21
- 포고령 위반자의 법정형 2-169, 1-256, 1-257
- 계엄시 보안업무지침 제정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조정 16-157, 21-29
- 계엄법상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의 한계 및 내용 8-137
- 계엄사령관의 근로동원 가능여부 9-125
- 전국계엄과 지역계엄의 한계 13-141
- 위수령에 의한 적용부대 범위 13-14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소관행정청의 의미 16-15
- 국방부장관의 행정대집행 가부 16-16
- 헌법 제76조 제2항의 "중대한 교정상태"의 의미 18-11
- 국방부장관이 '지휘서신'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 19-24

○ 합동참모본부의 성격	17-11
○ 합동참모본부가 창설된 것인지, 개편된 것인지 여부	19-14
○ 합동참모본부가 각군의 직속상급기관인지 여부	19-18
○ 합동참모본부에서 국방부 국·실에 협조문에 의한 문서발신이 가능한지 여부	19-21
○ 합동참모본부의 훈령제정권 및 위임전결 가능성	19-26
○ 작전통제권 인수와 휴전협정	19-237
○ 독도경비대에 대한 군의 작전통제	19-240
○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	17-12
○ 위임받아 한 행정처분의 재결청	18-13
○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의 법규명령성	19-31
○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의 적용대상	21-20
○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연구원에 장관의 해외여행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19-11
○ 군용전기통신법상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위임	19-13
○ 재향군인회가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청인지 여부	18-15
○ 토지협의매수시 군수의 보상불가통보가 행정심판 대상인지 여부	19-9
○ 파견된 방위병에 대한 지휘·감독권	18-87
○ 파견된 방위병에 대한 소속군부대의 업무활용	18-89
○ 훈령과 지침의 효력관계	18-16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의 취소	17-13
○ 육군사관학교의 명예교수·명예졸업제도	18-59
○ 군병원과 일반병원의 자매결연	17-35
○ 군병원의 요양취급기관지정과 의료기관개설	18-233
○ 무역대리점 등록업무의 민간단체위탁	19-29
○ 재외공관주재 무관의 대외직명 사용	21-3
○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대한 재심청구와 집행정지	21-5
○ 군무원의 정원조정시 경제기획원과의 협의여부	21-7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출할 서류'에 향후수집 할 자료도 포함되는지 여부	22-1
○ 국방부산하기관의 국방부장관 적인 사용 가능 여부	24-6
○ 국방정보본부 군사보안업무 처리시 협조문 발신 가능 여부	24-8
○ 국방조달본부장이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4-11
○ 군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4-14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61조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권한 위임 범위	26-3
○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제36조제2항의 대외적 효력	26-8

- 행정전자서명이 아닌 국방부공문서의 효력 27-3
- 직무대리의 권한 범위 27-6
- 통합방위법상 검문소 운용 27-9
- 나라사랑카드와 행정권한의 위임 27-17
- 국직부대에 대한 합참 전투지휘검열 가부 28-4
- 합참대 지휘·감독권한의 위임 가부 28-2
- 국군상비병력규모에 관한 국방개혁법의 해석 28-6
- 합참의장의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감독권 28-9
- 장관의 군정권한 일부 합참의장 부여 여부 28-12
-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간 권한의 민간위탁 가부 28-16
- 국방부 감사실의 방위사업청 감사 가능여부 28-18
-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29-1
- 국군포로 등록 거부가 기속재량인지 여부 29-2
-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30-6
- 동일한 명칭의 의미 33-7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의 존속기간 등 33-23
- 계엄사령부 제6조 준용의 의미 34-17

2. 조직관계

- 해군병원에서의 군속의 치료의무 유무 1-13
- 폭동진압 2-15
- 중앙정보부가 국방부 예하 각 정보기관을 구속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29
- 부대 또는 기관설치권한 사항의 위임입법 3-53
- 군수근무단요원 선발 임명권한의 위임 15-74
- 진력증강위원회의 법적성격 및 기능 16-11
- 월남귀순용사 원호심사위원회의 성격 16-13
- 국방정보본부의 조직법상 성격 16-14
- 국방품질검사소 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3조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16-155
- 국방부와 합참 및 각군의 관계 20-3
- 국방부감사관실의 감사범위 20-5
- 국방부내 C3I 사업단 설치 20-8
- 합참의장의 합동부대에 대한 검열권한 범위 20-10
- 합참의장의 인사협의권 20-58
- 합참의장의 합동부대 지휘·감독 범위 34-3

○ 비상대비훈련주관부서	20-12
○ 대사관에의 현역파견근무	20-15
○ 고속도로 건설시 군병력투입근거	20-17
○ 군전공의 정원책정업무의 민간기관위탁	20-18
○ 국방대학원장의 교수임용기간결정권	20-20
○ 국방대학원 부원장의 지휘권	20-21
○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17-177
○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료 징수 및 활용	21-9
○ 감사임명예정자의 설립위원 위촉	18-217
○ 법인설립전 임직원에 대한 봉급용도의 보조금 지급	18-218
○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직직원에 대한 보상	18-220
○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용보험법 적용 여부	21-24
○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학교법인 이사 겸직 가부	21-26
○ 군인공제회가 직할기관인지 여부	19-220
○ 정관개정으로 감사의임기가 변동된 경우 정관개정전 선임된 감사의 임기	19-221
○ 군인공제회 산하단체의 이사와 보수약정	19-222
○ 군인공제회 임원의 임기연장방법	19-223
○ 군인공제회 임원의 임기	20-30
○ 군인공제회 관리 골프장이 사업장인지 여부	18-222
○ 재향군인회에 대한 특수자료취급인가와 감독	18-224
○ 재향군인회 임직원의 지방의회의원출마	19-215
○ 재향군인회의 각급회 해산가능여부	19-216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과 수익사업	19-229
○ 재향군인회에 대한 기부금과 국방헌금	19-230
○ 재향군인부인회의 사회단체 등록	20-36
○ 예비군수송협회의 수익사업실시	20-34
○ 예비군수송협회의 자동차 유상운송	18-226
○ 예비군 수송협회의 명칭변경	20-35
○ 예비군수송협회의 임원의 취임승인	21-13
○ 예비군수송협회의 전세버스 사업등록	21-15
○ 해병전우회의 사단법인설립허가	18-228
○ 3·6동지회의 사단법인설립허가	19-227
○ 사단법인 성우회의 설립허가	21-27
○ 사단법인 세계군악연구원의 설립허가	21-31
○ 한국국방연구원의 부설기구설치와 법적근거	18-229
○ 한국국방연구원 직원에 대한 조건부 승격실시	21-25

- 한국국방연구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21-30
- 전사편찬위원회의 사업을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19-218
- 전쟁기념사업회와 부설기관 19-224
- 전쟁기념사업회의 결산보고 20-32
- 한·미 안보연구회 법인설립허가 20-37
- 국군홍보관리소가 특수일간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19-234
- 문화유적지표조사 소요경비의 부담주체 19-242
- 국방부 통합수송부의 군용차량 집중관리 21-11
- 한국국방연구원의 부설연구소의 지위 등 22-2
-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에 관한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 및 법적근거 .. 22-3
- 합동참모의장이 작전부대장에게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23-1
- 차기잠수함 사업평가단에서 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23-2
- 각 병과 사병의 현병 직무 보조에 관한 질의 23-3
- 군체력단련장 운영의 재위탁 관련 질의 23-4
- 국방과학연구소가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하는지 23-5
- 전쟁기념사업회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23-6
- 계룡대근무지원단 지휘·감독권 위임 가능 여부 24-3
-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지역·지구계엄사령관에게 내부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24-5
- 국방부소속기관에 보안적부심의회 설치 가능 여부 24-10
- 국군수송사령부의 합동부대 지정 가능 여부 24-12
- 국방과학연구소 제2부소장 직위 폐지 가능 여부 24-13
- 호국장학재단이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인지 여부 25-3
- 직업보도교육인원의 별도정원화를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해야 하는지 여부 25-5
- 합참의장의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의 범위 25-7
- 합참의장이 국직/합동부대의 훈련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5-9
- 각 군 부대훈련과 관련된 예산 업무를 합참으로 이관할 수 있는지 여부 25-10
- 국직기관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배속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25-12
- 국방중기부대계획 및 연도부대계획을 합참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5-14
- 국방부합동조사단이 각군 현병업무를 조정, 통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25-15
- 전쟁기념사업회가 예식장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5-16
- 장교제적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25-17
- 「군인사법」 제14조의 결원 보충 25-18
- 물자·장비의 비축훈련(안)에 대한 사전 법령해석 질의 26-6
- 군기관에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가능한지 여부 26-12

○ 부대해체 승인권자	27-23
○ 합참예속 하에 합동군 창설 여부	27-25
○ 해군기지구역 설정 건의권의 법적 성격	27-32
○ 향방대대 편성	27-34
○ 전시창설부대의 모체부대 변경 가부	27-36
○ 해외파병부대 기록관리	27-37
○ 장교후보생의 정원운영	27-42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과의 관계	27-43
○ 군인복지단의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가능 여부 등	29-3
○ 한국국방연구원 직원의 국외여행 통제	29-4
○ 보상금 환수 시 징수업무기관	30-2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	30-9
○ 국군기무사령부의 국방부 본부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 가부	30-13
○ 합동참모의장의 국직부대에 대한 지휘, 감독권 범위	30-16
○ 국직부대에서 합동참모의장 명의의 공문서 하달이 가능한지 여부	30-20
○ 각 군 참모총장이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30-23
○ 군 보건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31-3
○ 국방정보본부장 부제시 직무대리 임명	31-5
○ 사관학교 명칭 사용 관련	32-3
○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사관학교의 특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지 여부	32-6
○ 방위력개선사업 TF를 국방부 내 조직으로 둘 수 있는지	33-3
○ 군인공제회 산하법인체에 대한 감사 관련	33-9
○ 군인공제회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	33-16
○ 국군조직법에 규정된 ‘기관’, ‘합동부대’의 범위	33-20
○ 각 군이 공공기관 인지	34-5
○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인이 국군외상센터의 장이 될 수 있는지	34-7
○ 중앙행정기관의 보안감사를 안보지원사가 할 수 있는지	34-10
○ 감사처분 후 처분받은 기관에서 재심의 요청시 수행기관	34-12
○ 화생방 방어연구소의 화학작용제 오염 임상시료 분석가능 여부	34-15
○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소속 특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국방부가 정할 수 있는지	34-19

3. 인 사

가. 계급 및 분과

- 강등된 장교의 서열 4-57
- 신분변동에 따른 인사처리 8-30
-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군인인가 11-21
- 생년월일 오기로 임관된 장교의 신분 13-23
- 방위 이병과 현역 이등병간의 서열관계 15-57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강등 16-29
- 병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시 계급 재부여 18-41
-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강등되는지 여부 19-39
-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현역병에 대한 강등 19-61
- 전투병과 대대장에 대한 잠정적인 중령계급 부여 20-55
- 군인·군무원의 상하관계 20-84
- 군무원에게 지휘관 자격이 있는지 23-7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에 두는 직원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이 해당하는지 33-43
- 직장예비군 지휘관이 명예퇴직 후, 임명권자의 임명없이 직장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지휘관 임무수행이 가능한지 33-53
- 군간부후보생이 군인신분에 해당하는지 34-39
- 생도 선발과정 ‘합격통보’를 받은 인원이 이후 질환치료 이력으로 합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초군사훈련 소집해제 가부 34-41

나. 위 탁

- 군인사법시행 이전의 군위탁생의 의무복무기간 1-17, 8-47
- 병으로서 외국에 유학한 자의 복무기간 2-48
- 현역군인의 타업무 겸직의 합법성 여부 3-60
- 군위탁생의 비용상환 8-54
- 군인의 외국유학 및 위탁교육과 복무기간의 가산 1-18, 3-69, 9-21, 10-29, 15-20
- 군 기술위탁생출신 하사관의 복무기간 11-55
- 위탁교육받은 자가 공상으로 전역한 경우의 비용 반환여부 19-44
- 방위병의 취업가능여부 17-34
- 현역군인의 특허권 양도가 영리행위인지 여부 17-36
- 단기복무장교의 복학보장해당여부 17-85
- 현역교관의 국외과견 18-56

- 한국국방연구원에 현역군인지원시 지원기간 설정여부 18-57
- 국외위탁교육생의 지급경비 반환 21-51
- 예산지원이나 복무가산 없이 주간대학원에 취학시키는 제도의 적법성 22-4
- 형이 실효 또는 사면된 자나 중징계후 기록말소된 자가 군위탁생이
될 수 있는지 22-5
- 군위탁생 해임, 재징계 관련 질의 23-16
- 군위탁생으로 선발된 단기복무하사관의 지위 23-17
- 야간위탁교육생의 수학기간 산정 24-19
- 군위탁자 5년차 전역 가부 28-48
- 군 위탁교육 지급경비 반납면제 28-66
- 위탁교육 종료자의 의무복무기간 가산 29-13
- 복수의 위탁교육 복무기간 가산 29-16
- 군위탁생 군진공의 수련과목 강제 지정 30-107
- 국방대 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사적 국외여행 31-13

다. 복무기간

- 군인사법 제7조 제2항의 의무복무기간 1-52
- 학도군사 훈련과정(RNTC) 출신 하사관의 복무연한 2-35
- 단기복무장교의 복무연장과 전역 15-88
- 연장복무를 지원한 단기복무장교의 전역시기 16-19
-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 및 전역 3-81
- 단기장교의 복무연장 15-29
- 여군복무기간의 연장 9-49
- 20년 이상 현역복무자 복무기간 계산 4-63
- 간부후보생의 장기복무 5-35
- 의무·법무·군종 병과장교의 복무기간 기산점 5-45
- 군법무관 시보 실무수습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10-27
- 기본병과 장교가 복무기간중 법무병과로 전과한 경우의 복무기간 12-38
- 군의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한 자의 의무복무기간 8-58
- 군의관으로 복무중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자의 장기복무 장교 해당 여부 10-40
-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 가산 11-52
-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중인 군전문의 장교의 복무기간 9-25
- 군법회의에서 면소 및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자의 복무기간 산입,
 봉급차액 소급지급 9-25
-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로 복직될 경우 호봉승급계산시 복무기간공제 여부 11-41
- 제적된 단기복무 하사의 복무기간 9-47
- 위탁교육기간의 실역복무 포함여부 10-24

- 국비로 외국에 파견한 감독관의 파견기간 10-54
- 인사관리감정규정 제31조에 의한 교관복무연장 12-27
- 병역의무 특례규정 시행이전 군에 종사한 자의 복무기간 기산일 및 복무기간 12-31
- 무관후보생이 하사관으로 복귀한 경우 복무기간의 환산여부 14-33
- 이중병적자 복무기간 합산가능 여부 12-59, 13-22
- 이중병적자의 의무복무연한 8-35
- 군인사법 제정 이전의 예비역장교의 예비역 복무기간 9-35
- 예비역으로부터 소집된 실역 복무장교의 복무기간 12-25
- 예비역 장교·준사관·하사관의 현역 편입규정에 의한 현역복무기간문제 12-61
- 지원에 의한 예비역 무관의 실역복무, 계급정년 계산 1-45
- 현역 복무기간 단축사유 9-75
- 사관후보생의 장기복무지원서 제출의 효력 17-17
- 의무복무기간을 넘는 기간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여군장교를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 17-19
- 병으로 복무중 임관한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 17-21
- 6개월간 어학교육을 받은 장교의 가산복무여부 17-22
- 군의장교의 복무기간 산정 17-23
- 외국장비제조회사에서 교육을 받은 군위탁생의 복무기간의 가산 여부 17-24
- 외국유학한 장교의 의무복무기간 17-25, 21-37
- 체적된 군위탁생의 의무복무기간 17-27
- 심신장애자 치료를 위한 복무연장 20-68
- 군인력운용상의 필요에 의한 군복무기간 단축가능 여부 17-74
- 특과장교의 복무기간단축 17-77
- 특례보충역이었다가 방위소집된 자의 복무기간 17-80
- 공중보건직의사의 공중보건업무 종사기간의 성격 17-89
- 주간근무를 하면서 주간과정 위탁교육받은 자의 가산복무 18-27
- 장교임용전 복무연장철회와 복무연장 장교임명의 적법성 19-40
- 제적된 일반하사의 병으로서 잔여복무기간 복무 18-83
- 재영복무 방위병의 복무기간단축 18-85
- 군위탁생이 장기복무장교가 된 경우 복무기간 가산여부 19-42
- 군위탁생 이수기간과 장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 19-50
- 군법무관 가산복무 적용대상자 21-68
- 장교임용을 위한 교육기간의 군복무기간 해당여부 21-70
- 학군장교의 의무복무기간 22-6
- 해임된 군위탁생의 의무복무기간 22-7
- 소위입관시 장기복무 인사명령이 발해진 경우의 효력 22-8

- 정상근무를 하는 주간위탁교육생의 의무복무기간 22-9
- 일반하사가 연장복무를 원하는 경우 복무연장을 할 수 있는지 23-26
- 현역병(기술특기병) 복무기간 단축 가능 여부 23-14
-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 24-46
- 복무연장장교에 대하여 복무기간연장 명령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5-25
- 연장복무장교의 휴직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25-31
- 공소기각판결시 휴직기간의 의무복무기간 산입 여부 25-33
- 여학생 ROTC 장교 선발시 의무복무기간 25-75
- 자비입학자 취학추천 및 의무복무기간 26-55
-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 기산점 27-55
- 위탁교육자의 가산의무복무기간 기준 27-57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부사관이 군인사법 제6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단기복무부사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7-60
- 군책임운영기관장인 현역군인 계약연장 가부 28-26
- 이종국적자의 장기복무 여부 28-53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28-70
- 유급지원하사의 신분전환시 의무복무기간 기산방법 29-14
- 유급지원병 복무연장 가능성 29-15
- 조종장교의 복무서약서의 법적 효력 29-22
-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29-23
- 해군 항공병과장교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개정 군인사법의 적용시기 30-62
- 가산복무기간 중 정직 처분 받은 자의 복무기간 산정 30-70
- 간호사관 출신 장교 의무복무기간의 합리성 31-34
- 복무연장 기간 중 불입휴직을 한 경우 전역일이 연장되는지 여부 31-72
- 비예산 국외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 31-147
- 전직지원교육 지원 요건 상 복무기간과 휴직기간 산입 32-16
-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을 특정 병과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2-26

라. 정년

- 계급정년에 해당되어 전역되는 장교의 정년해당일 8-63
- 예비역 장교·준사관·하사관의 퇴역 또는 면역 9-19
- 군인연금법상 특례에 의해 예비역에 편입된 장교의 퇴역 9-24
- 법무·의무·군종장교의 병역법에 의한 면역연령 11-57
- 의무행정장교에게 군인사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하여 그 연령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14-39

- 군국간호학교의 일반학 과정 교수요원의 연령정년 15-44
- 군사관학교 부서장 겸 조교수인 현역장교의 정년 15-87
- 사관학교 교수요원의 인정 여부 및 정년 21-41
- 포로로 관리중인 자가 현역정년에 달한 경우의 인사처리 17-30
- 임시대령의 계급정년 17-31
- 의무복무기간대에 정년에 달한 경우 18-23
- 특정 병과원에 대한 연령정년 단축 가능 여부 24-21
- 해병대 영관급장교의 정년 단축 26-46
- 국제기구 채용으로 휴직된 경우 정년과의 관계 30-57
- 임시계급의 현역복무기간(정년) 31-103
- 재임용 심사 전 군의 치의 장교 명예전역수당 기준 정년 32-13
- 개정된 별정군무원 근무상한연령의 단계적 적용가부 32-28

마. 임 용

- 공무원 신분에 관한 행정행위의 효력 1-40
- 공무원 전직시험 2-30
- 사관생도의 편입학 2-50
- 준사관이 군법무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5-32
- 임용자격의 유효기간과 군복무 5-42
- 하사관의 임용자격 결격사유 7-22
-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7-26
- 병역기피자의 군종장교 선발 여부 8-21
- 인사발령 취소 8-39
- 군의관요원의 해·공군 분류에 있어 지원서의 법적 효력 9-72
-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의 전직 10-31, 10-32
- 장기복무장교의 연령제한 11-27
- 민간인 강사의 임명 11-47
- 사관학교 교육중 도태자에 대한 하사관 임용 가능여부 12-54
- 군종장교요원 선발 13-20
- 장교 임용 연령제한 13-21
- 조건부 의사의 군의관 임용가능성 13-26
- 제외공관 주재 무관요원 선발규정 제11조의 해석 13-31
- 예비역 군종장교 후보생의 자격취득 제한연령 13-42
- 하사관 임용에 있어서의 학력 16-23
- 사관학교예의 특정직공무원 교수의임용 가부 16-38
- 국방대학원 교수의 기한부 임용 가부 16-34
-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자격 17-71

○ 성결교신학교 졸업자의 사관후보생 지원자격	20-43
○ 정년전역하는 위관급 장교의 준사관 임용	18-29
○ 육군장병을 공군으로 전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9-52
○ 군장학생의 타군입대	20-45
○ 5급 공채합격자의 현역장교 임용 최고연령	20-46
○ 영관급장교에 대한 대통령 임명장 수여	20-56, 21-63
○ 육군사관학교의 부교수를 국방정신교육원의 부교수로 보직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임명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3-19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구군속인사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23-57
○ 독학사의 해군학사장교 지원자격 여부	24-22
○ 임용결격사유자를 준사관으로 임용한 처분의 효력	24-24
○ 북한주민 귀순자의 하사관 특별임용 가능 여부	24-54
○ 국방대학교원 신규채용	25-28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사관후보생 지원	26-29
○ 장기·연장복무 지원 시 연령상한 연장여부	27-65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상의 ‘임용’	28-29
○ 학위미취득 장교 임관취소	28-91
○ 준사관 지원자격	29-9
○ 국방대학교 교수 신규채용 시 특정 연구조건 부과부	30-29
○ 전역심사위원회 결과 ‘계속복무’로 판정된 생도의 임관 가능여부	30-35
○ 군종장교 임용제한 연령	31-19
○ 신원조사에 따른 보안적부심의회에서 ‘부적격’ 결과를 받은 자에 대한 임용 가능 여부(별급형 전과 사유)	31-21
○ 육군 협약대학 졸업자의 해·공군 장교 임관 가능성	31-29
○ 신원조사 결과 회보 시 범죄경력조회 일체의 회신 가능성	31-101
○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 유지 연령	32-56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두는 4급 이하 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으로 60세 초과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지	33-41
○ 사관학교 교수를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특정직공무원으로 단독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33-75
○ 임기제로서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이나 직제개편으로 전직된 경우 군인사법 제24조의2에서 정한 ‘전직’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33-102
○ 임기제로서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이나 직제개편으로 전직된 경우 군인사법 제24조의 2에서 정한 ‘전직’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33-102
○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의 장교 임용가부	34-37

- 병과장에서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자는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입시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지 34-57
- 군인사법 제24조의 2에 따른 임기제 진급자는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입시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지 34-59

바. 초임계급

- 법무장교의 경력환산 4-59
-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군법무관의 사회경력 환산 21-72
- 장교 초임계급 부여 8-33
- 경력환산의 소급적용 10-26
- 의무장교의 임용연령제한 및 재임용시의 계급 및 경력환산 10-30
- 국민방위군 사관근무경력을 군복무경력으로 볼 것인지 여부 13-28
- 사법연수원 수료자에 대한 일반병과 병적편입과 초임계급 16-24
- 사관학교 교관요원의 초임계급 17-20
- 사관학교 1년 중퇴자의 현역입영시의 초임계급 17-70
- 석사학위를 소지한 공사교관의 초임계급 20-49
- 군의장교의 인턴수련기간에 대한 사회경력 환산 여부 21-56
- 일반하사제도의 시행 가능 여부 30-45

사. 임 기

- 서리기간의 임기계산 여부 4-47
- 복무연장에 따른 장교분리 6-29
- 병과장의 임기 기산 11-37
- 중요부서의 장의 임기 15-79
- 해병통신병과장의 임기 20-63
- 임기제로 진급된 자의 임기 24-26
- 병과장 및 임기제 진급자의 임기 26-19
- 병과장의 임기 중 전직을 위한 해임가능성 26-44
- 박사학위 교육기간이 사관학교 부교수 임기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6-69
-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설치 부대 31-126
- 해군 법무병과장의 임기만료 후 해군 내부 전직 가능성 31-136
- 임기제진급자 최저복무기간 충족여부 및 임기계산 시점 관련 33-66
- 군인사법 상 병과장 임기관련 33-94
- 과거 성추행을 이유로 현재 가해자를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34-62

아. 군인 복무 기본법, 겸직

- 군인복무규율에 관한 질의(겸직금지) 3-60, 7-34

- 민간대학에 출강하는 사관학교 교수의 겸직 9-28
- 군인군속의 한국무선종사자협회에 가입여부 10-201
- 예비역으로부터 소집되어 실역복무중인 장교의 계급 호칭 13-19
- 군부대장의 학교장 등 겸직가능 여부 19-176
- 방위소집자의 겸직 10-35
- 국방정책자문위원 해촉요건 15-78
- 국방대학원 교수의 겸직 가부 16-35
- 천주교 군종교구 유지재단의 이사의 직무가 영리적인지 여부 19-54
- 연예인의 징집전 제작된 광고와 군인복무규율상의 영리행위 22-10
- 군 소속 체육선수의 프로구단 입단계약 가능여부 23-11
- 군무원이 재개발조합 이사가 될 수 있는지 23-17
- 군인공제회 산하법인 임직원의 정치활동 금지여부 23-55
- 군인의 학교법인 대표이사 겸직 가능 여부 24-35
- 대외 출강이 겸직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25-34
- 장관급장교의 산하기관 임원직위 겸직 26-17
- 현역복무 중인 병사의 직계존속을 위한 선거운동 및 청원휴가 26-67
- 영리적 직무 범위 판단 기준 27-68
- 파견 상태로 국제기구에 복무가능 여부 28-45
- 가점·감점제도로 외박제한 가부 30-105
- 해병대 사령부의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에 대한 조치 관련 지침의 적법성 31-68
- 군무원에 대한 겸직 허가권자가 소속 부대장인지 여부 32-65
- 국방대학교 교수의 대외활동 겸직 가능 32-74

자. 진 급

- 군장성급의 정규진급 절차 3-84
- 진급낙천사유 7-23
- 장교진급 5-26
- 장교진급심사 8-29
- 장교진급 낙천자의 인사처리 8-50
- 남조선 국방경비대원의 추서진급 15-86
- 군인사법 부칙 제2조 해당자의 진급 9-42
- 군인사법상의 진급 해당연도 10-25
- 임시소령과 예비역소령 15-81
- 장교진급 예정자의 진급발령 순위 14-28
- 군인진급규정에서의 “유죄판결”의 의의 1-236
- 국제기능올림픽 입선자와 1계급 특별진급 15-27
- 진급예정자 명단과 유죄판결 16-22

- 군인사법상의 진급 해당연도에 관한 질의 17-28
- 공군학사장교의 육군장교 복무경력 인정 20-51
- 진급최저근속기간 단축규정의 적용 20-53
- 진급전 전년도에 진급선발 18-32
- 진급예정인원의 의미 18-34
- 연령정년에 달한 이후의 진급선발 18-36
- 진급선발후 연령정년에 달한 하사관의 진급 18-37
-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진급발령 18-39
- 진급발표된 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진급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 19-37
- 원사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 21-49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중사진급예정자의 진급 21-65
- 실효된 벌금형 선고사실로 진급선발시 감점하는 것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위반인지 여부 22-11
- 진급예정자의 법적 지위 24-27
- 임시계급부여제도의 적법성 여부 24-28
- 진급예정자가 중징계를 받아 항고하여 경징계로 감경되었으나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인 경우 진급발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5-23
- 명예진급제도를 국방부지침으로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 25-37
- 장교진급선발위원회가 진급예정인원 외에 예비후보자를 선발하여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26-39
- 진급예정인원과 진급제청인원의 범위 26-57
-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의 예외(약식명령 청구) 27-71
- 부사관 근속진급제한 결정사유 해당 여부 29-17
- 제외공관 무관의 직책계급장 부여 가부 29-25
- 예비역 간부의 진급심사 시 전역예정자 선발 가부 31-95
-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 12월에 정년전역일이 도래하는 장교의 법정진급 대상여부 33-49
- 인력운용상 필요에 의하여 임시진급을 시행할 수 있는 지 33-83

차. 전 역

- 병력초과운영시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적용 1-30
-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무복무기간 초과자의 전역 1-47
- 전역지원서 제출기간 1-48
- 제적사유가 확정된 군인이 그 확정일 전에 원에 의한 예편이 되었을 경우의 조치 1-49
- 군인으로서의 신분종결일 1-71
- 전역일 당일의 신분 15-90
- 지원에 의한 단기하사에 대한 저능률자 전역규정의 적용 15-75

○ 저능률자 전역규정 해석	2-32
○ 장기복무전형에 불학격한 장교로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의 처리	3-77
○ 예비역무관의 특수 전면역	7-73
○ 여군 임신으로 인한 전역무제	5-37
○ 군인사법상 복무연장자의 전역	6-23
○ 불명예제대자의복무해제시기	7-16
○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하는 장교에 대한 전역조치 가능 여부	8-43
○ 위탁교육 이수자의 전역원 제출	8-52
○ 연령정년에 달한 자의 전역 연기	8-53
○ 의원출마를 위한 전역	8-145
○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기일전에 제출된 전역 보류신청	9-29
○ 위탁교육을 받은 장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전의 전역	9-32
○ 전역될 병과장의 전역보류	10-19
○ 전역보류처분의 효력기간	15-24
○ 2중전역 발령된 자의 효력	10-20
○ 장기복무 법무장교의 전역 등	10-23
○ 단기하사 및 병에 대한 전공상 여부 결정	9-17
○ 위탁교육을 받은 간호장교의 특수전역 등	11-63
○ 전역의 특례	11-68, 14-35
○ 형집행정지중인 자가 의병전역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동인을 의병전역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12-23
○ 군복무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	16-21
○ 군인신분상실시기	17-33
○ 착오에 의한 전역처분의 취소여부	17-78
○ 현역병의 특수전역	17-79
○ 장기복무장교의 장기복무해임	18-21
○ 위탁교육을 받은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	18-25
○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시기	19-55
○ 을종 위탁생이었던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	19-58
○ 5년차 전역희망 장기복무장교의 전역절차	20-76
○ 전역지원서 제출 없는 전역지원	18-42
○ 전역지원서의 효력과 인사정책	20-79
○ 심신장애자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의 전역여부 결정권한	18-44
○ 8,9급 심신장애자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	20-66
○ 의무장교에 대한 전·퇴역신체검사시 적용규정	18-45
○ 전역보류기간만료후 전역보류	18-48

- 의무복무기간 연장입법의 적용시기와 전역보류 19-63
- 현역정년에 달한 장교의 전역보류 20-73
- 퇴역연금 지급대상자의 전역보류 21-53
- 군위탁생출신장교의 의병전역과 비용반환 18-52
- 기소된 군의장교에 대한 전역발령일자 20-71
- 전역에 관한 해군 건강관리및신체검사규정의 효력 21-54
- 편제조정 및 교과개편과 관련하여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의 전역관리문제 22-12
-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단기복무장교이 강제전역 여부 22-13
-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는 동법 제41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22-14
- 직업보도교육의입과자격 22-15
- 임기제 진급자의 전역시기 등 23-10
- 장기복무 의무장교가 전문의학과정 수습 도중 위 과정을 중단한
경우 5년차 전역이 가능한지 23-13
- 군인사법 개정 전 임관한 단기장교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해 원에
의한 전역을 할 수 있는지 23-23
-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 기산점 23-25
- 정원초과 인력해소를 위한 강제전역 가능 여부 23-28
- 직업보도교육 신청자격 여부 24-33
- 특수병과장교 전역시 적용할 신검규정 24-52
- 장관급 장교의 정년전역 25-27
- 의무조사결과 신체등급(4급) 판정을 받은 자를 전역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26-23
- 가산복무기간 중 군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장학금을 반납하고
전역가능한지 여부 26-25
- 육아휴직자의 5년차 전역지원 26-33
- 의무조사결과 심신장애등급이 1-7급인 자를 현역복무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26-51
- 전직된 임기제 진급자의 전역시기 27-73
- 육아휴직자의 전역일 27-78
- 기소휴직 처리된 전역예정자의 전역명령의 적법성 27-80
- 임기제 진급자 보직 변경 28-55
- 군 체육선수 ‘도태’의 법적 성질 28-68
- 심신장애전역 대상자 복무 가능 여부 28-73
- 전투경찰순경 전환복무 해제 28-83
- 직업보도중 근속진급된 경우 재복무 가부 28-87
- 전역보류 직권취소 및 철회 29-11
- 임기제 진급자를 전직지원교육 비대상자로 한 해군 규정 30-67
- 부사관후보생이 심신장애 전역을 하는 경우 전역처분 필요 여부 30-82

- 중징계처분에 대한 항고기간 중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30-10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교육훈련대상자의 범위 31-42
-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현역병의 복무기간 연장가능성 31-44
- 국직부대 소속 해군 위관장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 제대 31-59
- 기소휴직 된 단기복무장교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시 전역일자 등 31-62
- 1심판결 선고 후 중징계 받은 자의 지원 전역 허가 가부 31-65
- 육군 예비역 장교 전역명령 정정 31-97
- 장기복무장교 5년차 전역 32-19
-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32-45
- 전역심사 서류 중 징계처분이 말소된 경우 전역심사 가능여부 33-33
- 영관급 장교로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정밀장비기술자에
항공기 조종사가 포함되는지 33-62
-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심사대상자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계속 복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33-99
- 전역심사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퇴역의결도 가능한지 여부 34-47

카. 제 적

- 벌금형을 받은 자의 제적 1-24
-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관의 제적 1-25
-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의 제적 1-27
- 군인사법상 제적대상자가 제적되기 전 복권된 경우의 제적 1-28
- 사건계속중인 자의 제적 1-32
- 집행유예중 사후조치로 잔여 유예기간의 집행면제 효력 및 제적 1-53
- 군인사법 제40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의 병역의무 5-66
- 제적발령 지연자의 제적일자 7-27
- 제적명령의 지연과 복무기간 환산 9-20
- 성적자격 박탈된 군중장교의 인사처리 8-55
- 대리입대자의 신분 8-27, 9-18, 11-63
- 제적될 자의 제적전 복무기간의 성격 8-28
- 제적과 복무월수 계산 8-56
- 유죄확정된 자의 제적 8-59
- 외국인이 인지한 자의 제적 8-149
- 해군 예비원의 제적 9-36
- 2중 병적자의 제적 9-44
- 예비역 무관후보생의 제적 10-41, 13-34

- 제적된 장교의 신분처리 10-42
- 사면과 제적자 인사처리 10-48
- 법무장교후보생 중 결격사유로 인해 임관이 불가능할 경우 현역병
입영여부 12-65
- 제적된 단기하사의 병역에 관한 질의 14-37
-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장교 등의 전역 일보 일자 12-29
- 복무 연장한 임용 하사관이 제적된 경우의 인사처리 15-35
- 포로·실종 또는 행방불명된 군인의 인사 15-53
- 포로 및 행방불명된 군인에 대한 인사 16-33
- 형사사건이 군의 후보생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16-30
- 행방불명된 장교의 제적시기 20-81
- 무관후보생이 된 현역하사관 등의 신분상실시기 20-65
- 집중호우로 실종된 장병에 대한 순직처리의 가능시기 및 방법 22-16
- 사관학교퇴교자의 편입학 가능 여부 24-38
- 하사관 제적 처리 절차 24-47
- 육군3사관학교 규정에 의한 퇴교 가부 28-33
- 재심청구로 무죄 확정판결 받은 자에 대한 제적명령 및 진급 31-54
- 군종장교의 소속 중단 변경과 장교 신분의 보유 31-112
- 장교정원조정계획의 일환으로 군 교수의 정원조정이 이뤄질 경우, 일부 감원되는
직위의 군 교수를 면직할 수 있는지 33-69
- 국군간호사관학교 사관생도를 심신장애를 사유로 퇴학시킬 경우 어느 제대에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지 여부 33-78
- 부사관 근무 중 제적이 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34-80

타. 복 적

- 재심에 의해 무죄가 확정된 자의 복적 여부 3-37
- 상소권 회복된 자의 인사처리 2-44, 6-30
- 무죄판결된 직위해제 공무원 복직시기 8-40
- 복직 발령시기 8-62
-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재심판결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그 복직 9-33
- 재심과 복적시기 10-45
- 착오에 의한 제적임이 확인된 경우 해군 예비사관의 복적 10-46
- 재심무죄인 자가 연령정년에 달한 경우 복직 및 전역시기와 복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수당의 범위 22-17
-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학적복원 및 추가입관 23-26
- 선고유예판결 받은 자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 25-36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의 상고심 계속 중 복직 가능여부 26-49

- 긴급조치위반 무죄 판결과 복직 가능성 31-23
- 임기제 진급 장성급 장교가 기소휴직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 임용권자가
복직명령을 할 수 있는 지 34-45

파. 휴 직

- 휴직으로부터의 복직시기 1-20, 8-62
- 군법회의에서 무죄로 확정된 자의 복직 9-46
- 휴직명령 시기 11-32
- 휴 직 11-44
- 휴직이 호봉 재획정에 미치는 영향 15-17
- 소급 휴직명령의 적법 여부 12-50, 11-17
- "공소권무" 결정을 받은 자의 인사처리 14-21
- 벌금형 선고사건의 이송가 휴직명령 19-57
- 휴직기간 계산방법 19-67
- 3군합동부대 소속장병의 외박규정 24-36
- 육아휴직자 진급발령 보류 28-81
-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일부를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29-27
- 예비 간호사관생도 가입학 기간 중 퇴교처분 관련 30-21
- 군인의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0-74
- 가사휴직을 1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31-151
- 육아휴직한 간호장교에 대한 대체인력(기간제 근로자) 활용가능성 31-154
- 남성 군인의 불임·난임 휴직 32-11
- 기소휴직과 무죄판결 32-61
- 기 실시완료된 육아휴직에 대한 자녀변경 가능여부 33-135
- 군인사법 제49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의미 34-75

하. 휴 가

- 불치의 병(암)으로 진단된 장교의 해외 휴가 10-55
- 군인의 휴가일수와 공휴일 포함여부 16-32
- 대간첩작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휴가·복무단축 등 16-44
- 군인의 휴가중 해외여행 17-37
- 벌금형 확정된 자 대한 소급휴직 명령 가능 여부 24-41
- 기소휴직된 자의 상고심 계속 중 복직 가부 27-85
- 민간의료기관 이용시 청원휴가 가부 28-52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지침 하달의 적법성 31-49
- 승인받은 청원휴가와 별도로 시행령 개정 후 30일의 청원휴가를 추가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34-110

거. 위 입

- 의병전역권 위입 7-15
- 한·미통합 제1군단 부군단장의 권한 부여 8-31
- 시험실시 권한의 위입 11-22
- 휴직명령권의 위입 11-67
- 방위병에 대한 인사 및 징계권의 위입 16-27

너. 잡 칙

- 외국사관생도의 국내유학 7-18
- 하사관후보생의 퇴교에 관한육군참모총장의 규칙 제정 9-26
- 전사일자 기준 9-41
- 군무이탈자의 처리 10-47
- 국방대학원 입학자격 11-26
- 현역장교의 타군으로의 전군 12-122
- 국방대학원 교수 등의 신분보장 13-32
- 군인사법중 개정법률 등의 시행에 따라 현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에
대한 새로운 행정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14-24
- 포상권자의 범위 15-42
- 사법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 시보의 실무수습 8-24
- 예비역장교의 현역장교로의 편입 11-59
- 국방부 직원(군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의 보직관리 12-57
- 전사편찬위원 및 촉탁의 임용 15-40
- 전사편찬위원회 위원 임명 및 직급표시 15-58
- 탈영기록 정정 5-28
- 기소중지처분된 자의 보직 7-25
- 사관학교 등의 용어 정의 15-66
- 하사관 지원 입대자가 중사로 진급 계속 복무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로서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15-67
- 예비군 중대장의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겸직 16-36
-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하여 특별훈련을 받은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에 대한 처리 16-39
- 국군장의 요건 17-38
- 장기입원환자의 처리 20-69
- 생사불명의 포로에 대한 사망구분 20-83
- 심신장애로 전역하는 자에 대한 군장학급 반납 면제여부 22-18
- 군 영내에 설치한 게임기의 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한 경우

영업허가의 대상이 아님	22-19
○ 국방부 산하기관 임원의 임기 만료시 직무대행 가능여부 등	23-12
○ 승진임용처분이 위법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23-27
○ 특수병과 장교의 당직근무에 관한 질의	23-24
○ 군장학생 해임시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반납 여부	24-43
○ 부사관의 학군무관후보생 편입	27-89
○ 부사관 근속진급의 시행일	27-90
○ 대학장학생의 3사 입학시 '전학'의 적용 여부	28-36
○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의 '학기말'의 의미	28-43
○ 체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상 장기지원 가부	28-57
○ 월납진 실종자(하사 안00) 법적 지위	28-76
○ 사관학교 퇴교자 출신 부사관 법적지위	28-94
○ 전역 후 재의무조사	28-127
○ 육군3사관학교 1~3기 졸업생 학점인정	29-19
○ 국방대부총장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격	29-24
○ 사관학교 가입학자의 신분	29-26
○ 법무장교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여부	29-28
○ 군수형자의 일반교도소로 이송	30-43
○ 군교수의 재임용심사	30-85
○ 인사교류 통제직위를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보직 기산점	30-87
○ 영관장교의 임명장에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	30-96
○ 단기복무장교 장려금 반납처리	31-11
○ '군 내 임신여성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31-27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는 군인의 범위	31-38
○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위원 해촉	31-52
○ 개별적으로 입영 중인 자 등이 군인인지 여부	31-74
○ 국방부 검찰단에 국방인사정보체계 약식자력 조회 권한부여 가부	31-83
○ 입대취소 또는 무효인 자의 신분	31-124
○ 부사관 군장학생의 장학금 반납	31-131
○ 군인 및 군무원 상호 간 직무대리 가능성	31-145
○ 군무원 근로계약 시 계약 명의를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으로 하는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32-38
○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공무 외 국외여행의 허가범위	32-42
○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검토	32-48
○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	32-63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후 동일한 청구사항에 대한 재심사 청구가능 횟수	33-46

- 한국국방연구원 임직원의 복무제도에 국가공무원 법령을 준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33-56
- 군인사법 제54조의 2 등의 '상이'에 '질병'이 포함되는지 33-81
- 부대개편에 따른 계약해지가 근로기준법 및 관련 훈령에 위반되는지 33-85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상 '문화·예술활동의 범위' 34-48
-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재판결과 확정시 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34-77
- 사관학교 생도에 관한 퇴교처분이 인사소청 대상인지 34-81

4. 징 계

가. 성 질

- 형사처분과 징계처분 상호간의 관계 1-54

나. 사 유

- 군인신분 취득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가능 여부 1-37
-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자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 8-45
- 징계사유 소멸시효 12-56
- 군인사법상 징계사유의 시효 9-23
- 징계시효의 기산점 21-75
- 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 27-92
- 무단국외여행자 징계 32-58
- 전시에 육아휴직 중인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복직명령 가부 및 복직명령에 불응 시
형사처벌 또는 징계할수 있는지 34-69
- 국외 군무이탈자에 대한 제반조치 검토 34-71

다. 종 류·대 상

- 카투사병의 징계 2-39
- 간부후보생의 징계 3-57
- 하사관후보생의 군인사법에 의한 징계 5-41
- 군속징계 7-33
- 파견된 공무원 또는 군인에 대한 징계권 행사 8-46
- 병의 강등 8-60, 12-133
- 소집중에 있는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한 징계권 행사 10-110
- 징계유예처분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30-41
- '군수용자', '영창시설'의 개념과 계호업무 종사자 범위 관련 32-34
-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 해당여부 32-50

라. 징계권자

- 징계권자의 부인권 행사와 징계처분 2-51
- 하자 있는 징계위원회 의결의 취소 등 3-66
- 징계위원회의 직무 3-79
- 타군 장병에 대한 징계 6-42, 7-35
- 위수사령관의 징계권 6-43
- 감독을 받은 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범위 2-31
- 징계권자로서의 함정장의 정의 15-82
- 징계권자 자격 11-19
- 군인사법상의 징계권자 12-45
- 수도권합병원분원장의 징계권 및 표창권 존부 13-38
- 국방대학원 소속의 본부대장 및 본부중대장의 경징계권 행사 가능 여부 14-30
- 미8군 한국군 연락장교단장의 징계권 12-52
- 국방품질관리소장의 현역군인에 대한 징계 21-52
- 한국국방연구원에 파견근무중인 현역군인에 대한 징계 21-49
- 국방대학원소속 특정직 교수의 징계관할 23-8
- 수임군부대장이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25-29
- 국방과학연구소 전속 군인에 대한 징계 관할 32-67

마. 징계위원회

- 군인사법 제51조의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성격 등 1-61
- ○○본부 예하 장성급 부대에서 직권면직 처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가 가능한지
..... 34-92

바. 징계절차

-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수속 진행 3-85
- 감사기관의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신청 기간 중 징계절차 30-80
-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요구를 한 상태에서 징계혐의자가 타 부대로
전속된 경우 징계절차 30-99
- 지휘관의 의견에 따른 재심의가 가능한지 34-86
- 지휘관의 권한으로 인사운영위원회 재심의 회부가능여부 34-97

사. 징계의 효력

- 직무대리자가 한 징계의 효력 5-39
- 징계처분의 취소 2-42
- 징계처분 취소 변경 3-82
-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 질의 5-27

- 징계처분의 정지 7-20
- 징계처분을 받은 군속에 대한 면직가능 여부 11-71
- 전소속부대장이 한 징계처분의 효력 5-27
- 징계조치기간의 경과와 징계의결의 효력 19-59
- 징계특별사면의 효과 및 현역복무부적합조사 26-71
- 징계유예 취소의 요건(군인징계령 제21조 제2항의 해석) 29-29
-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의 직권취소 가부 29-31
- 혐의없음의 징계의결에 대한 심사청구 가능 여부 29-32
- 2회의 경징계처분 중 두 번째 경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사
조사위원회 회부 가부 30-65
- 판결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 징계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34-88

아. 항 고

- 징계항고 심사결과 결정에 따른 취소 내지 감경에 있어서의 소급
적용여부 및 경감조치시의 집행방법 1-38
- 국군징계항고심사규정에 의한 심사결정 2-56
- 항고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회 임명문제 3-56
-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운영 3-87
- 징계항고 업무처리 절차 등 4-39, 10-50
- 중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여부 미결정자에게 전역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12-36
- 징계항고심에서 원처분 취소결정만 있고 중국적 판단이 없는 경우의
재징계 18-54
-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 30-55

자. 잡 칙

- 징계권자의 경감조치의 한계 등 3-63
- 징계처분취소와 현역복무 부적격자로서의 전역 15-47
- 징계위원회의 불문의결 가부 16-28
- 전역한 군인에 대하여도 징계등 기록 말소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23-20
- 강등처분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경우 예비역으로서의 계급이
원상회복되는지 23-15
-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26-59
- 특별사면 명단 누락자의 사면 가부 27-95
-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취소 권고의 효력 28-61
- 징계기록이 말소된 자도 징계사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29-30
- 군인징계령 제21조(징계유예) 해석 관련 31-47

- 재징계 의결요구 기간 31-91
-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 1심재판을 근거로 육아휴직 복직 및
 기소휴직 처분이 가능한지 34-84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취소 결정관련 34-94

5. 군무원 인사

가. 임용

- 전역되는 현역군인을 군속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면제 가능 여부 10-53
- 군속임용 전에 취득한 자격증 및 면허증을 가진 자를 군속
 인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전직할 수
 있는지 여부 12-45
- 군속인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전직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직무의
 의의 13-25
- 군복무당시의 중대장, 대대장의 경력을 군속인사법 시행령 소정의
 행정직 군 경력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14-19
- 임용예정 군무원의 해당 직무분야 경력인정 21-76
- 현역복무를 필하지 아니한 자의 군속임용 제한 여부 8-37
- 재임용된 군속을 퇴직전 다른 직군에서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승진시킬수 있는지 15-19
- 다른 직열로 변경한 경우의 승진경력 평정 15-23
- 직열을 무시한 군속 3급 이상의 보직관리 15-26
- "원직급으로 전직할 경우"의 의미 15-89
- 군속채용의 치고 연령 15-85
- 신규채용과 군속의 강입 15-37
- 4급갑류 군속의 특별승진 15-31
- 군속인사법 제9조의 채용연령 및 정년규정 배제 여부 1-77
- 군속의 복무연한 서약서의 법적 효력 1-79
- 군속의 채용연령 2-34
- 정년 연장의 기준시점 15-84
- 전직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16-42
- 국군정신전력학교의 교수자격 19-48
- 일반학 담당교관의 개년 19-66
- 복무기간만료전 군인의 군무원 임용 20-85

- 군무원 임용결격사유발생시 처리 절차 24-50
- 별정 군무원의 상위상당계급 임용 25-30
- 군무원인사법상 별정군무원으로 조종군무원 임용가능 여부 26-64
- 군무원의 통합보직관리 27-98
- 군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27-101
- 군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재조정 27-103
- 폐지된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의 근속승진 가능 여부 등 29-6
- 군무원 승진예정자의 근속승진 심사대상 포함 여부 29-12
- 합동군사대학교 계약군무원의 채용 계약 승계 30-32
- 일반계약직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재채용시 선발대상 및 공고 30-77
- 군무원 진직시험 면제 여부 31-32
- 일반계약군무원 직위지정범위 확대 가능성 31-110
- 별정군무원의 상위 상당계급 재임용 가능성 31-149
- 기능군무원 추가합격 결정 32-72

나. 공개경쟁시험 및 특별시험

- 근속특별채용시험 제한문제 4-52
- 근속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임용자격 15-55
- 일반사면과 군무원 특별채용 시험자격 16-41, 17-39
- 1급군무원 특별채용시 환산특례 적용여부 18-61
- 박사학위 소지 군인의 군무원 채용 20-87
- 4급 군무원 특별채용시 소령 이상으로 전역한 자로도 가능한지 여부 22-20
- 별정군무원의 특별채용 27-104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의 경우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9-5
- 기능군무원의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 시, 특별채용시험 면제
가부 30-48
- 일반계약군무원(1급) 직위 지정 가능성 31-120
- 신원조회 및 보안적부 심의 결과에 따른
군무원 채용시험 불합격의 적법성 31-134

다. 면 직

- 근속의 면직시기 및 해직된 근속의 계속근무 등 4-54
- 근속인사법 중 결격사유 5-38
- 서독에 파견된 간호근속의 현지 해임 가능 여부 등 14-26
- 군무원의 직권면직 17-43

- 임시군무원의 직권면직 17-45
- 해외위탁교육을 받은 군무원의 사직 17-46
- 군무원 임용시 작성한 의원면직서의 효력 19-68
- 약식명령이 청구된 군무원의 직위해제 21-58
- 군무이탈 중인 군무원의 직권면직 가능 여부 26-37
-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군무원의 육아휴직과 의무복무기간 31-128

라. 복 무

- 위탁교육중인 군속의 사표 제출 9-45
- 군속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한 면직 여부 10-33
- 교육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의 직급명칭 20-89
- 군무원에 대한 당직사령·당직사관의 임무부여 20-91
- 군무원 위탁교육시 의무복무기간 24-48
- 군무원의 병가시 허가권자 24-49
- 군무원의 당직편성 29-21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시행 관련 30-51
- 군무원 근무성적 평정자 30-90
- 예비군지휘관 전보관련 군속년수 31-17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는 군무원의 범위 31-40
-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상 전보 및 인사교류 규정 해석 31-86
- 군무원 위병사관 근무편성 32-69
- 임기제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반영되는지 33-72
- 군무원의 인사교류가 허용되는지 34-50
- 군무원에 대한 총기, 군복 및 군용장구 지급 가부(군무원인사법시행령 개정 前) ... 34-65

마. 신분보장

- 군속의 병가 기한문제 2-49
- 국군의무사령부의 군무원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 17-41
- 임시군무원의 법적 자위 17-48
- 군무원을 강입할 수 있는 때로부터 4년 5개월 경과후 강입할 수 있는지 여부 19-47
- 군무원 승진평정 대상인 교육훈련 과정 20-93
- 군무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서 직급소지기간 21-35
- 행정직 군무원의 경력평정 21-60
- 군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신분 30-54
- 승진공석 추가 승인 가능여부 31-71
-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국방부 지침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31-80

○ 기존 훈령과 배치되는 군무원 동일부대 지킴 발령의 가능성 31-99

바. 징 계

○ 군속의 지각 및 조퇴자 2-33

○ 군속징계에 대한 임용권자의 승인 6-41

○ 징계처분의 불이익기간 15-51

○ 군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상위직"의 개념 등 16-26

○ 군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자격 18-63

○ 군인복무시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군무원징계 20-61

○ 군무원의 정직기간 중 교육과견과 출장이 가능한지 여부 31-89

○ 고위공무원도 1급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31-116

○ 전역을 이유로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이 있고 전역 후 한시입기계 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에 해당하는지 33-97

○ 국가공무원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군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는지 34-55

6. 보 수

가. 보수 및 수당

○ 진급으로 진급 전보다 보수가 적어진 자의 호봉승급 11-75

○ 초임 계급이 중위 이상으로 임용된 장교의 진급시 호봉부여 13-36

○ 진급시 호봉승급 12-71

○ 준사관으로부터 장교로 임용되는 자의 호봉부여 및 호봉조정 후의 승급기간 계산 등 3-92

○ 대위 8호봉이 진급한 경우 호봉부여 15-76

○ 상사에서 준위로 진급한 자에 대한 호봉부여 7-37

○ 강등되었다가 원계급으로 환원된 하사관에 대한 호봉부여 14-95

○ 하사관 복무경력 있는 군법무관의 초임호봉 확정 21-83

○ 예비역 지역중대장 상여금 지급 12-73

○ 무죄선고받은 자의 미지급 상여금을 소급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3-98

○ 전역일자 이후에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한 보수지급 2-60

○ 사관학교 교관의 신분과 보수지급 1-92, 3-98, 4-67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미결중인 준사관 및 하사관 또는 복역중인 병에 대한 봉급 지불 1-87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보수지급 4-168

○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장교의 봉급 지불 8-63

○ 전역 및 제적취소된 자의 봉급 지불 1-81

○ 구속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받은 자의 봉급지불 1-83

- 무죄판결이 확정된 장교에 대한 휴직기간중의 봉급지불 5-49
- 전역 및 제적취소된 자의 봉급 지불 6-37
- 전역취소 판결과 전역기간중의 제수당 15-198
- 군인의 특수근무수당 및 군속의 특수업무 장려수당 지급시기 15-200
- 부양가족의 범위 15-201
- 군수련전공의와 제수당 지급 15-205
- 학생군사교육요원에 대한 장기복무수당지급 15-206
- 사면된 징계처분에 의한 상여금 및 정근수당의 감액 10-208
-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한 자에 대한 제수당 지급 15-209
- 여군장교의 가족수당 지급 9-24
- 군인 피복수당 지급 3-96
- 육군기술군속의 수당지급 3-97
-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장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지급 7-40
- 군법무관 수당 지급 8-67
- 법무병과로 전과한 군법무관이 군법무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2-14
- 군법무관의 자격상실 및 수당지급 여부 3-92
- 공무원의 위원직 수당의 합법여부 5-53
- 출동 함정에 근무하는 병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14-98
- 함정근무수당 지급 1-92
- 휴직된 군속의 조정수당 지급 11-77
- 교관교재 연구수당 수급권자 16-50
- 구군인보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4의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법무관"의 의미 16-51
- 전문·기술분야 종사 경력자의 병과전환과 호봉재획정 16-52
- 경력을 합산받지 못한 자에 대한 호봉재획정의 시기 절차 16-53
- 관사입주 장병에 대한 주택수당 지급가부 16-55
- 군인 군무원의 제안제도와 특별승급 16-56
-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의 범위 16-58
- 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시기 16-59
-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공무원 봉급의 소멸시효 기간 17-55
- 여자 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 범위 17-57
- 전사편찬위원회 위원에 대한 가족수당 등 지급여부 17-59
- 체적된 군인에 대한 보수지급 기한 17-60
- 입영교육중의 학군사관후보생에 대한 보수지급 18-67
- 직계존속과 주거가 다른차남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18-72
- 가족이전비 지급제외 18-73

- 영국교육기관에 파견된 조종사와 제외근무수당 19-79
- 육군사관학교 5급 사서직 군무원에 대한 사서수당 19-83
- 군사법원 서기 및 군검찰 서기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 20-101
- 비행휴관정된 조종사에 대한 항공수당 지급 20-103
- 사실상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18-74
- 원계급복귀하여 전역한 장교의 퇴직급여산정 20-106
- 임시고용원의 퇴직금지급 여부 19-73
- 임시군무원 퇴직금 산정기준 19-77
- 여군병과 폐지로 전역하는 여군병과장과 명예전역수당 19-75
- 19년 6월 근속후 병과장으로 전역하는 자와 명예전역수당 19-81
- 명예전역수당 지급 위한 병과장의 근속기간 20-105
- 명예전역수당 지급 여부 21-79
- 군인에 대한 자문비 지급 20-99
- 주택수당에 관한 문제 22-21
- 공무원보수규정 제 30조의 2의 군인 근속가봉과 관련한 문제 22-22
- 현역 군인 등에 대한 감수비 지급여부 22-23
- 군무원의 직위해제 기간중의 보수 22-24
- 장교로 전역한 후 다시 군법무관이 된 자에게 군법무관 장려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전역전 복무기간의 산입여부 22-25
- 체심무죄인 자가 복직된 경우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2-73
- 명예전역자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명예전역 수당 지급관련 질의 23-30
- 귀환 국군포로의 봉급관련 질의 23-32
- 임기제진급 장군에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23-33
- 현역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번역료 지급 가능여부 23-34
- 퇴직한 군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23-36
- 기술수당지급대상자 관련 질의 23-38
-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이 군인보수법상 보수지급 대상인지 23-41
-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명예진급만 한 상태에서 명예전역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23-42
- 봉급인상률 차등적용 가능 여부 24-73
- 교관이 다른 부대로 진출한 경우 교관연구 조성비 지급 가능 여부 25-58
- 현병수사관의 위장피복비 증액 가부 25-70
- 병 복무기간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의 차등 지급 가능 여부 26-85
- 군법무관수당 지급 요건인 “임관 후 3년”의 의미 27-119
- 특수경력직공무원 근무 중 파면된 자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7-122

- 학군무원후보생의 보수 27-126
- 명예전역자의 장애보상금 지급여부 28-120
- 준사관의 퇴직금 산정방법(부사관임용취소시) 28-122
- 선고유예시 잔여퇴직금 지급 28-124
- 진료미종결 전역자의 공무상 요양비 28-133
- 해외 파병장병 수당 28-139
- 피복비 소급 지급 가부 29-38
- 군무원 명예퇴직수당 신청 후 심사 전 사망한 경우 수당지급 가부 29-40
- 군인군속급식규정상 현물지급의 의미 29-45
- 항공수당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29-46
- 보수 분할지급 여부 29-50
- 바레인에 개인단위로 파견된 군인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30-124
- 기소휴직 후 무죄 선고로 복직된 자의 봉급 차액 지급 여부 30-130
- 휴직(기소)중인 사관생도의 급여 지급 여부 30-138
-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국가비상사태’ 해석 32-24
- 함정근무수당 지급 32-118
- 코로나19로 수당의 지급요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경우, 특수업무 수당을 별도의 조치를 통해 지급가능한지 34-108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하던 위험근무수당의 지급가부 34-137

나. 보 칙

- 집체교육기간중 임금 지불 7-42
- 파면 등으로 제적된 하사 등에 대한 전역급여금 지급 2-58
- 장기복무 해임과 동시에 하사로 전역되는 자의 전역급여금 지급 2-60
- 생존이 확인된 실종자, 행방불명으로 제적된 자의 봉급 및 연금지급 6-35
- 포로가 된 군인의 대한 봉급지급 16-49
- 관할관 확인조치에 의한 형집행 면제의 경우 급여액 지급 9-30
- 군인의 호봉승급 기준일자 17-61
-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경력환산기준 17-64
- 임용전 경력의 복무기간환산 18-68
- 호봉확정시 잔여기간의 차기승급시 반영 18-70
- 민간인 이발사 근무기간의 기능군무원 호봉환산 20-95
- 법무장교(장기) 초임호봉 산정 방법 28-116
- 부사관 임용취소시 준사관 호봉산정 28-130
- 재임용에 따른 전 신분의 군 교육기간 경력인정 30-72

다. 기 타

- 국내여비규정 제9조의 소관장관의 해석 1-86
- 국내여비규정상의 이전료 및 가족 이전료의 지급 해당범위 3-95
- 근무연습 소집에 의한 동원훈련중인 자에 대한 급여급 지급 10-57
- 전지사변 등 국가비상사태하에서 보수의 지급 10-60
- 퇴교자 변상금 12-75
- 사관생도 휴가비 지급 13-97
-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대상 14-97
- 파월 선급금 면세 적용 7-41
- 잠급직원의 퇴직금 청구권과 소멸시효 15-210
- 잠급직원 재직기간의 기산 근거 15-211
- 잠급직원의 처우 등 15-202
- 사관후보생 등의 교육훈련중 퇴학과 상여급 등 지급 16-47
- 육군복지근무지원단 근무원의 경력인정 여부 17-53
- 호봉의 소급승급 신청과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21-112
- 순항훈련중인 사관생도 여비지급 급류 21-117
- 5.18사건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부터 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지 23-29
- 퇴직자가 복무중 사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지 ... 23-35
- 병사를 위한 국가의 보험 가입 가능여부 23-103
-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의 지급/환수와 소멸시효 26-80
- 군장학금 반납면제신청 기한의 법적성격 28-105
- 망자를 대리한 연금 소급 청구 가부 28-108
- 상이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8-109
- 훈련중 보충역 공단부담금 부담 여부 28-112
- 한남대 위촉강사 강사료 수령 가부 29-47
- 개인회생절차 관련 전세자금 회수가부 29-48
- 군 발행 간행물에 투고한 군인·군무원에 대한 원고료 지급 가부 30-127
- 해군사관학교 교수 산학협력단 연구비 수령 가능여부 32-77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심의절차가 완료된 사안에 대한 재심사·재산정 요구 가부 ... 32-97
- 공상군인의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 초과 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여부 32-99
-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의 의미 32-103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의 법률관계 32-105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 32-114
- 지뢰피해자에 대한 보호비 산정시점 32-126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시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 경우 32-129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인 부사관 후보생이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대상이 되는 지 34-129

7. 병역

가. 총칙

- 6년 이상의 자유형 선고와 병역의무 15-136
- 역종 변경 6-69
- 예비역 하사관을 제1국민역으로 역종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16-76
- 제적자의 역종 부여 6-71
-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자격 있는 자의 예비역 장교 편입 및 복무기간 16-79
- 제대 후에 복무할 역종 1-141
- 국토건설원의 역종 관리 7-96
- 역종 구분 10-39
- 이중병적자 처리 2-40
- 학도 입영군사훈련필자에 대한 병적사항 등 2-96
- 이중병적자의 병적정리 4-50, 6-74, 7-87, 14-61, 15-166
- 사관학교 중퇴자의 병적관리 6-62
- 병적누락자의 처리방안 6-68
- 제적자의 병적관리 7-100
- 병적정정 10-76
- 역종정정 10-38
- 입영전 및 입영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된 예비역
 군종장교후보생의 병적관리 10-85
- 해외이주 허가 취소와 보충역 편입처분의 효력 15-150
- 여자 현역복무지원자 지원 취소 5-73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의 전역시 역종부여 2-88, 6-79
- 학도의용군으로 종군한 자의 예비역 편입 6-63
- 주재국 거주 영주권 소지자의 병역의무 15-145
- 외국시민권 취득과 병역의무 2-90
- 외국국적 취득과 병역의무 10-81
- 외국국적 취득자의 대한민국국적 상실시기 16-75
- 하사관이 장교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경우 병적처리 1-140
- 현역병 입영영장이 취소된 제1보충역의 복무연차 7-85
- 단기하사 복무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 19-101
- 육군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 20-252
- 전투경찰대설치법상 현역병으로 징집결정된 자의 범위 20-253
- 의무경찰에 대한 해·공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적용 20-255

- 국정회복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21-249
- 인턴과정 수료후 군전공의요원시험에 합격한 자의 의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21-251
- 군의·치의 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전 신체검사 및 역종분류 22-37
- 공익근무요원을 서울 도시철도공사에서 활용할 수 없음 22-38
- 부정기형을 신고받은 자(소년범)에게 병역의무 부과시 적용할 형기 23-43
- 임용취소 된 하사관의 보충역 편입 여부 등 23-47
- 미호적 이중국적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여부 24-98
- 개정 병역법 제71조의 적용범위 25-74
- 사법시험합격자를 5급 공채시험 합격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25-86
- 신학대학 영어교육과 학생이 군중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 25-88
- 주한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한 학력 인정 기준 25-89
- 국외에서 신고받은 형을 기준으로 병역법상의 병역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6-117
- 보충역에 해당하는 퇴교자의 경우 기초군사훈련 면제 가능 여부 29-35
-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입원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이어야만
계속 복무의결을 할 수 있는지 34-146

나. 징병검사

- 징집 입영한 자의 체적과 징병검사 7-90
- 신체검사 체격등위 판정 11-103
- 현역복무지원과 종전의 징병처분의 효력 2-95
- 국방부 내규인 신체검사규칙의 성격 및 효력 16-77
- 개정된 징병검사 등 검사규칙의 적용시점 21-257
-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될 신체검사규칙 23-4
- 군병원정밀신검 의뢰시 군병원장의 신체등위판정권한 24-97
- 장병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자 재검 25-84
- 병역법 제17조 제1항의 입영신체검사 기한 내에 병역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정밀신체검사까지 종료되어야 하는지 33-107

다. 현역입영

- 군대의 영의 개념 2-104
- 현역병의 사법연수원 입교 가능 여부 15-163
- 현역 복무기간 연장 요건으로서의 전시·사변의 개념 2-81
- 복무기간 기산시기 1-143

- 입·제대 일자의 군복무기간 산입 15-132
- 2중병적자의 복무기간 합산 2-112
- 방위병 복무기간의 현역병 복무기간 산입 15-133
- 사관학교 2년 중퇴자의 현역 복무기간 계산 3-122
- 사관학교 후보생 교육기간의 복무기간 환산 여부 8-103
- 현역병 입영처분의 철회가능여부 17-69
- 제2국민병으로 소집되었다가 현역으로 편입된 자의 병적상 입대일자 19-87
- 금오공고 퇴교자의 미회수 변상장학금의 회수책임 및 소멸시효 22-39
- 병역법시행령 제28조가 병역법 제19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22-40
- 병무비리로 인한 보충역처분 취소시 복무기간 24-100
- 보충역 입영대상자가 현역복무를 하고 있는 경우 현역병 병역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25-82
- 입영신체검사 후 의무사관후보생의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7-109

라. 소 집

- 보충역과 균형법의 적용 6-87
- 보충역의 방위소집 활용 10-86
- 단순 노무제공을 위한 방위소집 15-64
- 방위병 파견에 관한 질의 13-60, 14-31, 16-86
- 방위병의 개인화기 15-144
- 방위병에 대한 신체검사와 소집해제 14-72
- 해외이주가 허가된 자의 방위소집해제 14-74
- 집행유예를 받은 자의 전가족 해외이주와 방위소집해제 16-90
- 방위병의 재영복무 15-161
- 부상방위병의 가료비 지급 16-87
- 근무연습 소집자에 대한 조발시행 여부 10-90
- 근무연습 소집의 근거법규 15-155
- 근무소집중 구속된 자의 근무소집 해제 1-135
- 근무소집 기피자의 재소집 3-119
- 근무소집 연기사유 5-75
- 근무 또는 연습소집중에 있는 자를 대간첩작전에 종사시킬 수 있는지 여부 5-90
- 외항선 선원의 근무 및 연습소집 면제 7-72
- 근무연습 소집과 휴직 등의 관계 15-152
- 전문분야 예비역 장교의 소집 11-49
- 전시 등에 있어서 법무장교 소집 7-83
- 특수직 위관 충원 5-87
- ROTC 훈련생의 보충소집 6-65

- 예비역 하사관의 전시 보충소집 15-134
- 전시 현역복무를 마친 병의 충원소집 8-102
- 전투경찰 순경으로 임용되지 못한 귀휴병의 소집 10-82
- 중복된 신분의 정정방법 및 교육소집을 병역법에 의한 소집으로 볼 것인지 여부 13-24
- 방위소집 면제자에 대한 전시 방위소집 15-147
- 예비역 장교후보생 신분으로 군병과학교에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 15-62
- 근무연습 소집에 있어서 "입영기일"의 의미 16-81
- 교육소집 불참과 보충교육 16-82
- 긴급사태 발생시 동원령 선포 이전의 소집 및 동원 16-83
-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방위병의 구속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17-72
- 방위병의 취업가능 여부 17-75
- 방위소집중인 자의 특수전문요원 교육과정 편입 18-105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사유 17-82
- 흠 있는 입양과 보충역 편입처분의 효력 17-83
- 전시근무소집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처우기준 17-86
- 국방부 근무 방위병의 보호방위병 소집해제 21-253
- 면사무소에 파견근무중인 방위병에 대한 지휘·감독권 21-265
- 방위제도 폐지 후의 장기대기 방위병에 대한 방위소집 면제처분 21-276
- 보충역이 훈련소집 중 공무상 입원시 소집훈련기간에 포함 여부 29-34

마. 병역의무의 종료

- 35세 초과된 입영기피자의 징병의무 7-94
- 단기복무하사에서 중사로 특진된 자의 전역후 예비역 복무기간 8-95
- 병으로 입영하여 하사관으로 특진된 자의 예비역 복무기간 15-182
- 현역병의 구속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17-73
- 연령정년규정의 개정과 예비역 병역의무 종료시점 18-100
- 단기사관학교에서 퇴교된 자의 교육기간과 병의 복무기간 19-89
- 장교, 준사관, 하사관이 6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적에서 제적되는지 여부 19-94
- 제한연령초과로 인한 의무사관후보생의 제적 20-243
- 장기근무이탈자의 군인 신분 보유 여부 22-41
- 전시특례상의 병역의무 종료시점 24-103
-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투경찰의 제2국민역 편입 가능 여부 24-104

바. 병역의무부과의 특례

- 전투경찰대원의 신분 10-79

- 전투경찰대원 추천자의 기초군사훈련중의 신분 15-92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 제3항 "징집이 결정된 자"의 의의 13-147
- 해양경찰대원의 의병 전역 15-158
- 석탄광에 종사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보충역 편입 11-101
- 군수업체 지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병역특례의 효과 13-61
- 특례보충역의 해외이주 15-154
- 방위병의 소집기피나 복무중 이탈이 복무기간 단축혜택에 미치는 영향 15-160
- G.P 근무병의 복무기간 단축의 절차 15-165
- 사관학교 중퇴자의 사관학교 재학기간의 성격 19-97
- 장남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분가한 경우의 병역면제 19-99
- 1년 이상 국내 체재한 국외 영주권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등 22-42
- 가족 이민과 공익 근무 요원 소집해제 32-45
-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처분변경시 적용 부령 25-78
-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32-86

사.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 재학자 징집연기 6-75
- 휴학자의 복학과 징집연기 1-137
- 2인 이상 전사로 인한 징집연기 6-57
- 가사에 의한 징집연기 7-98
- 가사사정으로 인한 징집연기 및 복무단축 5-77, 9-83
- 부양능력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 6-67
- 병역미필자로서 자수 신고한 자의 징집연기 7-97
- 예비역 무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자의 징병검사 연기 현역 입영 9-95, 8-98
- 예비역 무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된 장의 징·소집 연기 9-86
-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입영 연기조치의 위법 여부 2-111
- 병역법상 독자의 해석 2-113, 5-63, 5-68, 5-70, 5-86, 6-89, 7-93
- 부재신고와 독자여부 16-89
- 법의 부자와 현역 복무기간 단축 3-127
- 무죄판결과 복무기간 단축 혜택 제한 5-82
- 독자·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인한 현역기간 단축 7-70, 7-77, 7-78
-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한 예비역 하사관의 전역 15-137
- 전투경찰 순경의 복무기간 단축 12-107
- 방위소집해제 사유로서의 전가족 해외 이주 15-141
- 방위소집해제 사유로서의 생계유지 곤란 15-143
- 병역법상 전 가족의 정의 7-101, 11-99

- 파월사병의 의가사 전역 3-123
- 예비역 무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면제 12-120
- 군기술 위탁생 출신 하사관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면제 14-66
- 2대 이상 독자의 방위소집 면제 여부 6-59
- 특수전역 6-60, 6-64, 7-92, 8-99, 9-93
- 현역병의 특수전역시 역정 판정의 증거법 7-80
- 현역장교 병적 편입자의 가사사정에 의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15-148
- 방위병의 소집기피나 복무중 이탈이 복무기간 단축혜택에 미치는 영향 15-160
- G.P근무병의 복무기간 단축의 절차 15-165
- 사관학교중퇴자의 사관학교 재학기간의 성격 19-97
- 장남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분가한 경우의 병역 면제 19-99
-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 29-33

아. 특 전

- 재영기간중 직장 보장 1-132
- 입영기피후 자수한 자의 고용원 임명 2-84
- 병역미필자의 해고 2-91
-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기피한 자의 장교 임용문제 3-118
- 병역의무자의 공무원 임용 6-56
- 1928년 출생의 병역미필자에 대해 취직제한 등 2-89
- 군기술위탁생의 임용과 휴직기간 15-156
- 학적보유가 가능한 복무형태 15-157
- 은행원 승진시험자격과 병역법 제76조(불리한 처우금지)와의 관계 7-30
- 병역기피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처벌 9-88
- 병역기피로 인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임용제한 11-108
- 병역법상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처분 금지 13-64
- 군복무후 복학보장 18-109
- 초등학교 교원으로서 의무종사와 권익보장 18-110
- 교사경력산정시 병 및 하사의 복무기간 합산 20-60

자. 병무행정

- 병역미필자 해외출국시 신체검사 기준 7-84
- 행방불명자 처리 1-133, 10-88, 12-126
- 군번부여 전 사망자의 처리 2-85
- 병무행정 수행상 필요한 경찰서장의 협조의무 3-125
- 병적확인서 발급 6-66
- 병역의무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 6-83

- 병역기피사실 확인 7-66
- 병무심사위원회 성격 7-88
- 특수현역면제자의 증명서 발급 8-96
- 무관후보생의 해외여행 13-59
- 병역확인 2-86
- 지정의료시설 운영 5-81
- 징병처분변경원 처리 7-91
- 장교에 대한 6년 이상 형 선고시 병적 18-79
- 수개선고형의 형기합계가 6년 이상인 경우의 병적 18-81
- 집행유예 선고받은 현역병의 보충역 편입 20-237
- 국외여행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7-90
- 병역법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의 효력 20-248
- 예·체능분야의 특기자의 국외여행 허가 19-96
- 국외이주로 보충역 편입되었다가 복무중인 자에 대한 보충역 재편입 20-245
- 국외이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 및 재취소 21-262
- 출국, 입국행위를 되풀이한 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20-246
- 국외여행중에 있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보증인
(모에 대한 친생자 관계에 대하여 소송중)의 대체가능 여부 22-43
- 병역법시행령상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의 의미 22-44
-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위해 개별입영 도중 사망한 사람의 신분 23-46
- 군종장교 임용 제한에 따른 법적 문제 25-76
- 병역법 부칙 제5항(구 경과조치의 적용대상) 26-118
- 보충역 교육소집기간 조정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27-111
- 무관후보생의 전역처분 28-98
- 공군사관생도 심신장애전역 판단 기준 28-101
- 신체검사시(-에이즈검사-) 동의 여부 28-102
- 병무청의 과오로 현역병 입대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30-111
- 입영 신체검사 시 귀가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급여지급을 할 수 있는지 34-142

차. 벌칙

- 대리로 입대한 자의 신분 및 처벌 1-146, 7-65, 9-92
- 병역법상의 과태료 1-194
- 국외여행 병역의무자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2-87
- 고시합격자의 징·소집 불응에 대한 고발조치 2-109
- 입영기피죄 성립여부 4-70
- 병역기피자 공소시효 5-84
- 수호의 징병검사 불응과 죄수 5-91

- 병역법위반죄(징병검사기피 및 입영기피)의 성립여부 6-72
- 미귀국 병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 11-113
- 병역법상의 과태료 결손처분 14-75
- 35세까지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한 고발 6-76
- 재복무지원자의 입영불응 5-72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중국적자의 미귀국시 처벌 18-114
-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후 재복무통지에 불응한 자의 처벌 21-279
- 병역법 제90조 제1항의 ‘지정기일’의 의미 22-45
-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질의 24-106
- 귀국보증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가능한지 여부 25-73
- 모집에 의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권 행사 여부 25-80

8. 예비군

가. 임무

- 예비군 지원자의 복무의무 6-83, 17-93
- 직장예비군연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김포공항 경비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19-110
-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예비군 업무 수행 가능성 31-122

나. 조직과 편성

- 향토예비군 편성대상자의 연령계산법 8-93
- 직장향토예비군 편성대상자의 범위 9-91
- 향토예비군 편성대상의 범위 15-177
- 수형인에 대한 향토예비군 편성과 대원신고의무 15-189
- 수입군부대장의 예비군지휘관 임명행위의 효력 16-94
- 장교로 임용된 예비역 하사관의 직책변동과 신분 16-96
- 예비군 지휘관 임명행위의 효력 18-119
- 직장예비군부대장의 보직발령순위 20-260
- 직장예비군 지휘관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경우 해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19-105
- 직장예비군 부여단장으로 임명된 자에 대한 퇴직규정 적용 20-263
-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정년과 직원정년의 관계 20-265
- 향토예비군설치법상 거주지의 의미 20-257
- 서울시 지하철 직장예비군 부대편성 20-259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29-7
-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 가능한지 여부 29-8
-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정년 29-10
- 직장예비군의 통합 편성 29-18
-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동일계열 전보 29-20
- 통합직장예비군부대 편성 및 본부직원의 소속 31-36
- 퇴역여군의 역종변경 가능성 31-161
- 예비군지휘관의 예비군대원 해당성 32-53
- 전시 전방군단 향방예비군 운용 32-83
- 예비군 편성 및 훈련 부과의 경우 육군 또는 공군 중 1개를 예비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지 34-144

다. 동원

- 향토예비군 동원절차 5-64
- 향토예비군 동원 6-85
- 예비군동원 대상자 6-88
- 관할 육군사단장의 명의를 아닌 예하단위 부대장이 발행한 교육훈련소집통지서의 효력 9-78
- 향토예비군 대원의 동원유예사유 발생시 그 횟수를 연 2회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9-80
- 군부대의 군속에게 예비군동원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할수 있는지 여부 9-82
-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자의 범위 9-87
- 국외 영주권을 얻은 자(병역면제처분자)의 예비군 편성 9-87
-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이(경찰서 관할하의) 동원훈련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12-142
- 동원훈련 보류대상자의 범위 15-179, 15-180
- 형집행정지와 예비군대원의 동원 및 훈련연기 사유 15-190
-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절차 15-192
- 향토예비군 동원 요건 16-93
- 병력동원훈련 소집불참자에 대한 훈련재소집 20-256
-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보류 24-108
- 작전동원업무의 이관 27-113
- 동원보류 대상자 32-92

라. 훈련

- 직장에 고용된 향토예비군 대원의 교육훈련 시간과 고용기관의 근무시간 9-73
-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여부 9-139
- 형집행정지중인 자의 예비군교육훈련부과 17-94
- 국민투표기간중의 향토예비군훈련 17-96, 18-122
- 예비군훈련면제기간중의 회사출근의무 17-97
- 직장예비군에 대한 비근무시간의 교육훈련 17-98
- 국적회복자에 대한 국적상실전 훈련의무부과 18-121
- 소집면제된 보충역에 대한 훈련과 병역법상의 교육소집 19-112
- 사범연수생이 방첩보류대상인지 여부 31-77

마. 소집통지서

- 예비군 대원의 교육소집을 위한 소집통지서 발부권자 8-100
- 예비군훈련 교육소집통지서 발급의 위임 16-95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 2 제3항의 '거주지 이동'의 의미 19-108
-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앱)을 통한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 발송 31-108

바. 무장

- 어선단 예비군의 무장 7-67
- 예비군이 무기를 휴대하여 국가중요산업시설을 경비할 수 있는지 여부 12-137

사. 원호 및 가료

- 임무수행중인 향토예비군 대원에 대한 의료기관 지정 11-109
- 동원 또는 훈련중이 아닌 예비군의 사고에 대한 보상 16-100
- 사망한 대리훈련자가 원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6-64
- 예비군대원이 스스로 부단함 가료비에 대한 보상여부 17-102
- 향토예비군 대원에 대한 가료비의 부담 17-105
- 향토예비군이 임무수행중 부상을 입은 경우의 비용부담 19-107
- 예비군중대장이 교육중 상이를 입은 경우 보훈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7-107
- 전투경찰 순경으로 예비역에 편입된 자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원자격 유무 17-178
- 예비군 재해보상금 지급 절차 30-117
- 예비군훈련 중 부상 또는 사망에 따른 보상금의 각 지급기관 31-189

아. 직장보장

- 비번시간에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고, 당일 근무를 계속시키는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9-81, 12-139
- 고용주의 동원훈련소집중에 있는 향토예비군 대원에 대한 일당 지급 10-95
- 동원 또는 훈련의 경우 임금 및 직장 보장 13-87
- 일용인부도 피고용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15-184
- 예비군훈련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불지급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여부 16-99
- 직장예비군대원의 입원가료기간중 임금지급여부 17-100
- 예비군훈련 중 부상 후 자의로 민간병원 진료받은 경우
휴업보상금 지급 가부 31-167
- 「예비군법」 제10조 직장보장 32-90

자. 실비변상

- 집체교육중인 자의 임금지불 여부 6-55
- 일일노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으로 인하여 결근한 경우 임금지급여하 13-88
- 비근무시간중의 예비군교육훈련과 임금지급 18-123

차. 병역법과의 관계

- 방위소집중에 있는 자에 대한 향토예비군 훈련실시 9-71, 10-96

카. 권한의 위임

- 예비군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임 13-91
- 무기, 탄약 등 관리유지권 위임 가능 여부 14-89

타. 벌칙

- 향토예비군 훈련 불응자에 대한 처벌 9-85, 11-117
- 향토예비군의 거주지 이동 불신고에 대한 처벌 13-89
- 교육시 예비군대원의 복장위반과 형사처벌 16-97
- 직장예비군대원이 거주지 동장에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가능 여부 17-108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수령거절 행위의 처벌 근거 17-109
- 훈련을 받지 아니한 향토예비군대원의 처벌 18-124
- 동원훈련중 군부대를 이탈한 예비군에 대한 처벌 21-274
-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훈련통지서 전달의 효력 24-112

파. 기타

- 전사한 향토예비군의 고진급 및 제적 6-81
- 예비군 대원의 교육소집을 위한 소집통지서 발부권자 8-100
- 향토예비군 중대자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입후보시 사퇴여부 9-140
- 향토예비군 중대장의 퇴직금 청구 15-181
-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성질 15-186
- 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협의회의와의 관계 24-111
- 향방동원된 예비군을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25-85
-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육성 지원 관련 감사의 주제 31-57
- 직장예비군대대장의 복무종료(근속기간, 정년) 관련 31-142
- 예비역 간부 진급에 있어 퇴역 연령 기준일 31-159
- 전시 예비역 간부의 병역의무 연장 32-31
- 직장에 설치된 예비군부대의 참모는 예비군법 제12조에 따른 정치운동의 대상인지 33-88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33-88

9. 학생군사교육

- 학적보유자의 인사처리 10-76
- 학생군사교육 이수자 재영기간 단축 10-77
-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하여 임관되는 예비역 장교의 임용시기 연장 10-78
- 학생군사교육과 방위병 및 전투경찰대원 복무단축 15-131
- 전투해경요원의 귀휴기간에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9조 제3항의 재영기간단축적용 여부 12-112
- 교육법시행령 제150조 제3항의 소급적용 12-114
-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2부에 재학중인 학생의 예비역 장교후보생 지원 및 선발 12-117
- 일반군사교육 대상자 중 심신장애자의 처리 13-29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동 시행규칙 개정(학적변동학생처리) 이후 문제점 12-128
- 일반군사교육 학점 취득 12-131, 13-111
- 일반군사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제출처 13-112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9조 복무단축 기간 13-113
- 학생군사교육의 채수강 13-114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 소정의 이 영 시행당시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자의 의의 14-113
- 예비 역무원의 보충소집 연령 14-115

- 군의료시설이 학생군사교육령의 시행규칙 소정의 의료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14-115
- 예비역 무관후보생이 학생군사교육을 이수한 후 현역 장교로 임용될 경우 복무기간의 단축대상이 되는지 여부 14-118
- 사면으로 복학된 자의 일반군사교육 이수자로서의 복무기간 단축혜택 15-218
- 군사원호대상자의 범위 15-220
- 군사교육 이탈자의 범위 15-222
- 정확처분과 예비역 무관후보생의 병적관계 15-223
- 학군무관후보생 교육용 무기의 관리·수송책임자 20-145
- 여학생 ROTC 장교 선발시 의무복무기간 25-75
- 군장학생 선발취소 25-129
- 여자 학군후보생이 장교로 의무복무하는 기간 동안 교원으로 임용을 유예하거나 휴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30-89
- 공군장학생 출신 조종장교의 장학금 반납 여부 30-114
- 군장학생과 군사교육 31-25
- 군장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에 군사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32-120
-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인지 여부 33-31

10. 연금

가. 총칙

- 전몰군경의 정의 1-115
-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범위 등 1-125
- 순직해당 여부 2-65
- 군인연금법상 공무원의 개념 8-73, 9-57, 3-104
- 기여금 반환의 이자계산 6-49
- 향토예비군의 지역중대장, 임시고용원의 군인연금 수급권 8-75
- 애국청년단원의 임무수행중 사망도 전사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8-89
-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제정의 성질 15-124
- 공무원재직기간의 군복무기간 통산여부 17-113
-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군복무기간 17-114
- 하사관후보생 교육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18-129
- 미군부대 고용원 근무경력과 공무원 경력 19-46
- 전공사상처리기준 17-120
- 장관급 장교에 대한 전·공상심사위원회 구성 20-107
- 파면되어 제적된 자의 공상해당 여부 18-134

- 불명예 전역자의 전공상 해당여부 18-136
- 전상해당자의 전역후 사망시 전몰해당여부 18-138
- 군인연금법의 적용시기 19-117
- 양 부모도 군인연금법상 직계존속인지 여부 19-121
- 사우디주재 무관과 전투중사기간 19-122
- 추서진급자의 보수월액결정 20-125
- 군인연금법의 개정과 휴직 또는 정직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21-91
- 군인연금법상 유족인 자로서 인정받기 위한 폐질상태의 기준시점 21-127
- PKO 파견요원의 근무기간과 전투에 종사한 기간 21-135
- 하사관의 준사관후보생 교육기간중 기여금을 징수하였는바, 그 기간은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지 22-27
- 퇴역연금 지급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4년이
경과된자의 상이연금 청구권 인정 여부 23-40
-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24-62
- 국정상실자의 특례급여청구권에 관한 질의 24-66
- 소급기여금 사후징수에 관한 질의 24-71
- 임시계급진급자의 퇴직급여 산정기준 24-77
- 군인연금법상 유족승계 가능 여부 25-60
-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계산 25-61
- 「1959년12월31일이전에 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의
적용대상자 26-87
- 국가패소에 따른 재처분시 소멸시효 주장 가부 31-169

나. 급여

- 연금소급지급 11-83
- 연금수급권의 압류 1-102, 3-106
- 군인연금법상 구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수급권의 시효 1-99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의 공무상 질병, 부상 및 사망 1-104
- 연금법 중 재정업무규정 2-74
- 유족이 없는 군인사망급여금의 사용 9-38
- 군인연금 환불에 있어서의 이자가산 여부 13-52
- 강등된 자가 다시 진급된 경우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계산 1-98
- 상사로부터 준위로 진급과 동시에 전역된 자의 연금지급 1-100
- 군인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 10-67, 11-94
- 무죄선고와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 계산 15-110
- 무관후보생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 산입 가능 여부 13-47, 5-59
- 연금의 지급액에 변경이 생긴 경우의 처리 18-130

- 6·25 당시 예비역 사관으로 복무한 자의 복무기간 산정 21-123
- 공상관련 비보험급여부분 지급방안 24-64
- 군인 연금 급여종류 변경 신청 31-192

다. 퇴역연금

-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2-74
- 재심판결에 의하여 무죄확정된 자의 퇴직연금수령권 여하 13-51
- 30년 이상 복무자의 퇴역연금 지급률 15-122
- 연금지급정지기간으로 지정되기 전에 지급받은 퇴역연금을 지정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19-119
- 연구용역비를 지급받는 자에 대한 퇴역연금 지급정지 20-118
- 실종선고취소된 자에 대한 퇴역연금 지급여부 22-28
- 퇴역연금의 재정시 처분청의 잘못으로 복무기간을 일부 누락시킨 경우 직권정정할 수 없음 22-29
- 군인연금수령자의 유죄확정시 기지급연금의 환수가부 22-30
- 퇴역연금 소급지급시 이자가산여부 22-31
- 명예전역수당 산정시 연령정년 또는 계급정년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5-63
- 퇴직 후 소득 발생자의 연금정산 28-135

라. 퇴직일시금

- 월의 중간에 진급과 동시 전역된 경우 퇴직일시금 지급 1-113
- 퇴직일시금 지급 해당여부 등 2-61
-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환경고용원의 퇴직금 산정 21-98
- 명예전역수당 지급시 현역정년의 개념 24-68
- 원계급복귀 전역자의 퇴직일시금에 관한 질의 24-75
- 진급일자에 전역한 자의 최종보수월액 결정 29-42

마. 상이연금

- 전상자가 아닌 공상자의 상이군인연금 해당 여부 1-122
- 상이연금수급권의 소멸 및 부활 17-115
- 퇴직일시금 지급받은 자에 대한 상이연금지급 18-132
- 하사관후보생 교육중 상이를 입고 임용된 자가 상이연금수급권자가 되는지 여부 22-32
- 군인연금법상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의 의미 24-57
- 상이연금지급의 판단 기준시점 24-58
- 상이연금수급권이 소멸된자가 폐질 정도가 악화된 경우 상이등급개정신청을 하여

다시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5-49
○ 상이등급 개정 신청시 반드시 상이연금을 지급받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25-66
○ 만기전역자의 상이연금청구	27-128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 상이연금수급권의 발생 여부	30-120
○ 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신체검사 실시한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	31-184

바. 유족급여

○ 유족연금의 상계가능성	13-48
○ 순직 후 지급받을 연금·상여금·조의금 등에 대한 모와 처의 상속비율	12-84
○ 유족 우선순위	12-103
○ 친생모가 군인연금법상 유족이 되는지 여부	13-50
○ 호적상의 처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간의 유족연금 수급권 경합	8-80, 13-46
○ 자를 출산한 전사자 약혼녀의 사실상의 혼인관계	9-58
○ 유족연금 지급	2-64
○ 군인연금법상의 연금기간 기산일 및 급여제한규정 적용	2-67
○ 중사로 추서된 순직한 단기하사의 유족연금 지급	9-39
○ ROTC 피교육중 순직한 자를 장교로 고진급시킨 경우 유족연금지급 가능 여부	13-55
○ 유족일시금 지급	7-57
○ 사망원인 정정의 경우 유족연금 지급 여부	17-116
○ 순직자의 모가 친가로 복적한 경우의 유족연금 지급 여부	17-118
○ 입양군인의 생조모 사망과 사망조위금의 지급	19-123
○ 입양된 군인의 생부사망시 사망조위금 지급	20-120
○ 입양된 군인의 친생모가 군인연금법상 유족인지 여부	21-108
○ 사망군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전액수령한 보상금의 환수	20-121
○ 제적된 군인의 가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20-123
○ 친가복적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20-127
○ 유족연금수령권자가 유족일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1-138
○ 군인과 그 배우자 등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의 사망조위금 지급	21-132
○ 민법개정과 계모의 유족연금청구권	22-33
○ 유족연금청구권의 시효	24-60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25-41
○ 국적상실자의 유족연금 청구권 인정 여부	25-68
○ 군인연금법상의 유족	26-90
○ 대법원판결과 상이한 유족연금지급결정의 취소여부	26-106

○ 계모에 대한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진 29-43

사. 재해보상금

○ 군인재해보상금 지급 대상 15-125

○ 교육 및 방위소집자에 대한 재해보상 가능 여부 15-120

○ 군인재해보상금 지급요건 해당여부 3-110

○ 군인재해보상규정 제6조 제2항의 해석 13-117

○ 의병전역절차 진행중 정년전역하는 경우의 장애보상금 지급여부 17-119

○ 장기제공자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 20-113

○ 병역동원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상금의 지급사무는 국가보훈처에 있음 22-34

○ 명예전역 후 장애보상금 지급청구 27-131

○ 의병전역자 정상전역시 장애보상금 지급 여부 29-41

○ 재심의로 공상판정 받은 자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 31-171

○ 군인연금법 제32조(장애보상금)의 요건에 전환복무를 위하여 군 훈련기관에 입소하여 훈련 중 부상을 입고,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되어 전환된자가 포함되는 지 33-111

○ 군인재해보상법 부칙 제18조 제1항의 '이 법 시행전에 장애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의미 34-113

아. 급여의 제한

○ 전역 후 공무원으로 취업하였다가 퇴직한 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 10-66

○ 연금수급권자가 공무원으로 취업된 경우 동연금 지급 1-107

○ 이사 대우 이상의 촉탁 또는 고문으로 임명된 경우 연금 지급 정지분 15-107

○ 잡급직원 채용과 퇴직연금 수급권과의 관계 15-119

○ 전사편찬위원이나 촉탁이 된 경우의 연금지급 제한 여부 15-99

○ 군인연금 지급제한 대상기관 15-101, 15-111

○ 퇴직한 군인이 다시 군인 또는 공무원이 되었을 때의 연금처리 1-119

○ 군인퇴역연금의 지급정지(향토예비군 중대장 임용) 6-50

○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정지된 자의 연금 지급 1-112

○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 등 1-116

○ 사상피의자로서 기소중 사망한 자의 군인사망급여금법의 적용 1-121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연금지급 2-67

○ 제적자의 연금 수급(선고유예판결) 7-56

○ 군복무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급여제한 21-115

○ 복무중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만료 전에 출감한 자의 연금지급 9-60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어 복무한 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 10-63

- 사병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하사로서 계속 근무하는 자에 대한 연금지급 10-65
- 연금지급의 금지 또는 제한사유 15-118
- 형사사건으로 제적된 장교의 연금지급 11-85
- 연금지급 및 정지 11-87, 12-97
- 군인연금지급 제한기관 14-45
- 전쟁기념사업회의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해당 여부 24-82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용승계된 자가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대상인지 여부 24-84
- 연금지급정지 위헌결정에 따른 법적 조치 25-65
- 군인연금법 제19조의3 26-78
- 연금지급정지의 기준이 되는 형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 26-92
- 장애보상금 지연청구 시 지급가부 27-133
- 전역 후 퇴직급여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급여지급 여부 30-136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판단기준 31-194
-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퇴직연금 제한시점 33-128

자. 기금의 조성

- 군인연금기금으로 매입한 재상의 처분 14-55
- 공무원 연금법상의 기여금 납부 등 1-118

차. 보칙

- 퇴역연금지급에 있어서의 타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1-95
-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구 경과조치의 기준일) 26-82

카. 기타

- 퇴역연금수급자가 인사소청으로 전역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지급되었던
급여의 회수 1-103
-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제정 1-109
- 퇴직자에 대한 소급 연금제정변경처분의 가부 21-129
- 퇴역연금수급권자 사망했을 시 이미 발생된 수급권의 승계 1-110
- 장기입원사병에 대한 전역특별급여금 지급 1-114
- 학도의용군과 연금법 적용 1-123
-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한 행위의 한계 1-124
- 중사 이상으로서 2년 미만에 전역한 자 등에 대한 연금 지급 2-72
- 군인연금기금의 예탁 15-126

- 제적후 복직된 자의 연금지급 15-69
- 제적된 군인의 공무원 재임용시 반환하여야 할 퇴직급여 21-93
- 복무연수를 채우지 못한 단기하사의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6-63
- 명예퇴직수당 압류 가능성 24-70
-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에 대한 퇴직금 및 재직기간 합산 24-79
- 군인연금법상 구상권의 소멸시효 25-47
- 명예전역전 사망자에 대한 명예전역수당지급여부 25-51
- 전투근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정 26-75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전투근무기간의 계산) 관련 27-136
- 상이연금청구에 대한 잘못된 각하 27-139
- 군인복지기금법에 의한 학자금 대부분을 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대부금을 회수 가부 30-140
-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 국직기관 전문계약군무원 포함 여부 31-204
- 대출 협약서와 급여 수급계좌 선택권 32-124
-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공무원 보수규정 등 적용가부 33-120
- 국방부로부터 파견 명령을 받은 현역 연구위원이 연구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이
군인보수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지 33-120

11. 보훈

가. 총칙

- 민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군사원호보상 및 군인재해보상과의
관계 15-104
-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시행에 있어서 국방부장관과 보훈처장간에
생기는 책임한계 및 감독권행사 3-24
- 국가유공자 요건해당사실확인서의 효력 20-109
-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25-55
- 서해교전 중 행방불명된 자의 전사일자 결정 25-59
-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보상금 수령권자 29-36
- 특수임무수행자 유족 결정 29-37
- 사망한 국군포로의 상속인 29-92
-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한 인용 재결에 따른 조치 31-165

나. 대상 및 사유

-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된 자"의 의미 15-95
- ROTC 대학생 야영훈련중 부상자 대우 5-57
- 만기전역자가 군복무 당시의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재발한 경우의 군사원호보상 7-46, 9-62
- 군인사법상의 전공상(41조) 7-47, 2-94
- 공상의 개념 및 공사상의 구분권자 15-102
- 동원된 예비군의 가료 7-49
- 공상범위 8-22
- 헌병의 구타로 사망한 피의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8-77
- 입영 전의 질병으로 인한 경우도 전공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8-41
- 과월재해보상금 수급권 8-78
- 현역병 징집시 입영부대 도착전 집결지에서 사격중 사망한 자에
대한 군사원호보상법 적용 8-85
- 군사원호보상법상 공무상 질병의 발병원인 9-55
- 향토예비군 중대장이 귀가 후 신경성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원호대상자 해당 여부 9-67
- 주월한국군 재해급여금 지급에 있어서 심신장애의 원인 9-66
- 보충역으로서 군부대에서 방위소집교육중 사망한 자의 원호 10-68
- 연습훈련중 부상한 향토예비군이 응급치료후 귀가했으나
이후 재발한 경우 치료혜택의 가능 여부 10-97
- 예비역 무관후보생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및 현역병적 편입 15-97
- 방위소집된 자가 전상 등 사유로 특수전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경우 군인재해보상금 지급 11-91
- 근무연습중(예비역) 이병, 질병, 사망, 재해의 경우
군인연금법이나 재해보상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 12-81
- 장기적인 질병이 공무수행중 발생하였는바 여부의 판단기준 13-114, 14-50
- 전공상으로 인하여 의병 전역되어야 할 자가 행정착오 등을 이유로
만기 제대되었을 때 상이군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4-69
- 대오를 이탈한 향토예비군대원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한 원호가능 여부 14-91
- 국토건설단 건설원이 상이를 입은 경우 원호가능 여부 15-115
- 재학생의 입영중 상이에 대한 보상 16-65
- 공상해당자의 사망시 순직 해당 여부 18-140
- 공무중 발생한 질환으로 사망시 순직해당 여부 18-141
- 공무이탈상태에서 입은 상해의 공상해당 여부 18-142
- 군번 없는 참전용사에 대한 종군기장 수여 20-128
- 서해 훼리호 사고로 사망한 군인 및 군무원의 순직처리 21-87

- 동원훈련중 조기 귀가하다가 사망한 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21-89
- 파면·수형 등의 사유로 전역한 군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21-141
- 6·25전쟁중 징용되어 사망한 철도종사원의 전사자 해당 여부 24-92
- 병 사망위로금 지급 가부 29-39
- 10·27법난으로 상이를 입은 자 중 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 ... 29-91
- 학군사관후보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통전공사상 심사대상이 되는지 34-53

다. 급 여

- 파월전사자의 사망급여금 지급 6-47, 7-52
- 사망급여금 지급 순위 7-59
- 사관생도 사망급여금 지급기준 8-83
- 군인사망급여금 지급대상자 8-87, 10-71, 31-174
- 주월한국군 재해보상금 차액지급 10-70
- 장교가 군법회의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원호혜택 여부 12-90
- 재해보상금지급대상 예정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있어서의
보상금의 지급 14-48
- 전역 전의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등의 상태에 있는 자의
보상방법 여하 14-52
-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자의
군인사망급여금 지급 대상 여부 31-182

라. 기타

- 만기전역자로서 입원중인 원호대상자의 처리 15-113
- 귀순하여 현역에 복무중인 장교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상의 원호대상자 선정 여부 11-89
- 독립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제4조의 2와 동법 부칙
제2조와의 관계 12-88
- 월남귀순자가 5년 이내 원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12-99
- 방위소집 필한 자가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13-54
-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상의 제대군인 15-109
- 군무이탈자와 군사원호 혜택 및 병적처리 15-112
- 상이기장 수여사실에 대한 확인서 발급 16-146
-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상 귀순용사의 범위 16-147
- 현역용 의약품을 월남귀순용사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6-153
- 예비역에 대한 군병원 진료 18-235
-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에 대한 조세감면 20-130

- 순직군인의 배우자를 무시험에 의해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22-35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23-39
- 상근예비역에 대한 진료 제공 범위 24-40
- 군인보험 보험료중 국고보조금의 성격 및 용도 24-86
- 군부대의 민간에 대한 의료 지원시 법적 문제 25-43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중 가료비를 교육소집훈련을 실시한 군부대장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5-45
- 행정심판 재결내용 및 효과 26-110
- 위패봉안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28-115
- 한국전쟁 중 미군 측에 귀순하였다가 반공포로로 석방된 자의
참전유공자예우법 적용 여부 31-176
- 징병검사장에서 유전자 시료 채취를 시행함이 타당한지 여부 31-197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유족의 판단기준 및 시점 33-115
- 부대과건 민간검사의 군 병원 진료가능여부 등 33-123
-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체상의 장애를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33-131
- 전역자에 대한 퇴거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33-137

12. 국가배상·보상

가. 배상책임

-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이 기지공사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1-198
- 국가기관 상호간의 손해배상문제에 있어서 국가배상법의 적용 타당성 여부 3-29
-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액 3-38
- 배상책임 한계 4-94, 4-113, 5-147, 5-152
- 배상금 지급 결정 4-98
- 국가배상책임 유무 4-99, 4-103, 4-110, 5-120, 5-124, 5-141, 5-150
- 배상문제 5-119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중에 향토예비군중대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15-227
- 운동선수 재해 5-126
-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의 손해배상 문제 5-127
- 국가배상책임 유무 및 과실정도 6-128
- 공무원의 직무 집행 6-130
- 외국군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7-118
- 제3자(피해자)를 대신하여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8-160
- 국가배상법 적용 대상 10-159
- 정책지정 광산으로 국가안보상 개방중지를 조치한 경우

등에 있어서 광산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 거부	12-169
○ 소집중인 방위병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 신청 가능 여부	12-175
○ 군병원에서 수술한 자가 민간병원에서 동일병인에 대하여 재수술을 받은 경우 청구권의 전부	14-43
○ 민간인이 군용기 탑승시 손해배상책임	19-205
○ 군정비공장의 정비인건비와 손해배상	19-207
○ 열차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행사	20-114
○ 국방부 일반직에 대한 통근버스지원과 사고처리	20-116
○ 국가배상금의 분리 또는 사전지급 가능 여부	24-189

나. 배상기준

○ 월급여액 없을 시 배상액 산정	4-89
○ 입원치료중 사망하였을 경우 요양비 산정	4-90, 4-92
○ 유족배상 및 장애배상액 산정	4-95, 4-109, 5-133, 5-143, 5-146, 5-156
○ 배상신청유무와 배상금 심의결정범위	5-129
○ 배상지급 신청자의 범위	5-140
○ 대체임금 조사방법	15-234
○ 위자료 기준액	5-148
○ 위자료 지급대상	6-123
○ 병원당국의 요양비 청구	6-126
○ 피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국가배상금 지급문제	6-134
○ 피해보상금 지급	7-113
○ 배상금(사용료) 지불	10-135
○ 3개 부위 이상 신체장애자의 장애정도 평가방법	13-119
○ 장례비인용	14-123
○ 군차량사고의 피해자가 운전병과 합의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 여부	14-127
○ 배상결정 후의 장해배상신청	16-141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보상	32-227

다. 외국인에 대한 책임

○ 국가간의 상호보증	2-181
○ 배상금 지급	5-139
○ 외국인 개념	5-155
○ 한·중국간의 국가배상법의 상호보증	6-119
○ 중국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7-114
○ 한·미행협에 따른 주한미군의 피해복구청구	10-139

라. 절차(배상심의회)

-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절차 2-187
- 예산부족에 따른 국가배상사건 처리 요령 4-97
- 배상심의회 운영 4-106, 4-116
- 배상액 기준 초과금액 승인요청 절차 4-112, 5-136
- 국가배상법 적용문제 4-115
- 배상심의회 관할 4-116, 5-121, 5-137, 5-153
- 배상심의회 사무처리 5-123
-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중단 및 재심 5-131, 7-116
- 특별배상심의회와 지구배상심의회와의 권한관계 7-121
- 배상금지급결정 전 부동의된 사건처리문제 8-157
- 국가배상금 지급 후의 사정변경 8-158
- 손해배상금 지급절차 13-118
- 국방부장관의 배상심의회에 대한 지휘감독권 14-126

마. 기타

- 징발기간중 미군이 채석한 돌대금 지급 7-119
-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권 행사의 경우 국가채권관리법
적용 여부 12-173
- 국가배상법에 의한 구상채무 임의변제 14-124
- 국가배상책임과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15-229
- 예비군작전동원 및 교육훈련시 민간자동차 사용의 문제점 15-231
- 군수송기의 민간인 탑승 가부 21-153
-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 신청 가능 여부 24-185
- 국가배상을 위해 필요한 감정비용의 부담에 관한 질의 24-187
- 군소음보상법 관련 질의 34-116
- 지원금 신청기간 및 수급권리에 대하여 34-124
-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34-134
-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신청기한 관련 34-139

13. 군용지취득

가. 총칙

- 징발재산중 소유자 불명시 민법규정의 적용여부와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한 재산의 인계 9-104
-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한 국가보위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대통령령의 적용대상 여부	9-105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이 도시계획법 제82조 소정의 도시계획을 목적으로 설정되었을 경우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12-145
○ 국가보위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특별조치령 해석(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13-106
○ 군용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공특법)	20-162
○ 국방·군사시설사업시행자	20-170
○ 국방부장관의 민통선 설정·변경권	20-204
○ 사인도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22-46
○ 1954년 주한미군에 공여되어 사용하다 2007년 우리 군에 반환된 지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29-75

나. 목적물(제한)

○ 징발재산 또는 국유재산의 매각처분 취소	1-176
○ 징발토지의 지목변경	1-177
○ 군이 점유사용중인 사유재산의 징발	1-189
○ 군이 무단점유하는 토지에 대한 수용가능 여부	21-189
○ 비상계엄 해제지역의 징발	1-191
○ 선박소유 및 징발보상	4-83
○ 징발재산의 교환	8-114
○ 징발재산중 공유재산의 범위	10-117
○ 징발된 임야상의 입목매수	10-118
○ 민통선 북방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징발	12-159
○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이전에 수용·매수 또는 반환된 토지가 특조령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13-104
○ 착오로 매수한 징발매수토지의 처리	17-154
○ 증권매수토지에 대한 이중소유권 보존등기의 효력(징특법)	20-200
○ 중복등기된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행사	20-202
○ 일부공유자의 지분과 국유지를 교환할 수 있는지	23-49
○ 공유지분과 국유지의 교환가능 여부	23-51

다. 절차(원상회복)

○ 소유자 미확인 징발물 처리	1-178
○ 재산권의 소유자를 착오하여 행한 징발의 법적 효력	9-103
○ 대통령공고 제29호 제3항 중 "국방부장관의 고시지역의 범위"	9-106
○ 징발재산매수에 있어서 소유자가 아닌 자를 상대방으로 한 매수행위의 효력	9-117

- 소송 계류중인 징발 보상금 지급신청서 처리 12-147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의 법리 17-151
- 전쟁기념탑 건립과 환매권 발생여부 19-161
- 해군기지조성사업과 환매권 발생(공특법) 20-164
- 군병원 지휘관관사 신축과 환매권(공특법) 20-166
- 환매기간내 환매대금 미납시 환매권 발생(공특법) 20-168
- 환매권 소멸된 징발재산의 반환 20-181
- 징특법상의 환매통지의무 이행시기 20-183
- 판결선고 이후부터 이행시가지의 환매대금 이자가산(징특법) 20-185
- 공공사업실시에 따른 환매권 생사의 제한 20-187
- 환매권 상실한 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19-166
- 특별조치령의 ‘종전의 상황이 종료된 날’의 의미 19-168
- 착오에 의한 협의매수와 환매권 발생여부 19-178
- 환매권 행사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21-170
- 징특법상 징발재산을 수의매수할 수 있는 지위의 양도 가부 21-181
- 군골프장 부지에 대한 공특법상의 환매권 행사 여부 21-199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2의 해석 21-214
- 국보위특조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대통령령에 의거 수용된 토지의 처리문제 22-47
-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징발재산의 수의매각여부 등 22-48
- 징특법상의 수의매각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국공유지 처분제한과의 관계 22-49
- 공특법상 “공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때”의 의미 22-50
- 양여하기로 합의한 국가재산 중 환매권 발생이 예상되는 토지의 처리 22-51
- 징특법상 증권매수지를 상속인에게 수의매각하는 경우 제사주재자 1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22-52
- 징특법상 환매권자는 환매대금을 선지급하여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 22-53
- 분당, 일산 신도시 관련 양여가용금액과 대체시설비용의 정산가능 여부 또는 잔여 양여대상재산으로 대체시설과의 정산가능 여부 등 22-54
- 활용계획 없이 전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방위산업체의 토지와 교환한 경우 환매대상이 되는지 22-55
-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환매권행사 가부 23-52

라. 해제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권으로 매수한 재산과 처분시 연고권을 부여하기로 범정화해한 재산의 매각 여부 12-183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매수통지 등을 누락한 경우 그 매수의 효과 14-108

- 징발된 토지반환과 매수대금 환수 20-180
-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25-93

마. 보상

- 징발보상령에 의거 기보상한 보상액 재조정 1-180
- 징발보상금 부정지급 2-172
- 징발보상에 있어서 목적물의 확정 2-176
- 징발보상금 지급과 목적물의 변경 2-178
- 징발보상금의 수령자 확정 5-95
- 징발목적 없는 징발건물에 대한 피해보상 3-42
- 징발보상기간 기산 및 법인소유 재산징발후 그 주주교체에 따른 보상문제 3-159
- 원 조선주택영단의 자산 등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급여부 4-84
- 소송계류중인 징발재산의 보상금 지급 8-109
- 토지구획정리지역에 편입된 징발재산의 매수 및 보상 8-110
- 징발공유재산을 병무청 청사부지로 부정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8-112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부칙 제2조(지목이 변경된 경우의 보상기준) 9-113
- 공유 징발재산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급 9-116
- 징발 이후 보존등기를 필한 징발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급 9-188
- 소송계류중 피징발자의 징발보상금 청구 9-121
- 불하된 재산의 보상기간 10-121
- 징발보상금 지급일 10-124
- 소유권이 인정된 미등기토지 징발보상금 지급 10-125
- 사기행위로 인하여 징발재산 매수대금을 착오 지급하였을 경우
국가채무의 소멸여부 10-128
- 징발토지가 후에 군에서 인위적으로 변형하여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의 보상관계 등 10-129
- 징발보상금 환수 11-127
- 징발보상금 과오불 환수에 따른 이자가산 11-135
- 소송계류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 신청 11-196
- 귀속휴면법인 소유재산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급 11-140
- 농지계획법상의 상황이 완료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과오불 환수 12-149
- 국방부에 징발보상을 신청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징발법 제23조에 의한 시효중단사유 여부 12-151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 당시보다 환지후의
지적이 적어진 경우의 환매대금 12-153
-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처리 12-155

- 징발보상금 청구소송에 의한 가집행금과 징발보상채권과의 상계 12-157
- 징발보상금 지급 12-166
- 징발재산에 대한 멸실보상 청구권 존부 13-103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14-105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간 16-117
- 징발중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매수한 경우의 징발보상 3-163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의 보상책임 17-169
- 비무장지대내의 사유재산의 보상여부 17-172
- 민통선 지역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 20-205
- 징발보상금 지급대상자 18-175
- 공공용지 협의취득시 보상금 지급시기 18-177
- 허가·신고·무허가 관행어업에 대한 손실보상 19-180
- 토지수용 재결과 대법원 판결의 효력상충관계 19-183
- 영농보상시 농축산물표준소득 산정방법(공특별) 20-161
- 주한미군시설의 교외이전사업 폐지로 인한 손실보상 20-175
- 아산만 어업보상협약서(안) 검토 20-178
- 매수협의 성립후 보상금 미지급시의 법률관계 21-191
- 국방·군사시설 사업추진을 위해 국유지 상 사유건물에 대한 이전보상이 필요한지 33-187

바. 기타

- 법령적용 범위와 분배농지 및 귀속재산의 징발보상 취급 1-182
- 징발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징발보상 1-186
- 징발지상에 군원공사 실시 1-188
- 노무자 징용 1-193
- 통신시설의 기능단위 징발가부 3-158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매수재산의 소유권 취득시기 15-215
- 개인이 징발중에 있는 귀속재산을 국가로부터 매수한 경우의 징발사용료 지급 5-96
- 대체농지조성비 부과 18-183
- 어로한계선의 남하 축소 지정·고시 18-237
- 지방산업개발단지 사업자 지정 관련 질의 23-53
- 징발재산환매에 있어 피징발자의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인 경우 지분처리 23-48
- 우선매수 통지 없는 경우 우선매수가 가능한지(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관련) .. 23-55
- 국가가 상대방에게 교환으로 제공한 토지가 제3자의 소유로
 확정된 경우, 국가가 대상으로 토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등 23-56
- 징특별상 피징발자에게 징발한 토지를 우선매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25-106
- 용산기지 내 미군 임대주택부지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용산부지에의 해당 여부 29-69
-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와 성장관리권역 소재 대학교가 통합이 가능한지 여부 29-76

- 부당이득금 반환의 근거 법률 29-78
- 국유지 내 폐기물을 무단야적한 자에게 변상금 및 과태료의 중복부과가 가능한지 33-189

14. 군 수

- 군수물자 불하 1-150
- 군수품관리 전환문제 2-118
- 군수품의 정의 2-119
- 군화 해체비용 지급의 합법성 여부 2-120
- 전비품에 대한 검사 및 전비품 손망실로 인한 변상판정 3-132
- 군수품구매 공급업무의 담당부서 6-95
- 군수품에 관한 불용결정 6-97
- 교환에 따른 금전의 보충지급 6-98
- 사관생도 피복지급 7-105
- 군수품의 구매공급 주관청 7-106
- 전비품 손망실 변상판정 7-108
- 군장품 조변 수의계약 8-120
- 방위산업체 또는 일반업자로부터 군용 통신전자장비를 납품받는
경우 군수품관리법, 군용 전기통신법, 전자공업진흥법, 전자관리법 적용 여부 10-205
- 석유류세 면세조치 11-145
- 군복및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규제 대상 품목 11-147
- 조세감면 규제 11-149
- 주월한국군에서 인수된 방송장비를 한국방송공사에 인계하기 위한
법적 절차 및 근거 11-150
- 군수품 구분 11-154
- 군용장구의 범위(금속단추) 11-156
- 손망실 처리 12-182
- 탄약생산군수업체가 원자재 고갈로 군이 비축한 탄약 등의 대여를
요청한 경우 대여할 수 있는지 여부 12-205
- 군공창생산품을 국방부장관이 외국회사에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 13-123
- 국방부장관의 군수물자 수출추천권 여부 13-124
- 불용폐품의 교환계약에 따른 채무이행보증방법에 관한 회계질의 14-143
-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연구기관의 개념 14-146
- 기념관전시용 6.25 전사품이 군수품관리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14-148
- 장기계약에 있어서 "수년"의 의미 15-239

○ 군수조달에 관한특별조치법상의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	15-240
○ 군수품의 수출업체 무상대여	15-241
○ 국방과학연구장려금 지급대상자 선발의 취소사유	15-243
○ 군수품의 범위	15-245
○ 군수조달에 관한특별조치법상의 계약체결 군수업체 지정을 실무위원회가 위임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15-249
○ 군수사업 목적	15-250
○ 전비품의 검사	15-253
○ 군수품의 손망실처리	15-255
○ 관세법상 군수품의 정의	16-103
○ 군수품 교환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의 승인권 위임	16-105
○ 연료바지선의 군수품 해당 여부	16-107
○ 군용 유류를 관리전환할 수 없는 경우	16-108
○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군수품을 불용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16-109
○ 국방품질검사에서 군수물자의 하자검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7-129
○ 군수품인 유한수명품목의 처리방법	17-131
○ 불요군수품의 교환	17-132
○ 군수품교환시 가격결정	19-147
○ 구형방독면을 무상대여하고 신형방독면으로 상환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9-148
○ 관급원단수득률 책정업무의 위임	17-133
○ 군수품의 해외보관 및 포괄적 출납명령 가능 여부	17-134
○ 군수품의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양여	17-136
○ 군수품 불용결정시의 장부가액	18-171
○ 군수품의 대여	18-172
○ 국산화 개발물품에 대한 구매의무	19-150
○ 산림청·경찰청 등에 대한 군수품 지원과 상환	20-139
○ 안경사 아닌 안경군납업자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20-141
○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허가취소 등	21-233
○ 복수의 물품관리관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및 물품출납공무원의 인사명령권	22-63
○ 정상적인 사용의 결과로 군수품이 훼손된 경우 손망실처리를 해야 하는지	23-58
○ M1소총 탄약을 방산업체로 하여금 폐기하도록 할 수 있는지	23-59
○ 군피복 현금판매의 적법성 여부	23-60
○ 군 일용품 현금 판매의 적법성 여부	23-63
○ 군수품으로 사용되는 승용차에 임시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지	23-64
○ 소총을 외국인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23-65
○ 대학에 대여된 학군사관후보생 교육용 총기관리책임	25-120

○ 국방획득관리규정 제404조 해석	25-123
○ 국방·군사시설사업자 지정	26-140
○ 한국철도공사 전환과 여행장병안내소 시설의 무상사용 중지 여부	26-145
○ 국방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 해당 여부	26-148
○ 외출·외박시 관용차 사용	26-150
○ 일반직공무원의 군용승용차 운전 가능 여부	26-152
○ 위성수신장비 외주정비	26-154
○ 노후 건설공병장비의 불용결정	26-156
○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에게 예비군피복을 소급지급할 의무	26-158
○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기술료 징수 유예·감면·면제 여부	26-164
○ 정부부처에서 위탁관리 의뢰한 차량이 군수품인지 여부	26-166
○ 군용항공기 관리·처분에 관한 적용 법률	27-145
○ 불용품을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27-147
○ 군함과 민간선박 충돌 시 손해배상 합의의 최종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	27-149
○ 업체연구개발확인서 회수 가부	28-143
○ 불용군수품 교환시 협의 여부	28-148
○ 미군기지 철거 시 발생물건의 군수품해당 여부	28-152
○ 차량운행 및 관리규정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28-155
○ 물품관리법 제28조 “계약담당공무원” 의미	28-160
○ 군수품관리법상의 교환 상대자 선정방법	28-163
○ 육로 탄약호송 작전간 무기사용 가부	28-167
○ 전투복 해외양도시 비군사화 작업 필요 여부	28-169
○ 고무보트 및 고속단정의 무상양도 가부	28-172
○ 기존 조합원의 미상환채무분담액 승계여부	28-175
○ 불용장비 물물교환시 감정평가 수수료	29-51
○ 육군이 관리하는 군수품을 방위사업청에 무상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9-52
○ 군수품 유상양도 가부	29-53
○ 불용 총기 교환 관련 법적 문제	29-54
○ 의장대 행사복 무상 양도 가부 근거 법령	29-56
○ 의장대 행사복 무상대여 가부	29-57
○ 고단가 수리부속 불용결정 및 처리 절차	29-58
○ 불용물품 압류 가부 등	29-59
○ 군복 및 군용장구를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29-60
○ 군수품 양도시 장관 승인 여부	29-61
○ 부적합 소독약 하자처리 문제	29-62

- 군 상용차량 획득시 영세율 적용 가부 29-63
- 불용군수품 대여 가부 29-64
- 점유개정방법의 K9자주포 대여 가부 30-144
- 국내 교육과건 장군에 대한 전용승용차 지원 가부 30-146
- 군수품관리법상 교환 해당여부 30-149
- 기준미달 전투화의 해외 수출 가부 30-151
- 군용표지가 없는 반합판매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31-215
- 탄약대여 시 대여금액 산정 32-135
-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 32-138
- 경과규정 없는 개정된 훈령의 적용여부 32-143
- 이산화물 수송임 비용 32-145
- 금속제 모장이 단속대상인지 여부 32-147
- 불용군수품 매각 관련 검토 32-149
- 조약에 따른 군수품 불용결정 시 절차문제 32-151
- 군수품 교환계약 32-154
- 폐기된 탄약의 성격 32-161
- 외국인이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33-151
- ○○ 불용항공기 매각 시 군수품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관한 질의 33-154
- 불용군수품을 매각 시 예정가격 공개여부 33-154
- 중고 K-9 자주포 성능개량 비용지불 가부 33-166
- 해군 도태함포 관리전환 시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33-175
- K200 장갑차 양도관련 법령질의 33-178
- K-9 자주포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의 궤도차량에 해당하는지 33-181
- 수입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판매한 제품의 군수품 해당여부 33-183
- 탄약의 무상대여 및 교환 관련 34-151
- 군수품관리법령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의미 34-154
- 유효기간이 지난 개인제독키트의 관리 34-159
- 불용예정인 군수품을 해외업체에 매각할 수 있는지 34-161
- 군수품관리법 상 무상대여의 대상 34-164

15. 방위산업

- 방산특조법 제20조 제1항의 해석 17-137
- 외국인출자기업의 방산업체지정 17-138

○ 일반업체의 군사용 장비개발	17-140
○ 주요방산물자지정에 대한 방산실무회의 권한	20-147
○ 소프트웨어가 방산물자인지 여부	20-149
○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수출하는 방산물자 수출업체 지정	20-152
○ 완성품인 전차에 대한 방산물자 지정의 효력 범위	21-158
○ 군용항공기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21-160
○ 방산물자조달계약조정위원회의 지체상금면제 권한	20-154
○ 장래 획득할 함정장착장비 생산에 대한 해군의 계약체결권	20-155
○ 생산실적 없는 방산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쟁의행위제한	20-157
○ 방산물자 조달시 적용될 환율의 결정시점	21-147
○ 방산물자인 공군항공기의 정비시 군과 업체의 물량배분기준	21-149
○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예비승인에 관한 문제	22-64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당해연도 물량'의 범위	22-65
○ 개발확인서의 명의변경 거부	22-66
○ 고무사출성형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시운전에 필요한 고무재료를 개발하였는바, 군용물자의 개발계획 승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22-67
○ 방산물자의 지정범위	22-68
○ 천마체계 지원장비에 대하여 별도의 방산물자 지정이 필요한지	23-61
○ 획득협의회의 기종결정의 적법성 질의	23-62
○ 시제함주계약업체 선정 이후 상세설계 및 건조업체를 경쟁입찰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등	23-66
○ 방산특조법 제20조의 2 적용범위	23-67
○ 함정의 방산물자 지정 가능 여부	24-151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군용물자 연구개발 범위	24-154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상 방산원가 착오시 부당이득금 환수여부	24-159
○ 수출용 방산물자 대여료 조정방안	24-161
○ 노동조합 전임자/임시 상근자 급료지원	25-113
○ 후속양산 기술도입생산사업 선행업무	25-116
○ 방산보증기금 회수방안	25-117
○ 군용폭발물(탄약)의 폐기에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도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25-119
○ 방산수출업 신고 수리여부	25-122
○ 국방획득관리규정 제402조 제2항의 '업체자체 연구개발 희망업체'의 의미	26-160
○ 방산업체 지정 취소	26-162
○ 운용시험평가계획작성기관인'소요군'에 합참이 포함되는지 여부	27-151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상 총사업비의 개념	27-154

- 신규업체의 업체투자연구개발 승인 27-158
- 과학화경계사업 위탁 집행 가부 29-55
- K-21 장비 대여기간 재연장 29-65
- 수출용 품목의 규격화 여부 29-66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판매 허가관련 30-154
- 국방정보시스템 기술지원 분야를 별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30-157
- 방위산업 착수금 사용기간 산정 관련 31-217
- 국방규격 관련 업무 주체 32-186
- 방위사업법 제46조 제4항의 '정산'의 의미 33-141
- 국방전력발전업무 혼령 상 연구개발결과물에 관한 전용실시권 계약이 가능한지 33-144
- 시제품자체가 전력화되는 함정 설계 및 건조계약에 따라 선도함과 후속함 초도물량을
생산하기로 한 경우 시제품의 범위 33-149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제8항 제2호의 해석 33-160
- ○○사업의 1번함이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2번 함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33-164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및 부칙 제2조 해석관련 33-168
-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정비용역 관련 질의 34-167

16. 재정

- PX의 원천세금징수 의무 1-159
- 포획선박 처리 1-160
- 관급원료 취급 1-161
- 예산부대조건의 해석 1-163
- 관세법상 고발의 효력 1-167
- 잉여관급원료의 처리 2-123
- 국고금 지불 2-124
- 나포관리 선박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소송비용지출 2-126
- 국가기관의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2-130
- 주월군 귀국시 관세법상 신분 3-135
- 국군용 석유류의 면세대상 여부 3-137
- 공급계약위반과 지체상금 18-151
- 이행지체와 지체상금 부과 18-208
- 공사실적의 승계 18-155
- 국방·군사시설사업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19-182
- 두채류장비인도후 매각계약체결시까지의 사용료 징수 20-143

- 성능미달된 침투성 보호의에 관한 계약책임 20-219
- 업체 자체 개발품의 국방규격과 관련한 채무불이행 책임 21-162
- 지체상금 부과 17-143
-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7-144
- 단가계약 예정이행량을 초과 납품한 경우 계약 이행 여부 21-238
- 계룡대 체력단련장이 자체수입으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계약이 국제법상 계약인지 22-69
- 무인항공기(UAV)체계개발계약 지체상금면제 가능 여부 24-165
- 지체상금적용시 월 누적일수 계산방법 24-177
-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비용부담주체 28-180
- 국방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감리비 분담 29-77
- 국방부가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 29-85
- 변제충당의 순서 29-89
- 복지기금을 통한 해군마트의 포인트 제도 운영의 타당성 31-178
- 맞춤형복지제도 관리운영대행기관과의 약정 관련 31-207
- 기부금품 사용 대상자 31-239
- 국가채권을 공시송달한 경우 시효중단 여부 32-199
- 분할납품계약에서 지체상금 산출 여부 및 기준 32-201
- 용역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 여부 32-211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 시 일부구성원이 탈당한 경우 법률관계 33-220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채권양도·양수 시 채권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33-223
- 군인(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채무를 유족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34-24

17. 예산회계

- 재향군인회가 예산회계법 규율대상인지 여부 16-70
- 영치금취급자의 회계직공무원 임명 1-151
- 심계원 변상관정에 대한 집행방법 1-151
- 국채반환 1-154
- 매매계약이 해체된 경우 계약보증금 반환 9-112
- 수의매각후 일부 해제시 계약보증금의 귀속 21-243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가격 제한과 계약해제 16-69
- 공사청부계약 해지 1-158
- 부정건설업자 처리 1-200
- 군납업자 부당행위 제재 4-75, 10-147

- 시설공사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회피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21-229
-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개정과 부정당업자 제재 21-234
- 권리권 없는 행정부서의 국유재산매각과 입찰보증금 처리 5-105
- 입찰보증금 납부서 기재금액이 예정가격의 10/100 미달인 경우와
입찰의 효력 5-106
- 공고내용과 다른 입찰보증금을 받고 실시한 입찰 및 매매계약의 효력 21-241
- 한국보이스카웃 연맹의 예산회계법상의 법인 해당여부 9-159
- 물품계약 10-145
- 국가와 국민간의 계약사항 보장절차 10-150
- 유류조변에 있어서 면세구매 10-158
-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도급경비 지급관서의 범위 10-159
- 도심지 주둔 미군시설을 교외로 이전통합함에 있어서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10-179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소정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4-150
- 국가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14-169
- 감사원 판정전 변상명령 14-172
- 물품출납공무원에 대한 변상판정 9-143
- 군납품에 대한 변상책임 16-71
- 채권관리관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10-136
- 군인공제회 아파트건립사업의 성격 17-146
- 군인공제회가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자격 및 해약 21-105
- FMS 종결잔액의 국고세입조치 여부 18-149
- 올림픽기장 제작의 예산회계법상 문제 18-156
- 전쟁기념사업회의 수의계약과 예산회계법 적용여부 18-158
- 수의계약가능기간 종료 후의 수의계약체결 20-221
- 수의계약에 의한 유류구매 20-228
- 수의계약에 의한 전산장비 임대차계약체결 20-232
- 정부계약체결시 군인공제회의 지위 20-223
- 장기계속계약방식에 의한 설계용역계약체결 20-231
- 국방전산망사업 전담사업자지정의 의미 20-225
- 국방일보 광고수입과 수입대체경비 19-127
- 군장품류 구매입찰 참가자격 19-128
- 예산회계법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뇌물을 준 자'의 범위 21-231
- 방송공사의 시설을 임차하여 군통신망 운용시 임대 사용료의 납부 21-227
- 세입징수관이 발송한 재고지서, 재독축장의 시효중단효력 22-70
- 입찰서의 금액표시에 한글과 숫자가 상이한 경우 당해 입찰의 효력 22-71

○ 군이 공항공단으로부터 유지·보수 비품 등을 현금으로 대신 지급받아 비행장시설의 유지·보수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	22-72
○ KTX-2 계약특수조건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검토	23-68
○ 지명채권 양도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의 효과	23-69
○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	23-70
○ 국군수도병원부지 매각계약 해제 가능여부 등	23-71
○ 가압류된 급여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의 귀속	23-72
○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른 업체의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23-73
○ 몰수된 계약보증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지	23-74
○ 가계약제도의 국내계약 도입이 위법한지	23-75
○ 계약 해제없이 보증인 또는 주계약자를 교체할 수 있는지 여부	23-76
○ 불가연동금지특약의 적법성 여부 등	23-77
○ 군 복지시설 운용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23-78
○ 화재보험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23-79
○ 매출이 취소된 세금계산서의 제출이 입찰서류의 위조·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4-168
○ 입찰업체의 영업직원이 뇌물을 제공한 경우 부정당한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4-170
○ 물품구매 입찰업체의 적격심사에 관한 질의	24-172
○ "동일품목을 2개 이상 업체에서 개발하였을 경우"의 의미	24-174
○ 주계약업체의 협력업체 변경시 국방부의 승인 여부	24-179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에 규정된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해당 여부	24-180
○ 부정당업자 추가제재의 타당성 여부	25-121
○ 허위서류에 의한 입찰 및 계약의 효력	26-170
○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예산 지출업무의 이관 여부	27-163
○ BTL사업 조건부 실시협약 체결 가부	27-166
○ 건축공사 설계비 효율 산정시 적용하여야 할 기준	27-169
○ 관리비 할증료를 군관사 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172
○ 현장설명서에 추가된 심사기준의 법적 효력	27-176
○ 국가 계약의 대가 지급에 있어 검사 단계의 생략 가부	27-178
○ BTL사업 지역중소업체 자격요건	28-189
○ BTL사업 재고시시 사업규모 축소 가부	28-193
○ BTL사업 시공출자자 부도로 인한 법률관계	28-208
○ 해군진해관사 BTL사업 건설주간사 지위	28-231
○ 계약사무 일부 타 기관 분장의 문제	29-86

-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수의계약 가부 29-87
- 부정당업자 제재 확정 후 중도금 지급 가부 29-88
-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7조 제5호 “구속 등 형사처벌로 인한 경우”의 의미 30-177
- 용역계약에 있어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가부 32-203
-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32-208

18. 국유재산

- 국가에 대한 사인재산의 기부채납 16-113
- 포획선박 인정 여부 및 그 처리 1-164
- 미창 귀속재산 불하 1-169
- 국유군용지상의 무단건축물 철거에 있어서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여부 3-27
- 국유임야 대부 2-132
- 사찰부지와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15-169
- 한국군인복지회의 국유재산 대부 및 매각 8-84
- 채석장의 보상액 산정(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16-120
- “평가액의 산술평균치”의 의미(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16-121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15-170
- 사단법인 국방부동우회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허가 21-177
- 개간촉진법과 국유재산법의 관계 15-171
- 국유재산의 사용료 15-173
- 국유재산법상 사용수익료의 징수 여부 21-185
- 군용시설특별회계법상의 국유림의 처분절차 8-153
- 용도폐지 건물의 매각처분 10-126
- 토지구획정리사업시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10-115
- 공원부지 활용 2-121
- 국유재산 처분 44-76, 13-78
- 관사사용료 징수 7-54
- 국유재산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분임보관청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0-153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11-131, 11-132, 13-80
- 국유재산을 공매할 경우 대부신청을 거부한 자 등의 동의를 요하는가의 여부 11-138
- 국유재산 매각대금 납부기간 도과시의 효과 13-69
- 국유재산 매수자가 등기완료 전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변경 신청한 경우의 그 효과 12-207, 13-70

○ 부분배자가 상환완료하기 전에 국가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분배농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13-71
○ 국유재산 사용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13-73
○ 국유재산을 공매함에 있어서 공동명의로 입찰할 수 있는지 여부	13-74
○ 도시계획 저축재산 처리	13-75
○ 매각건물철거에 대체이행 가능여부	13-76
○ 무주부동산 국유화	13-77
○ 재향군인회가 대부분은 국유재산을 매각처분하였을 경우 국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2-209
○ 국유재산법상 전물군경유족회의 법적성격	12-219
○ 도시계획구역안의 국유농지의 매각	9-108
○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소유의 토지의 사요	9-111
○ 개인소유명의로 등기된 하천부지의 매수가부	9-120, 10-123
○ 국제관광공사가 공익법인인가 여부	10-155
○ 기부받은 장교관사 건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10-151
○ 분배농지 소유권자	13-80
○ 농지계약법에 의거 분배된 농지가 국유로 확정된 경우에 이미 납입한 상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13-82
○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문제	14-79
○ 연부상환조건으로 매매한 재산의 소유권	14-82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8조 제7항 제1호 소정의 "건물"의 개념	14-84
○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국유재산의 양도	15-292
○ 군의 사유지 무단점용에 대한 사용료 지급	15-303
○ 지방자치단체의 탄약고 이전사업 대행	16-115
○ 토지수용법상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의 범위	16-116
○ 대체시설 제공자에 대한 국유재산 양여	18-161
○ 기관상호협약에 의한 대금정산	18-165
○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국유재산매각	18-167
○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 군용지의 무상귀속	21-183
○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국유재산을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19-159
○ 수색비행장의 항공대학 사용과 사용료 징수	19-133
○ 국유재산 매각과 사용승인	19-135
○ 지정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매각 국유재산의 재취득	20-198
○ 매각대금 납부기한 연장	19-136
○ 국유지 매각대금 납부기일연장	20-190
○ 국유재산법상 매각대금 납부기간 연장의 의미	20-193

- 민간인의 대공화기 구매가능 여부 19-138
- 국방품질관리소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양여 19-141
- 국유재산의 무상관리환 20-199
- 전쟁기념사업회 및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5년 이상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19-143
-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수의매수할 수 있는 지위의 양도 21-167
-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적용 이자율 21-172
- 국유재산 매각화해 후 계약체결을 지연하고 있는 매수인에 대한 종치 21-209
- 이주대책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분양가격 및 분양자격의 결정시점 21-211
- 가압류의 제3채무자인 국가의 재산양여 21-221
- 은닉 국유재산 자진반납자의 결정 21-179
- 은닉재산 자진반납에 대한 특례매각의 법률적 성격 21-206
- 군체력단련장의 회원권 발급 21-96
-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에 건축된 무허가 하사관 아파트 보상여부 21-187
- 건설부장관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행위의 노력 21-201
- 기부채납받은 재산을 군인공제회에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22-56
- 국유재산 매수자의 특약위반에 따른 해체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22-57
- 국가가 환지처분으로 인한 청산금을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납기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지급의무 22-58
- 군인공제회에 아파트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군관리의 토지를
무상사용 허가할 수 있는지 22-59
- 기부채납된 군사용 차폐용 간판의 사용료 면제기간 22-60
- 임야토석의 매각에 있어 산림법 적용여부 등 22-61
- 강의실 사용료 징수여부 23-54
- 군 숙소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위약금 부과 적법성 여부 등 23-57
- 국유재산 사용료 미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 24-115
- 수량부족매시 국유재산 매각대금 산정 방법 24-118
-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국유재산사용허가의 효력 24-119
- 국유재산(애기봉 주차장) 사용료 징수 가능 여부 24-120
-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연체료부과대상 24-124
- 국유재산 매각시 무허가건물 철거 보상비 지급 여부 24-126
- 매수한 징발재산 등의 수의매각 가능 여부 24-128
- 국보위 특별법상 수의매각 가능 여부 24-130
- 국유지에서 채취한 토석 처분시 적용법률 24-132
- 매각부지에서 발견된 오염토양 및 폐기물의 처리 책임 24-144
- 국유재산 특례매각 25-95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25-96
○ 수용 및 징발된 토지를 국유재산법상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25-104
○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26-123
○ 행정재산(상가) 사용허가시 재계약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	26-133
○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된 국유지의 매각 가부	27-183
○ 군 관사의 관리환 가부	27-185
○ 부동산 계약업무를 공병부서와 경리부서 중 어디에서 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27-187
○ 국유재산 사용료율 산정기준 시점	27-191
○ 사용·수익허가 변경승인	27-193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후 해당 신축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29-71
○ 무상 사용허가를 한 기부채납 시설(행정재산)의 대체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유지 여부	29-72
○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징수 가부	29-79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임의 촉탁 가부	29-80
○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30-161
○ 국방대학교 운동장 이용	31-227
○ 군인연금기금으로 유상 매입한 자산의 “국방·군사시설” 해당여부	31-230
○ 군 병원 설립과 관련한 검토	32-156
○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군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32-165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국방부장관 등의 동의 여부	32-169
○ 「군인복지기본법」을 근거로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잠종재산(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32-173
○ 군 공중전화 미 철수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32-177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판단시 적용 법조	32-181
○ 통신지원업체 행사장소 제공여부	32-195
○ 군 부대 내 노래방기기 및 케인기기를 운영하는 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영업대상인지	33-197
○ 사용허가매장 건물이 철거예정인 상황에서 기존 매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위한 수정계약이 가능한지	33-201
○ 행정재산에 설치한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사용하게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33-2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지형의 변경을 위한 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부대장 협의사항인지 33-214

19. 군사시설보호

- 방호구역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초가지붕 개량가부 10-81
- 관계행정청이 국방부장관 등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한 허가처분의 효력 11-129
-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서의 광업권 설정허가 11-142
- 군사시설보호에 따른 관련기관의 협의 11-166, 12-113, 12-215
-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협의완료시점 21-195
- 항공탄약고지역의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13-129
- 민수용 유류저장시설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13-130
- 부대부변 주택신축 14-155
-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12-171
-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 대상 15-259
- 외국법인 토지취득허가와 국방부장관과의 협의 15-260
- 행정청의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짜리채취 절차 15-264
-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범위 15-265
- 관할부대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권한 유무 16-143
-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위법한 건축공사에 대한 조치 17-156
- 방위산업체 생산공장이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인지 여부 17-158
- 군용전기통신법의 특별보호구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인지 여부 19-174
- 예비군 교육훈련장이 군사시설인지 여부 19-176
- 토지수용법상의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의 의미 17-159
- 공군기지법상 기지보위구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인지 여부 18-179
- 국가보안상 현저히 유해한 건축물 철거 18-181
-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전에 설정예정통보를 받은 군수가 행한
건축허가의 적법성 19-155
-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전 건축허가의 효력 19-164
- 공군기지법을 위반한 건조물설치허가의 효력 20-210
- 공군기지법 규정의 효력 20-212
-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 아파트에 대한 고도제한 20-208
- 외국정부와의 합의각서에 기한 재산권 제한 20-214
- 군용항공기지법과 미공군규정의 효력관계 20-216
-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과 관할부대장과의 사전협의 21-174
-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 21-197
- 대지조성을 위한 절토와 군용항공기지법상 건축물의 고도제한 21-203

- 건축물 제5조 소정의 허가대상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 19-172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도시계획시설 설치결정시의 협의 20-206
-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에 관련된 협의 20-207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건축허가 취소 19-157
- 일반적인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의 법적근거 19-169
- 군사시설의 촬영, 묘사 등의 행위는 군사시설 밖에서도 금지되는지 여부 19-171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4조 소정의 군사시설의 의미 21-218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범위 22-62
- 군용항공기지법상의 고도제한에 저촉되나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시설물의 설치에 동의할 수 있는지 23-50
- 군사시설보호구역상 부동산, 협의, 위타지역조정승인권 24-135
- 재래식 탄약의 비군사화 처리시설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4-137
- 군용항공기지구역내 행위제한사항의 발효시점 24-138
- 군용화약류제조시설의 신축, 변경행위에 관한 질의 24-139
- 예비군훈련장의 군사시설 해당 여부 24-141
- 군의 폭발물처리장이 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4-143
- 군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25-96
- 1998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양호한 것으로 인정된 계룡대 본청에
대하여 2003년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5-102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도로개설 동의시 현물제공을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5-108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 협의)대상
건축법제9조의 건축신고 사항이 포함되는지 26-126
- 군사시설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내에 심정 설치 허용 여부 26-129
-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의 대상 26-131
- 군용항공기지법 적용여부 26-137
- 부산항건설사무소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7-195
- 군용항공기지법상 연속적인 능선형태의 의미 27-201
- 영내 설치되는 주유소가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7-203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재협의대상 여부 28-18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상 “방공기지” 28-197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상 ‘협의’의 범위 28-200
- 스낵바 입찰공고시 참가자격 제한 가부 28-205
-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해제 심의절차 28-213
- 기부대양여사업 대체시설에 비품포함 여부 28-216
- 한 필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건축된 경우 협의 대상 여부 28-219

- 군용항공기지취항 민항기에 대한 기상정보제공주체 28-223
- 주한미군기지 소요물을 사업자에 공급시 영세율의 적용여부 28-227
- 주한미군기지 오염토양 조사 및 정화작업의 범위 및 주체 28-229
- 보호구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동을 신축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29-67
-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 안에서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임목의 벌채나
지형의 변경에 대한 허가가 군 협의 대상인지 여부 29-68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의미 29-70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속하는 행위가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9-73
-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군사시설의 의미 29-74
- 부대 이전사업 실시계획 변경 29-81
- 토양오염정화 관련 비용 부담 문제 29-82
- 토양오염정화 관련 오염원인자 해당 여부 29-83
- 저유소 오염토양정화책임 및 비용 청구 29-8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30-164
- 민간투자자에 의한 군 체력단련장 건설 시 적용법률 30-168
-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13조의 협의대상인지 여부 30-171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령 관련 30-173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해석 관련 31-219
- 건축법 상 국방·군사시설인 군관사 내 과외교습 등 상행위 가부 31-233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5항의 재협의 요청 관련 32-184
- 비행안전 제1구역의 군사시설 설치 승인권자 32-189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2항의 지표면에 대한 해석 32-191
- 국방시설사업법 제14조 협의의 의미 33-191
- 국방부 검찰단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하는지 33-19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의 ‘기존건축물’의 의미 33-204
- 추가적인 전력배치를 위한 신규시설 반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군 공항이전 사업에 해당하는지 33-208
- 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 출입허가 관련 34-173
- 예비역으로 신분이 전환된 장병도 군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34-175

20. 상훈

○ 부대표창의 범위	1-128
○ 상이기장 및 군인유족기장 수여대상자의 범위	1-129
○ 군표창규정 제7조 및 군표창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권자의 해석	2-80
○ 반공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계	3-32
○ 반공법 제10조에 의한 상금 및 보조금 지급	3-35
○ 무공훈장대리 수여권 문제	3-250, 4-135
○ 무공훈장 수상요건 해당여부	3-259
○ 유족순위	3-260
○ 중앙정보부장의 국군장병에 대한 표창	4-133
○ 위수사령관의 표창권	4-138
○ 외국대통령 부대표창 수장패용 가능여부	7-145
○ 계엄사령관 표창권 행사	10-185
○ 비군인에 대한 6·25사변 종군기장령 수여 가능 여부	24-93
○故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요건 충족 여부	30-132

21. 국립묘지안장

○ 배우자 국립묘지 합장 가부	3-108, 15-45
○ 재혼한 군인의 경우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있는 배우자	21-121
○ 예비군의 국립묘지 안장	7-45, 9-56, 11-24, 13-41, 13-39, 21-119
○ 영현기록서류에 “미수집 및 불명”으로 기재된 자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	11- 29
○ 소집중인 방위병의 국립묘지 안장 가부	13-34
○ 해양경찰대 대원이 순직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 가부	14-167
○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	15-60
○ 국무회의 심의 없이 국립묘지에의 안장이 가능한지 여부	15-64
○ 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대상	17-122
○ 경비교도대원의 국립묘지 안장여부	17-124, 21-125
○ 교정시설 경비교도의 국립묘지 안장여부	18-144
○ 국립묘지 안장대상	17-125
○ 무공훈장을 받은 경찰관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인지 여부	17-126
○ 테러 등에 의한 사망한 자의 위패봉안	18-145
○ 휴가·외출중 사망한 국민의 국립묘지 안장	20-133
○ 상해입시정부요인의 국립묘지 안장	20-135

- 비전공사망으로 처리된 군인의 국립묘지 안장여부 21-85
- 국립묘지 안장시 육군본부소속 군무원의 순직확인권자 21-103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와 국립묘지 안장대상 21-110
- 6·25사변시 무공훈장을 받은 군속이 국립묘지령상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인지 22-36
- 제직당시 공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도
 임무수행중 순직한 경찰관으로 볼 수 있는지 23-31
- 대통령경호실 직원의 국립묘지 안장자격 24-88
- 전직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 24-90
- 국립묘지 비문 설치 25-53
- 국립묘지 합장대상인 배우자의 의미 26-96
- 전몰의제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26-98
- 충무 이하 무공훈장 수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 26-101
- 국립묘지 합장 대상 여부 26-103

22. 형사

가. 군형법

- 군형법 부칙 제6조에 의병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1-221
- 군무이탈죄의 성질 및 공소시효 1-25
- 군무이탈후 사면되었으나 계속 복귀하지 않는 자 등의 처리 1-201
- 주월 한국군사령부 보통군법회의 관할지역 내에서의 전시 사변규정의 적용여부 3-212
- 군무이탈자 비호죄의 적용여부 4-164
- 노획물에 대한 영득과 횡령 4-173
- 주월한국군이 월맹으로 탈출한 경우에 있어서의 처벌 5-112
- 군속의 군무이탈 6-104, 15-274
- 5·16 이전 군무이탈자의 복무설정행위의 효력 및 군무이탈죄의 성립여부 6-110
- 5·16 이후 군무이탈자로서 제1보충역에 편입된 자에 대한 처벌 15-273
- 적전의 개념 7-130, 1-24
- 방위소집중인 향토예비군의 형사처벌 7-135
- 하자 있는 입영조치와 군무이탈죄 성립여부 7-140
- 정원경찰의 군법 피적용 문제 13-133
- 군무이탈후 일본 밀입국자에 대한 군형법상 처벌가능 여부 13-137
- 군형법상 상관의 개념 14-159
- 정부관서에서 방독면을 사용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16-135
- 사관학교 가입학자가 군형법 피적용자인지 여부 18-187

- 재영중인 학군사관후보생이 균형법 피적용자인지 여부 18-188
- 향토예비군대원이 균형법 피적용자인지 여부 18-190
- 경찰제복인 전투복 등의 착용·제조·판매와 처벌 18-197
- 연예인들의 군복착용 허용여부 18-198
- 예비군복이 단속대상품목인 군복인지 여부 20-267
- 암호자재수발시의 무장경호병을 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198
- 뇌사상태인 군인의 장기이식 허용 20-111
- 해외 장기군무이탈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22-73
- 입영기피죄 등의 공소시효 기산점 23-83
-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하여, 균형법 제1조 제3항 소장 ‘실역’의 의미 23-85
- 정문 위병소 배치 헌병이 균형법 상 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31-245

나. 군사법원법

- 일반사면에 따른 재심청구 1-124
- 형집행기간 산입 1-215
- 노무단소속 예비역 장병의 재판관할 1-216
- 고등군법회의의 분실설치와 관할관의 확인권의 내부적 위임 1-220
- 추징금 징수 1-223
- 군법회의 계속중인 민간인의 수용 및 미결수의 일반병원의 입원 1-226
- 5·16 이전 군복무 이탈자에 대한 형사관할 1-227
- 의병집행정지 출소자 잔형집행 1-228
- 군법회의법상 관할관의 확인조치 1-229
- 군법회의 사형판결의 집행방법 1-231
- 형면제와 형집행면제와의 차이점 1-231
- 형기 기산일 1-233, 1-244, 1-246
- 형집행정지된 자에 군법회의 판결의 효력상실 1-234
- 몰수물자 처리 1-239
- 공소심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권 1-241
- 국가재건 최고회의령 제34호에 의한 군법회의관할의 성질 1-242
-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사건처리 1-247
- 국법회의의 관할권 1-248
- 재산형 집행 1-260, 2-212
- 군수사기관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의 효력 1-261
- 형집행중인 국회의원 석방결의 1-262
- 계엄지역내에서의 군법무관의 영장의 효력 1-264
- 군정보원에 대한 범죄사건 취급 및 밀수출입 물자취급과 밀항선원 처리권한 1-266
- 군법회의 판결사건 1-268

- 미결구금일수 산입 2-193, 6-108
- 구속기간 갱신 2-194
- 군수사기관의 수사업무의 한계 2-196
- 입영부대 도착자에 대한 재판권 2-198, 6-115
- 계엄군법회의의 사형선고의 집행방법 15-269
- 미결구금일수의 집행 15-275
- 벌금형 언도 2-213
- 군무이탈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의 적용여부 3-206
- 군법회의 설치 및 설치보류 3-207
- 형집행정지중에 있는 자의 형의 면제 3-211
- 공소시효가 완성된 장물의 압수 3-215
- 군법회의 재판집행기관 3-217
- 군법회의 재심 3-226, 3-229
- 공소계기절차 3-231
- 비관할자에 대한 영장발부의 정당성 여부 3-232
- 2개군 이상 관련사건의 재판관할 4-128
- 5·16 이전 군무이탈자의 잔형집행 7-137
- 구속당한 응소자의 신분관계 및 영장효과 8-128
- 보안대 요원의 구속절차 8-130
- 비상계엄선포시 수사권 8-131
- 군무연속소집에 의하여 국군부대에 소집된 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구속 및 소집해제 ... 9-129
- 타군소속 장병에 대한 긴급구속 및 그 인치된 기간의 구속기간 통산여부 9-130
- 비상계엄하의 군법회의 재판권 관할 10-106
- 공소시효기간 산정 10-108
- 전시 근로동원자의 군법회의 적용 10-109
- 군 사법경찰관리가 군장품 판매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 및 군장품 압수가
가능한지 여부 10-111
- 군용폭등범죄에 관한특별조치법 적용 10-163
- 장물인 군용물의 압수 및 그 보좌관의 처벌가능 여부 13-134
- 군용물등범죄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해석에 있어서 물가의 변동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13-136
- 군용열차내 수송관이 군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16-137
- 고용군무원의 재판관할권 17-163
- 해안경비법에 의하여 받은 파면형의 구제절차 17-164
- 국군보안부대원의 구속·관할 등에 관한 문제 18-192
-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소집된 예비군에 대한 군사재판관할권 19-196

-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없는 경우의 처리 18-195
- 계엄사령부예의 군사법원 설치가능 여부 19-189
- 관할관 확인조치기간이 미결구급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19-193
- 검찰수사관이 입건하여 검찰관에게 송치할 권한이 있음 22-74
- 군사법원법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군 수사관이
 변사자 검시수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34-194

다. 기타

- 국방경비법상의 형의 면제 1-224
- 예비검속 1-232
-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해석적용 1-254
- 정치범의 개념 1-259
- 해안경비법상의 금고와 형법 및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0조의
 금고 또는 구류와의 이동 2-192
- 군법회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보상요구 2-209
- 외국환 소지행위의 처벌 가능성 3-140
- 국방경비법 제96조의 "판결"의 해석 3-222
- 형의 실효와 파면취소사유 해당여부 4-127
- 여군 영창설치 및 헌병직무보조병 임명 4-165
- 반공법에 대한 질의 5-111
- 군인 등에 대한 전매법 위반사건의 고발 및 통고처분 5-113
- 인권옹호직무방해죄 성립여부 7-133
- 총포화약류단속법 적용 10-166
- 군의관이 승조하지 않고 있는 해군함정에 위생하사관이 출동중
 불가피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발병, 사망한 경우 의무책임 12-187
- 외국국적 취득자에 대한 군무이탈자 수배해제 15-270
- 수형자의 청원에 의한 군교도소에서의 작업과 상여금 15-271
- 군교도소의 미결수에 대한 작업상여금 지급 10-186
- 치료감호집행기간의 형기산입 20-271
- 출·퇴근 시 교통통제를 하는 헌병이 도교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의 헌병인가 22-75
- 군용품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군용품 재산범죄 처리 31-221
- 감사원 수사기관인 군인에 대하여 조사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공군 검찰단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지 34-192
- 형사 기록의 정정관련 34-202

23. 민사관계

○ 강제집행에 관한 질의	1-195
○ 외국인 토지소유권 취득허가	1-197
○ 소송비용 관장	1-199
○ 채납토지개량조합비 승계의무 유무	1-201
○ 소운송업법 조문해석	1-204
○ 소운송업법에 의한 하역작업	1-206
○ 탄약저장 지역내에 거주하는 민간인의 철거	1-208
○ 고철수집에 대한 법적해석	1-210
○ 국유, 공유, 민유 부동산의 구분 및 징발부동산의 보상금 지급 기산일자	1-212
○ 관권침해에 대한 법규해석	1-213
○ 균량미 수급절차에 있어서 인도청구권 유무	2-182
○ 근거 없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2-190
○ 비영리법인 설치허가 주무관청의 범위	3-39
○ 미확정 채권양수자의 지위	15-290
○ 재판상 화해의 효력	15-294
○ 중첩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15-302
○ 민통선 북방지역의 재산에 대한 매수	14-103
○ 외국정부의 한국내 부동산 취득	3-176
○ 소유권 양도증 및 공증증서 소지인에 대한 물품인도 문제	3-182
○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3-183
○ 청구원의 순위보전	3-185
○ 방치 매장광물의 소유권	3-188
○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있어 공시송달방법	3-195
○ 귀속재산 여부	4-118
○ 미군주둔지역 임야의 처분권	4-121
○ 유언의 효력	5-101
○ 사단법인 설립	5-102
○ 군경선교회의 설립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	16-125
○ 예비군수송협회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감독권	16-126
○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변경된 법인정관의 효력	16-128
○ 비영리법인의 기부금품모집행위와 그 설립허가 취소	16-129
○ 신원보증서	5-103
○ 일본에 귀화하기 전에 한국에서 입적시킨 양자와의 귀화후 친권관계효력	7-125
○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인지세 부가	8-110
○ 군견구입을 위한 복권발행	8-121
○ 매장물자 발급보증금 처리	8-123

○ 전부명령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기존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9-135
○ 채권의 가압류 결정에 따른 효력	10-156
○ 소송계류중인 대지상의 신축건물에 대한 제지방범 여하	14-175
○ 예고등기된 토지를 매수할 경우의 보상	14-177
○ 매매계약 체결 전에 필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	14-179
○ 감사원 판정에 의한 변상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	10-138
○ 군수품 손망실 사건에 대한 배상청구	10-141
○ 매수후 소유권 미이전 재산보호	12-161, 12-221
○ 부당이득금의 이자적용	12-164
○ 매매계약후 당사자를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10-154
○ 매도인의 하자담보기간	16-130
○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채무승계	16-131
○ 민간차량에 상이를 입은 군인의 치료비 청구	17-175
○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8-203
○ 지상권 설정 계약후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18-204
○ 이행대행자의 사용	18-206
○ 배상결정시 예견못한 적극적 손해발생과 배상	18-211
○ 가압류된 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이 행하여진 경우의 효력	18-213
○ 전우신문에 일간신문기사를 전재할 경우의 저작권 침해 여부	19-203
○ 계약해제시의 책임	19-208
○ 퇴학당한 국군간호사관후보생도의 경비반환	20-23
○ 해직된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퇴직금 산정	20-24
○ 재임용된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퇴직금 반환범위	20-27
○ 중재절차에 있어서 국가의 대표자	22-76
○ 수용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23-87
○ 군의관의 민간인 진료시 면책협약의 효력	24-193
○ 존속기간 영구인 지상권설정계약의 유효성	25-100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급여채권 범위	26-169
○ 행정부사요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7-211
○ 비영리법인인 국방인재개발원의 수익사업	31-243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32-193
○ 동시이행 판결 선고사안에서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의 법률관계	32-229
○ 퇴거지연관리비 공제시 민사집행법 등 적용관련	34-26
○ 환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34-29
○ 주거지원보증금의 부족분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34-120

○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이자의 부과관련 34-126

24. 국제법

○ SOFA 협정에 따라 미측에 분담 요구 거부 34-178

○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이행약정에 따라 2020년 군사건설 현금지원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 34-180

○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상 미집행 분담금 환수관련 법령해석 34-182

○ 기관간 약정체결 관련 당사자 판단 34-183

○ 양해각서 상의 책임 사항에 대한 규정범위 34-184

○ 민간인에 대한 전투복 착용과 전쟁법 위반여부 34-185

○ 정전교전규칙(UNC)에 대한 한국군 준수 의무여부 34-186

25. 기타

○ 표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선박처리 1-130

○ 수로업무법에 관한 질의 1-156

○ 사체부검 1-272

○ 0-2 요원의 노동조합조직의 합법성 1-274

○ 부대우편물 검열에 대한 적법성 여부 1-276

○ 외국인의 한국변호사회 가입 2-180

○ 체적사유 해당자의 사면처리 2-47

○ 사회단체등록의 업무소관 2-218

○ 군노무자 노동운동 2-216, 2-219

○ 해군함정에 대한 선박법 및 선박안정법의 적용여부 2-220

○ 일반사면으로 인한 원계급복귀 2-269

○ 일반사면에 따른 병역기피자 처리 2-270

○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면 해당 여부 2-271

○ 사면법에 의한 복권 3-171

○ 노무근무단의 노무자의징계 3-154

○ 직위해제기간의 정의 및 소득세 징수 4-79

○ 임시우편물단속법 제3조 4-143

○ 우편물의 지구검열실시 4-144

○ 군통신시설 이설보상 4-152

○ 현역군인의 가사심판법 적용 4-174

○ 군인보험 계속 신청	5-147
○ 사면의 효력	7-139
○ 사관학교 퇴교자의 교육기간이 사병경력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5-65
○ 관공서의 휴일	15-50
○ 군의관의 대한의학협회 회원 가입	8-141
○ 매장물자처리규정 제3조 제2항의 작전지역의 의미	9-151
○ 공문서 작성시 기안책임	10-171
○ 보안업무에 관한 질의	10-179
○ 비밀취급인가	10-180
○ 군인보험금을 과소지급한 경우 취소여부	10-191
○ 공인회계사 자격	10-195
○ 군사우체국 설치와 관련하여 체신부와의 군사우편요금 결제	11-164
○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의한 신원조사	11-167
○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상 동원업체 의무위반시 처벌 근거	11-170
○ 민원결과통보에 대한 회신	12-191
○ 국방부 의무자문관 임명에 있어서 이미 관정된 보안적부심사의 효력	12-195
○ 보안업무시행규칙 개정문제	12-225
○ 고속도로 연변 토지형질변경	13-142
○ 사단법인 한국군인복지연합회가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13-143
○ 공직선거기간 중 병력동원훈련이 가능한지	23-80
○ 방산물자계약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서를 경영위원회 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23-81
○ 읍, 면, 동 방위협의회 존치여부	23-82
○ 반복민원 종결처리 부서	23-84
○ 타 정부기관 생산 군사기밀을 제공(설명)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보안조치를 해야 하는지	23-86
○ 기념주화 발행가능 여부	23-88
○ 군복지시설도 영업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23-89
○ 군보도요원증 발급가능 여부	14-168
○ 민간업체가 발간포를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14-181
○ 민통선 북방에서의 광석반출	1-202
○ 귀농선 부근의형석을 전리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1-203
○ 사전동원 영장의 법적효력	15-280
○ 양자와군인자녀 교육법상의자녀	15-282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9조의 적용대상	15-283
○ 기능사 훈련교사의자격기준	15-288

○ 주재무관 자녀의 군인자녀교육법상의 혜택	15-286
○ 단기사관학교설치법상의 초대대학의 의미	15-288
○ 국방대학원에 1년의 석사학위 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15-289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업체	15-296
○ 복권의 효력	15-297
○ 한국국방학회(비영리법인)의 정기간행물 유가판매	15-298
○ 일반사면령상의 금품수수비위의 범위	15-300
○ 국군정신전력학교 연구실의 국민윤리학회 회원가입	15-301
○ 광업권의 권리를 수용한 경우의 보상금 산정	16-114
○ 특허받을 권리를 수용한 경우의 보상금 산정	16-144
○ 입원환자를 위한 군인의 신체 일부제공	16-149
○ 재향군인회의 회비수납방법	16-150
○ 근로기준법상의 계속근로연수	16-151
○ 재향군인회의 의문성금 각출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16-152
○ 국방관리연구소 연구원의 승용차 면세혜택 여부	16-154
○ 육사신보에 일반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16-156
○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수술할 수 있는지 여부	17-174
○ 군함에 의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과 오염방지	18-239
○ 개정 신체검사규칙의 적용대상자	19-233
○ 군병원이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19-238
○ 군병원에서 민간인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가부	19-244
○ 각군 발행의 군 대형운전면허의 효력	21-156
○ 문서 수발 전령병의 가스총 휴대	21-152
○ 국보위특조법의 폐지와 그에 따른 사전동원, 비공개동원, 부분동원	21-259
○ 정훈교육자료로 TV, 프로그램이나 출판물의 내용을 복제 반포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2-77
○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추진하면서 군부대 오수를 연계처리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군부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2-78
○ 미 정부 소유 기술품을 생산시에는 국산품으로 사용할 수 없었는바 정비시에도 지적 소유권이 적용되는지 여부	22-79
○ 방위산업체로부터 방위산업물자를 구입하여 국가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여부	22-80
○ 보안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군사기밀보호법 개정 필요성	22-81
○ 국방대학원 특정직 교수의 재임용 적용기간	22-82
○ 공군기술고등학교학생의 후불승차 가능 여부	24-192
○ 한의사 면허 소지 사병의 진료행위 가능 여부	24-195

○ 훈련비밀기록물의 보존절차	24-198
○ 6.25전쟁 5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의 저작권	25-127
○ 국군체육부대 선수팀의 프로리그 참가	25-131
○ 군부대 통상명칭을 국정원 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5-133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	25-135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군 병원에서 관리하는 사체의 일부를 떼어내서 별도의 장소에서 부검할 수 있는지 여부	25-136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록 전체 송부요청에 대하여 국방부가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5-138
○ 민간검찰이 현역군인을 내사할 수 있는지 여부	25-140
○ 보험료 급여공제 수수료 징수	26-173
○ 외국인장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여부	27-214
○ 국고대여학자금대부 대상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포함 여부	29-44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에 의해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일반고등학교의 전국단위학생모집이 가능한지	29-49
○ 영내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인 경우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등	29-90
○ 국방정보화법 시행령에 ‘주과수’ 포함 여부	29-93
○ 국방부 감사처분의 거부 가능 여부	29-94
○ 공무원 및 군인의 비영리법인 참여 가부	29-95
○ 군 차량 중과실 교통사고 보호대책	29-96
○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직무발명 관리	29-97
○ 군 이사화물 업체와의 업무제휴	29-98
○ 중앙복지시설 예약환불금	29-99
○ 군 차량 보험 업무	29-100
○ 국회의원의 군부대 교양강의 가부	29-101
○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 명의 신고 접수 및 피해종교단체의 범위	30-180
○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30-184
○ 전문자격(면허)을 보유한 의무병의 군 보건의료행위 가능여부	31-187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 “유급의 현장연수” 관련	31-200
○ 특정수혈부작용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적법한지 여부	31-247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32-110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검토	32-215
○ 서해 5개 도서의 관할권 문제	32-216
○ 지식재산권의 국가 귀속 여부	32-225

- 안보학 교수의 정년 보장 32-232
- 국가보훈처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32-233
- 평창올림픽 군 지원 가능여부 등 검토 32-236
- 화생방방어연구소의 임상시료 분석행위 32-239
- 군수형자 작업분류 32-242
- 미송환 북한군 사체의 처리 32-244
- 공군역사기록관리단에 공군 온나라 시스템 문서열람 권한부여 관련 33-35
-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대상 33-38
-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역장병 DB를 신원조사 시스템에서 신원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33-89
- 계약변경 가능여부 33-227
- 정당원인 자가 군인이 되었을 때의 탈당 의무 33-230
- 파견근무자 문서결재행위의 위법여부 33-231
- 국군교도소 기부금품 접수 시 적용법률 33-233
- 국군수도병원에서 환자치료 후 후방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
인수받은 병원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34-103
- 공무 외의 국외여행 승인대상자인 군인명단 등을 법무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34-188
- 개인정보 관련 국회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34-196

국방관계법령해석 질의응답집 제34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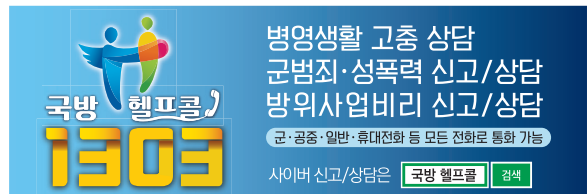
발행일 2022년 9월 30일
편집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발행처 국방부
인 쇄 국방출판지원단 M22090711



신고유형
군기밀/테러법·보안사고(위반)
외국(軍)/발산 스파이·군사기밀유출

상금내역
긴급신고: 경찰: 최고 20억원
테러 관련 신고: 최고 1억원

신고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
온라인 신고 www.dssc.mil.kr



* 이 책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